

01 긴급복지 예산비 지원

1 지원대상

-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사산포함)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울 때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행방불명구급시설 수용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주소득자 : 이혼, 휴업, 폐업, 실직, 단전, 출소, 노숙 등)

※ 위기상황(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신설(2014.4.24. 시행)

- ☞ 단전·단가스로 1개월 경과가구, 3개월내 기초수급중지가구 중 근로 무능력 가구, 주소득자의 군복무·간병, 출산, 아동동반 주거취약계층, 부모 부양불능으로 아동 방치 가구 등

2 구비서류

- 필 수 : 주거관련서류, 가구원 전체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 해당자 : 위기사유에 따른 아래 해당서류 구비 제출
 - (의료지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계산서, 보험증권 등
 - (주거지원) 강제퇴거명령서, 내용증명, 경매판결문 등
 - (휴폐업)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시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실직)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또는 입출금내역 등
 - (교정시설출소자) 출소증명서, (노숙자) 긴급지원의뢰서
- 필요시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선정기준

-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대상종류	가구원						
	소득인정액(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긴급지원	1,218,623	2,074,953	2,684,264	3,293,576	3,902,888	4,512,199	5,121,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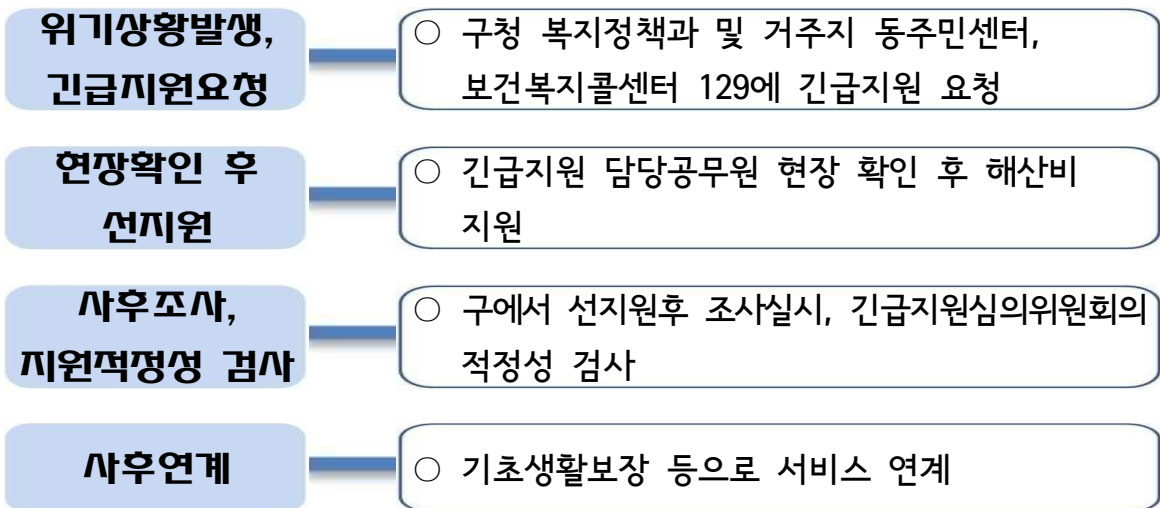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09,312원씩 증가(8인가구 5,730,823원)

- 재산 : 대도시 135,000천원, 금융재산은 5,000천원(생계비 등) 이하,
7,000천원(주거비) 이하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해산비	1인당 600천원 (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급)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450-7492)

0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지원대상

-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일정소득계층 이하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2 구비서류

- 필 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난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증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현 근무확인 서류 등
- 해당자 : 인공시술대상의 경우 신청서, 시술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제출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본 제출 생략

3 선정기준

- 이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로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한 대상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단,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각 1차 시술신청 접수일 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33,823	178,515	197,595	181,590
3인	6,763,000	208,766	230,162	213,802
4인	7,741,000	242,453	262,525	251,447
5인	8,168,000	251,447	271,204	261,486
6인	8,595,000	273,128	292,614	286,652
7인	9,021,000	286,652	306,016	302,654
8인	9,448,000	302,654	322,239	324,566
9인	9,875,000	302,654	322,239	324,566
10인	10,302,000	324,566	342,813	350,43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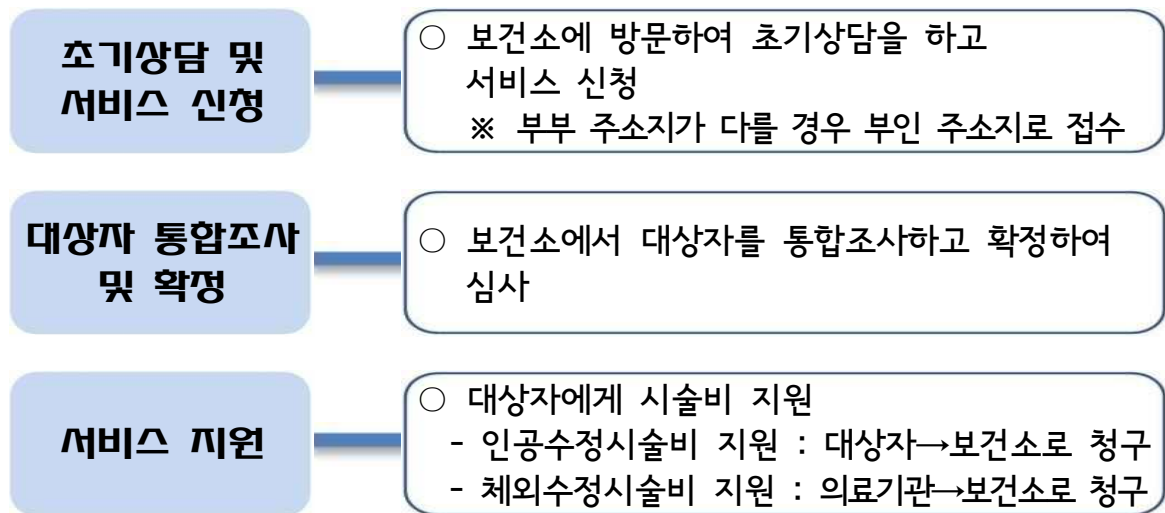
- 맞벌이 부부 : 보험료를 합산하되 건강보험료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맞벌이부부가 아닐 경우 : 각각 보험료를 모두 합산

- 부부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함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체외수정으로 시술시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배야로 체외수정 시술시 회당 1,900천원 범위내에서 총3회 지원 (기초수급자는 3,0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 ● 동결배야로 체외수정 시술시 회당600천원 범위내에서 총3회 지원 (동결배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선배야로 4회 지원) ● 인공수정으로 시술시에는 회당 500천원 범위 내에서 최대3회 지원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보건소 가족보건팀 (☎450-1596)

03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 지원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8,201원	58,862원	69,012원
3인	88,428원	89,348원	89,118원
4인	108,551원	119,434원	109,916원
5인	127,956원	143,805원	129,699원
6인	147,696원	164,955원	149,850원
7인	169,508원	188,214원	172,491원
8인	188,050원	208,225원	191,626원

- 임신후 만4개월 이상 경과한 사산이나 유산도 의사의 확인서와 소견서 첨부하면 지원
- 산모가 사망했을 경우,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있는 2촌 이내의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이 신청하여도 지원
- 지급제외 :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해산급여 지원대상자

2 구비서류

- 신청서,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월급명세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3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 지급
- 단태아 산모 : 10일, 쌍생아 산모 : 15일, 3태아 이상 산모 : 20일

4 업무 흐름도

서비스 신청

- 보건소 가족보건팀 방문하여 신청

조사기관

- 보건소에서 조사

서비스 제공

- 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5 문의처

보건소 가족보건팀 (☎450-19670)

0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지원대상

- 2015.1.1. 이후 출산자중
 - 1~6급 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 1,000천원/태아1인(국·시비 지원)
 - 1~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배우자 : 1,000천원/태아1인(시비지원)
 - ※ 1~3급 여성장애인 출산자와 1~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지원은 2015.1.1.이전 출산한 자도 소급지원 가능하나, 4~6급 여성장애인 출산자는 2015.1.1. 이후 출산자만 지원
 - 1~3급 여성장애인 또는 배우자 : 500천원/태아 1인(구비지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2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 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3 선정기준

-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에 지원
 -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 지원받은 자도 중복 지원 가능, 2014년 지원대상자(장애등급1~3급)중 미수급자는 예산한도 내 지원 가능

4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 1인기준 1,000천원 지원(국·시비) 태아 1인기준 500천원 지원(구비)

5 업무 흐름도

지원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지원 신청

자격요건 확인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 확인

대상자 결정

○ 구청에서 대상자 결정

출산비용 지급

○ 구청에서 출산비용 지급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450-7532)

05 의료급여(요양비)

1 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

2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신청서, 명세서, 세금계산서, 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검사결과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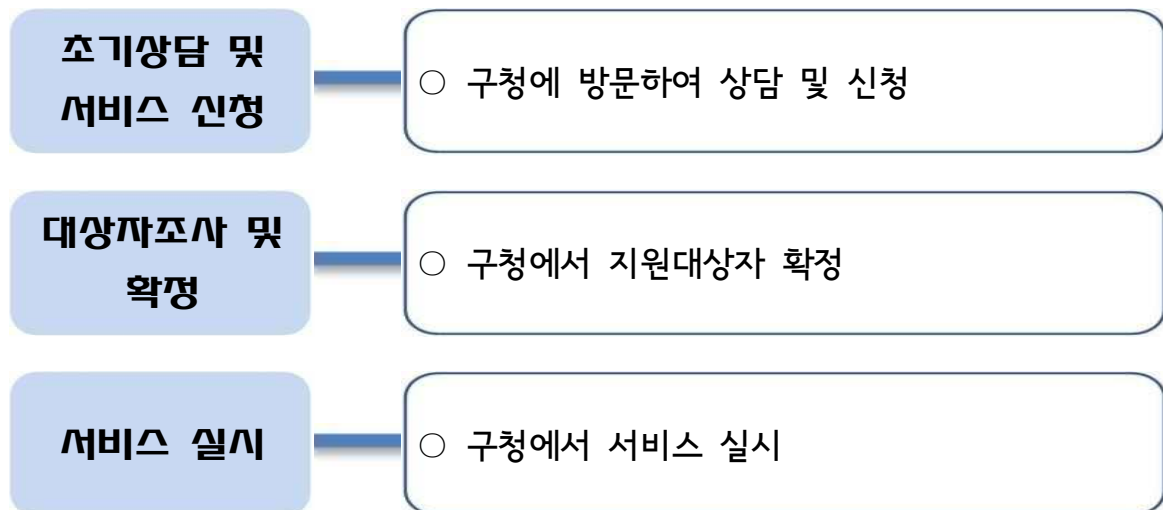
3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 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해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 요양을 받은 요양비 지원
- 만성신부전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 투석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지원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소모성 재료인 혈당검사지를 의료급여 기관외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의 의사의 소견처방전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 받은 경우 지원

4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요양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부상,출산에 요양비를 지급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지급 ● 가정산소 치료 요양비 지급 ●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 재료 지급 ●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 지급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450-7514)

06 의료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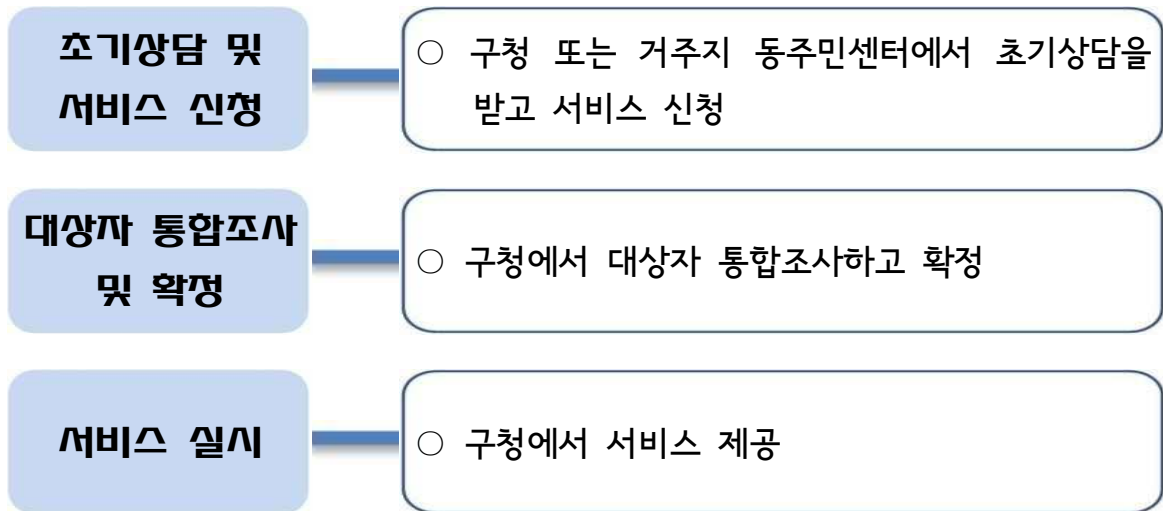
1 지원대상

-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임신출산진료비	500,000원 지원(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700,000원)

3 업무 흐름도



4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450-7514)

07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

1 지원대상

-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재활, 치매예방관리 등의 다양한 건강생활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일반주민이 지원대상임.

2 선정기준

- 대상자별 서비스 구분하여 지원

구분	치매관리	영양플러스	장애인재활서비스	철분제, 엽산제
대상자	노인	가구 최저생계비 200%미만인 가구	장애인	임산부

가구원 대상종류	2015년 소득인정액(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00%	1,234,562	2,102,096	2,719,376	3,336,658	3,953,940	4,571,220

3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보조제 및 사업간 연계서비스 제공

4 업무 흐름도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5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450-1922)

08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 배부

1 지원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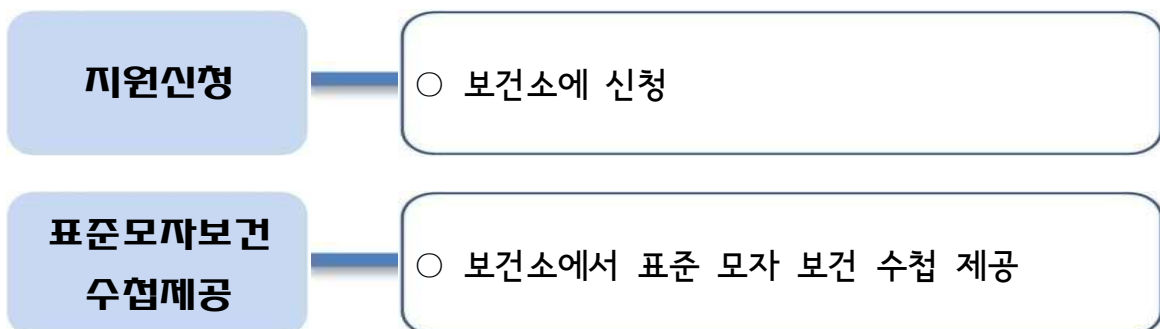
2 선정기준

-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가 보건소에 등록되어야 지원

3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임산부 등	산모수첩 및 어린이 건강수첩 제공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보건소 가족보건팀 (☎450-1596)

09 해산급여

1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급여 지급

2 구비서류

- 해산급여지원신청서,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3 선정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이하임.

가구원 대상종류	중위소득의 43%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인정액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4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 포함)	1인당 600천원 지급 (쌍둥이 출생시 1,200천원)

5 업무 흐름도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450-7513)

1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출생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출생후 28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의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아 이후에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구비서류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신생아중환자실(NICU) 기재, 진료비상세내역서
 - 통장사본, 건강보험증(맞벌이일 경우 각각),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월분)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제출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본 제출 생략

3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2016년)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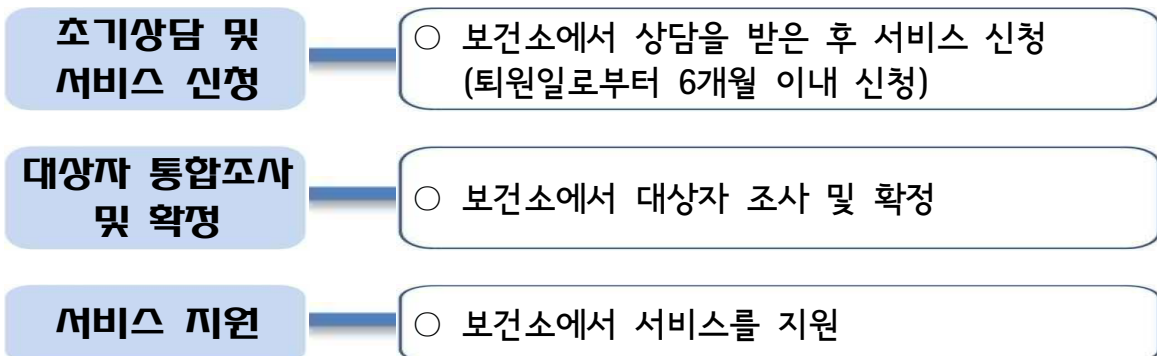
가구원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746,000	145,527	162,602	147,696
3인	6,763,000	208,766	230,162	213,802
4인	7,741,000	242,453	262,525	251,447
5인	8,168,000	251,447	271,204	261,486
6인	8,595,000	273,128	292,614	286,652
7인	9,021,000	286,652	306,016	302,654
8인	9,448,000	302,654	322,239	324,566

4 지원내용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 지원

구 분	내 용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0천원까지 지원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0천원까지 지원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보건소 가족보건팀장 (☎450-1596)

1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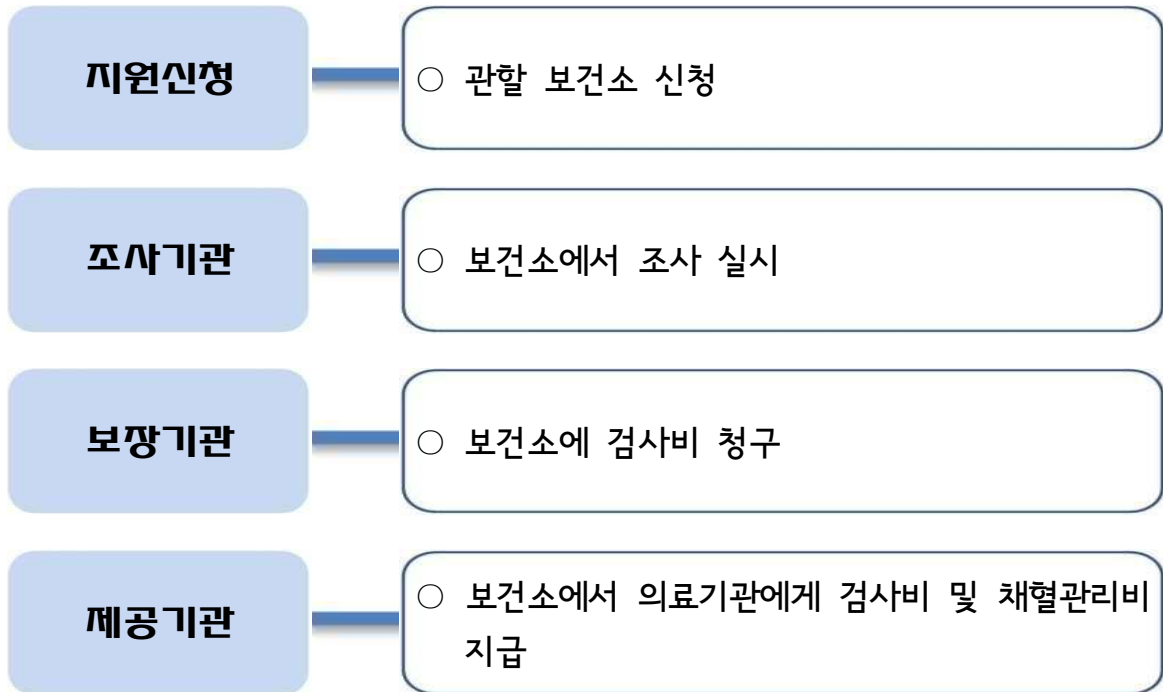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연간 출생하는 신생아 전원이며
- 환아관리대상자는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 이상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18세 미만의 환아
- 선천성대사 이상질환은 페닐케톤뇨증 환아,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호모시스틴뇨증 환아, 단풍당뇨증 환아, 갈락토스혈증 환아, 기타 선천성대사 이상증 환아입니다.
- 만 나이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질환 치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약제비 포함)의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합니다.

2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선천성대사 이상 선별검사 비용	20천 원/1일입니다.
검사항목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6종

3 업무 흐름도



4 문의처

보건소 검진팀 (☎450-1598)

12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보장가구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60%이하 가구의 신생아를 지원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수급증 확인으로 지원 가능
- 소득기준:전국가구 월평균 소득60%이하(2016년) (단위:원)

가구원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899,000	58,140	40,544	58,285
3인	2,705,000	83,609	84,117	84,591
4인	3,096,000	95,782	101,257	96,971
5인	3,267,000	100,336	107,558	101,427
6인	3,438,000	106,359	115,923	107,283
7인	3,609,000	111,270	123,024	112,699
8인	3,779,000	116,888	130,511	118,466

3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선별 검사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ABR 본인부담금)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보건소 가족보건팀 (☎450-1596)

13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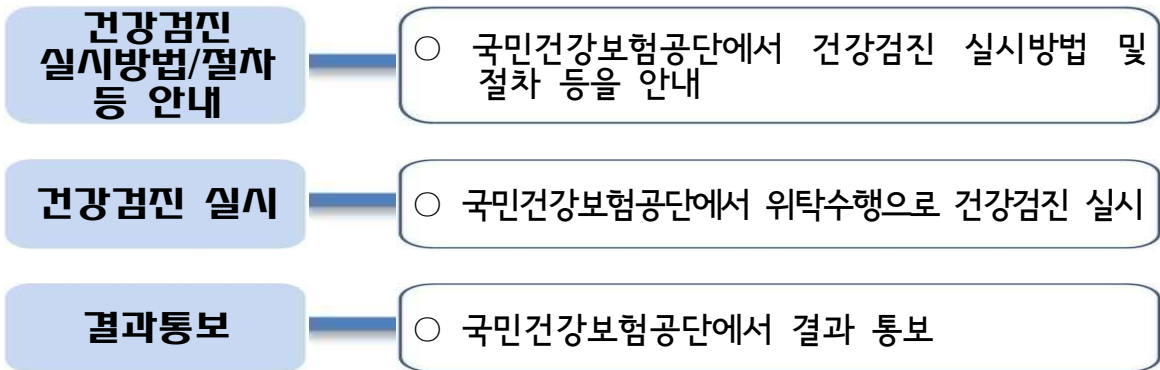
1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2 지원내용

-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예방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지원합니다.
- 검진주기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42개월/54개월/66개월

3 업무 흐름도



4 문의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4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 지원
-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후 7일 이내에 있는 한부모 지원

2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통장사본, 미혼모가족 시설 등 입소사실확인서, (미혼모자 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3 지원내용

- 미혼 상태의 한부모가 아래에서 선택하는 서비스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며, 아래사항은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이 포함된 단가입니다.

구 분	내 용
가정내 산후 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1주 500,000원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 350,000원
미혼모자가족시설에 입소시 산후지원 인력의 인건비 지원	1주 400,000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1주 최대 700,000원 미만을 실비 지원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450-7568)

15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12개월)에게 지원

2 구비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2015. 12.1일 이후 지원신청자부터 적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 조사서 1부, 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산모질병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의 사망증명용 가족관계증명서,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선정기준

- 기저귀는 기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이하 만 1세 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0%이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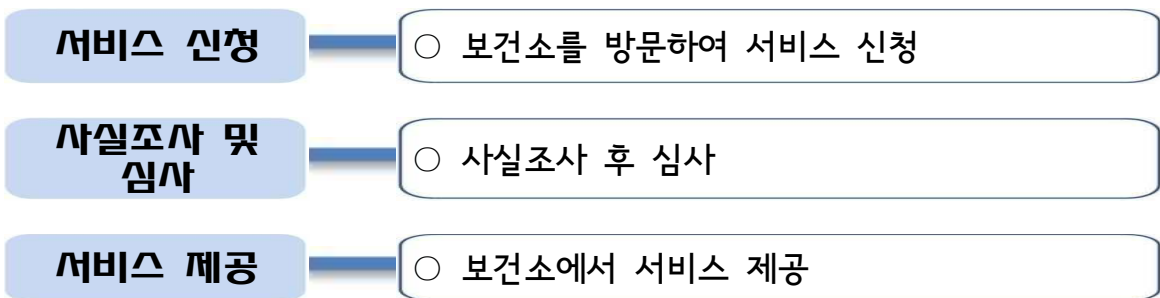
가구원 대상종류	중위소득의 40%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인정액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특정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HIV)

4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저소득층 가구 영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조제분유는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경우)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보건소 가족보건팀 (☎450-1957)

16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1 지원대상

-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신청)
 - ※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입증서류 제출 필요)

2 구비서류

- 신청서(조례 별지1호 서식 혹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예금통장, 신분증

3 선정기준

- 둘째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4 지원내용

구 분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내용	출생순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이상
	지원금	300천원	500천원	1,000천원	5,000천원

- 주요사항**
-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신청
 - ※ 해외출산 :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인 경우 입국하여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동 주민등록 담당과 업무 공유 출생신고서에 안내 고무인을 찍거나 구두 안내 요망
 - 쌍둥이인 경우 영아별 지원 초산인 경우 두 번째 태어난 영아가 대상임 첫째아 미지원
 - 타 지역에 거주 및 출생신고 후 얼마지나지 않아 광진구 전입인 경우: 미지원
 - 재혼가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둘째 자녀도 등본상 자녀 1명인 경우 : 미지원

5 업무 흐름도

복지급여 신청
(동)

- 지원대상자 확인 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

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 매월 1일~31일까지 신청분 수합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가정복지과로 신청자 명단 등 공문으로 제출

결정 및
계좌입금

- 신청자 대상자여부 확인 후
- 전달 신청자에 대하여 익월 15일에 출산양육 지원금을 신청한 보호자(부 또는 모) 통장에 계좌입금

6 문의처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450-7568)

17 가정양육수당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취학전 만84개월 미만)을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2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3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만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 0~84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0,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신청일로부터 0~84개월 미만)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36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36개월 이상 만5세(최대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4 업무 흐름도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대상자 통합조사 및 선정

- 구청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선정

서비스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5 문의처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450-7554)

18 다문화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 영유아에게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결혼이민자의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하였지만,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2009.1.1. ~ 12.31일생)을 유예한 만5세 유아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 1회에 한하여 재지원)의 보육료를 지원

※ 보육료 지원 제외 대상자

- 아동의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여서 아동을 출산하여, 해당 아동이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외국국적동포(이하'외국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 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기간으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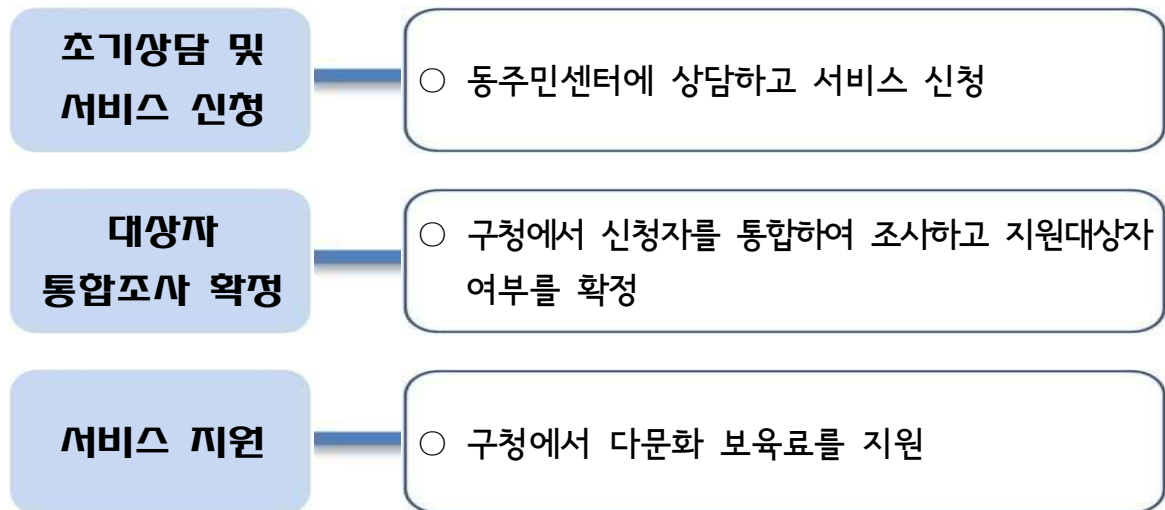
2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신분증

3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만0세	406,000원
만1세	357,000원
만2세	295,000원
만3세~만5세	220,000원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450-7541)

19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1 지원대상

-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의 유아가 해당합니다.
 만3세 : 2012.1.1. ~ 2013. 2. 29
 만4세 : 2011.1.1. ~ 12.31.
 만5세 : 2010.1.1 ~ 12.31.
-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3년 1~2월생으로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포함입니다.
- 취학대상 아동(2009년 출생)이 취학한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고 유예한 1년에 한해서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 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서비스 변경 신청일로부터 지원(소급 지원불가)

2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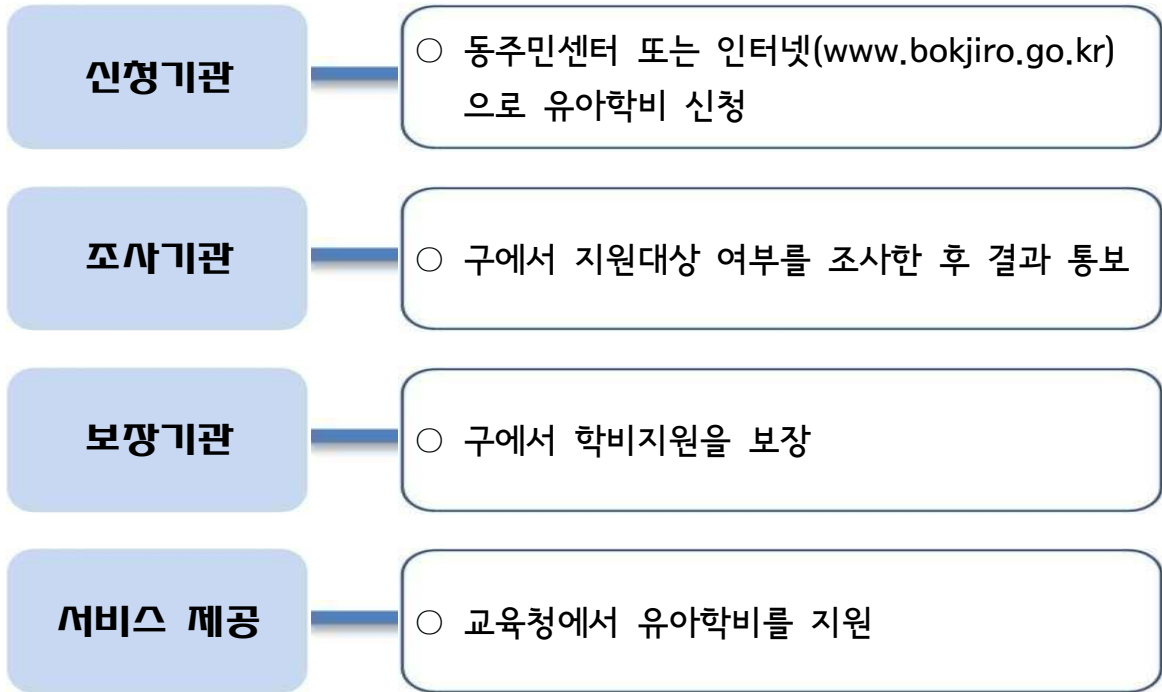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3 지원내용

- 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 유아의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만3~5세 유아의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안되며, 부모의 서비스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450-7541)

20 만0~5세 보육료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만0세아 : '15.1.1이후 출생아동
 만1세아 : '14.1.1. ~ '1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2세아 : '13.1.1. ~ '1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3세아 : '12.1.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4세아 : '11.1.1. ~ '1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5세아 : '10.1.1. ~ '1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 : '09. 1.1. ~ '09.12.31까지의 출생 아동
-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3.3.1일 이후 지원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2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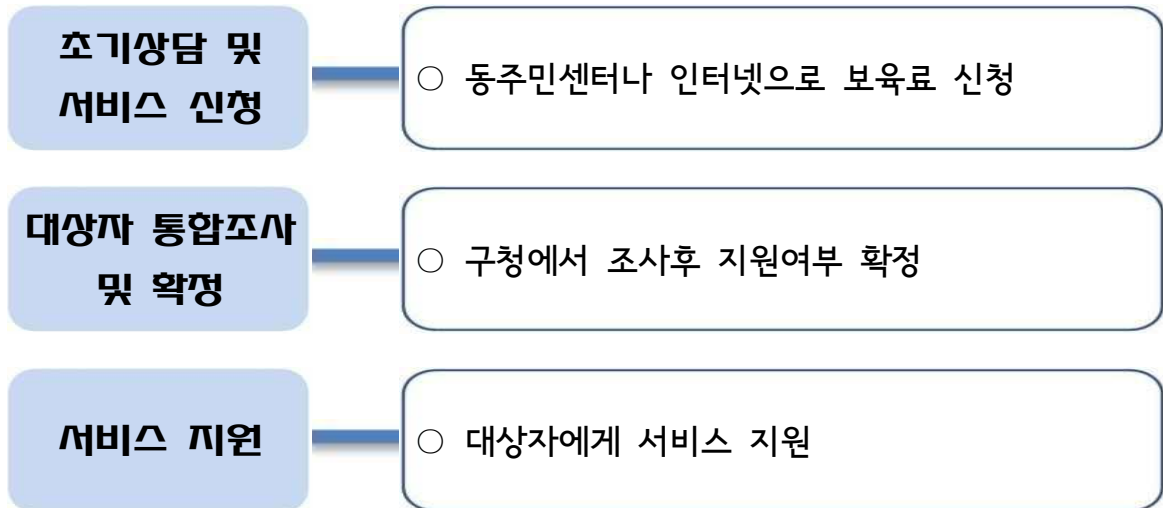
3 선정기준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를 지원
- 유아학비, 양육수당,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만0세아	418,000원
만1세아	368,000원
만2세아	304,000원
만3~5세아	220,000원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450-7541)

21 방과후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장애아동 지원

2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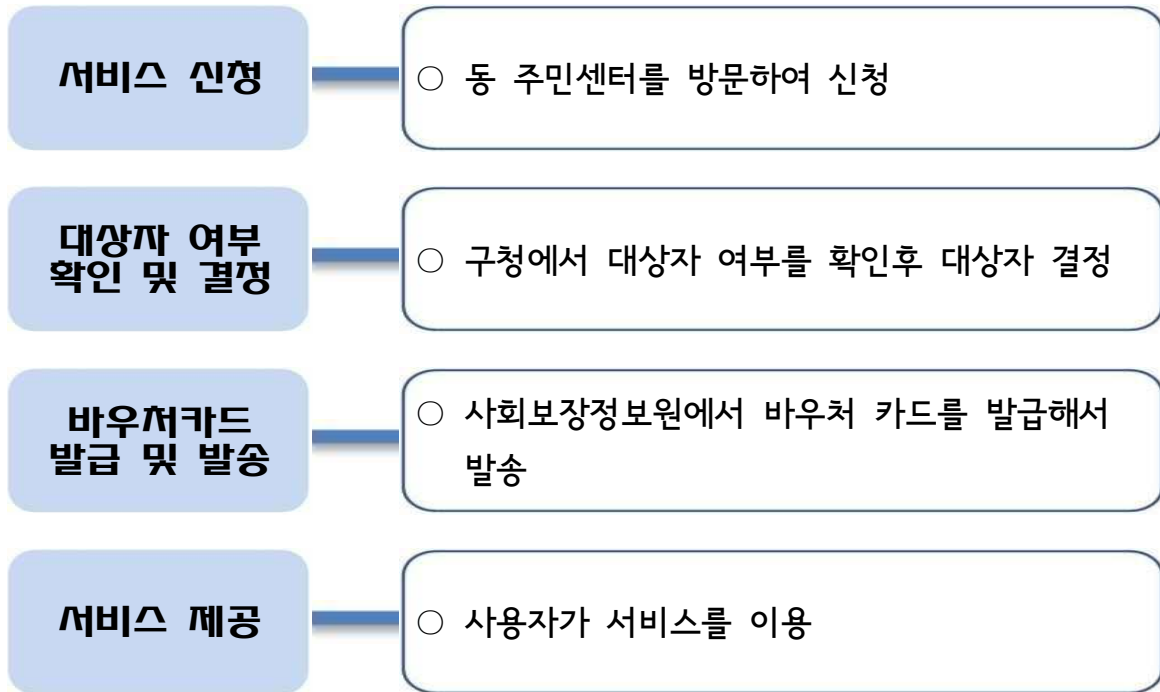
3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포함),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재소 증빙서 필요),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재소증명서 필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차상위자활 수급자 및 그 가구원, 우선돌봄차상위 수급자 및 그 가구원
⇒ 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격 확인 가능, 가구원중 한명이라도 위의 자격 보유시 조사 제외
-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을시 서비스(급여)와 영유아 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4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일반아동	월100,000원 지원 (1일 4시간 미만 이용시에는 지원 없음)
장애아동	보육료 100% 지원,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450-7541)

22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 만0세~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를 지원하는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만12세 이하의 취학아동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원장겸 교사의 자녀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지원합니다.

2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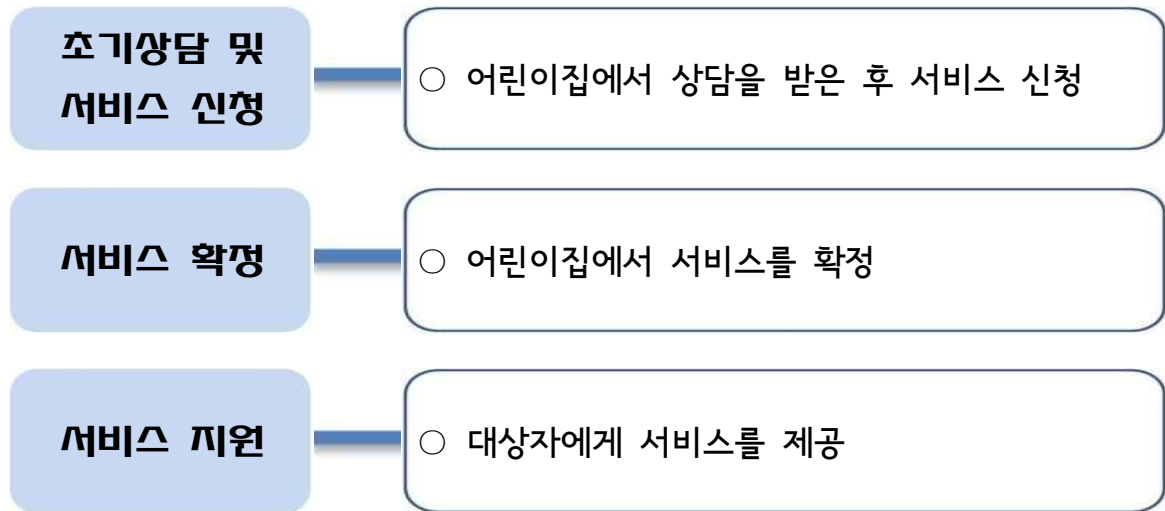
3 지원내용

매월 지원 한도액은 60시간이고,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을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단위 합산 후 단위는 절삭함.

구 분	내 용
보육시간	평일 기준시간을 초과한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시간연장형 보육료의 지원단가	
일반아동	시간당 3,000원
장애아동	시간당 4,0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구 분	내 용
● 야간 보육료의 지원단가	
만3세이상	220,000원
● 24시간 보육료 지원단가	
만3세이상	330,000원
● 휴일(토요일제외)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지원(지정시설은 100%지원)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450-7541)

23 시간제 보육

1 지원대상

- 종일제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

2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3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기본형 (월40시간)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 4,000원중 2,000원 지원 (학부모 자부담 2,000원)
맞벌이형 (월80시간)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 4,000원중 3,000원 지원 (학부모 자부담 1,000원)

4 업무 흐름도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서비스 확정

○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확정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5 문의처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450-7541)

24 장애인 아동 수당

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2 구비서류

- 필 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부채 확인서류

3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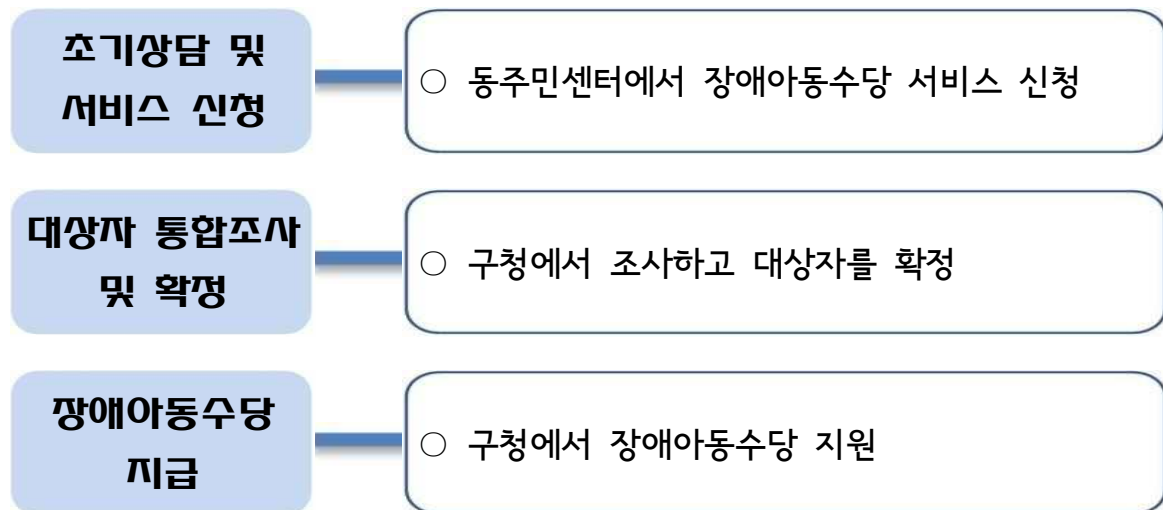
가구원 대상종류	중위소득의 50%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인정액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만18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경우 18~20세 포함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등급 1~6급 장애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 : 1급 및 2급과 3급 중복 장애인
· 경증장애인 : 3~6급 장애인

4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200,000원), 차상위계층(150,000원), 보장시설 생활(70,000원)
경증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100,000원), 차상위계층(100,000원), 보장시설 생활(20,000원)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450-7534)

25 장애인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또는 평가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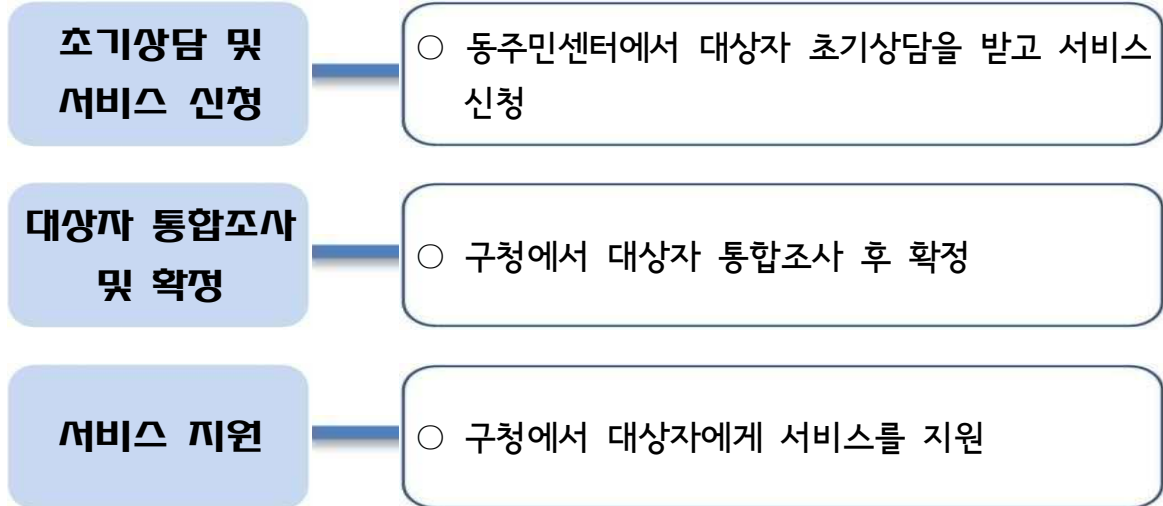
3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이하 장애아동을 선정합니다.

4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장애아반 편성 아동	438,000원
만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438,000원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 한도액 지원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450-7541)

2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사업)

1 지원대상

- 임산부(0세)와 만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지원합니다.(만12세 이상 아동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의 경우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해당연령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파악한 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대상자를 재선정합니다.

3 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해 서비스 대상 아동을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기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선별하여 아래와 같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건강검진(성장발달 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 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총8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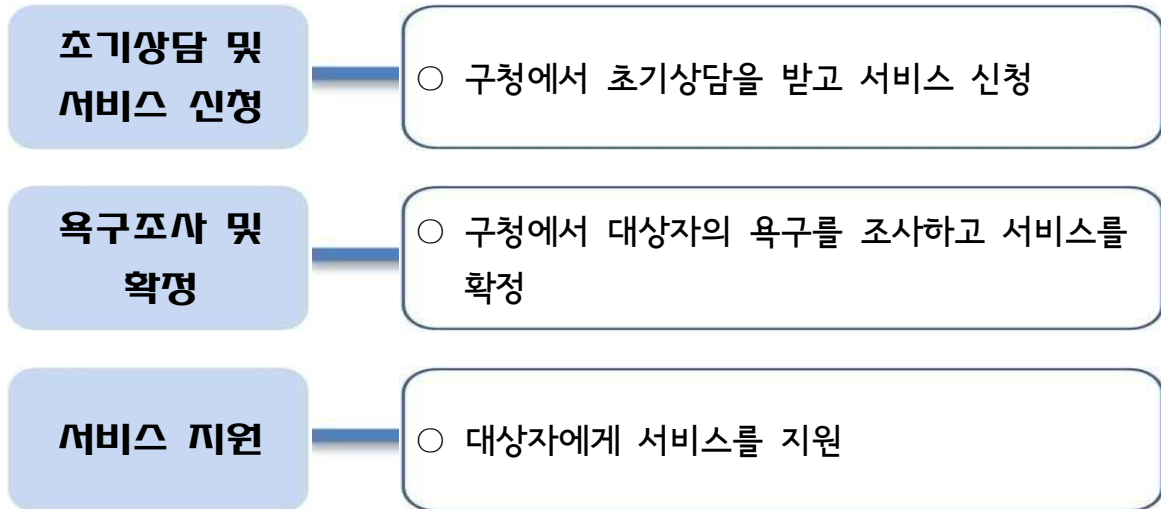
임산부 :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2종)

부 모 :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총1종)

- 사정결과에 따라 대상자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의 기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가정복지과 드림스타트팀 (☎450-1403)

27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지원

1 지원대상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종합적인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467-1827)

2 지원내용

-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일시 보육 서비스, 장난감 대여, 교재 및 교구 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3 문의처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467-1827)

28 아이돌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양육공백(맞벌이, 취업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이 발생하는 가정
- 서비스 이용대상
 - 시간제 : 만3개월 ~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영아 종일제 : 만3개월~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

2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건강보험증(납부확인서)
-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 소득증빙서류, 기타 양육공백 증빙서류
 - ※ 신청시 유의사항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자 이름이 동일하여야 정부지원 결정 가능(상이할 경우 결정정보 전송시 오류발생)
 - 시간제 A “라”형, B “나”, “다”, “라”형인 경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m.mogef.go.kr)에 직접 신청
- 신청방법
 - 정부지원 : 동주민센터
 - 정부미지원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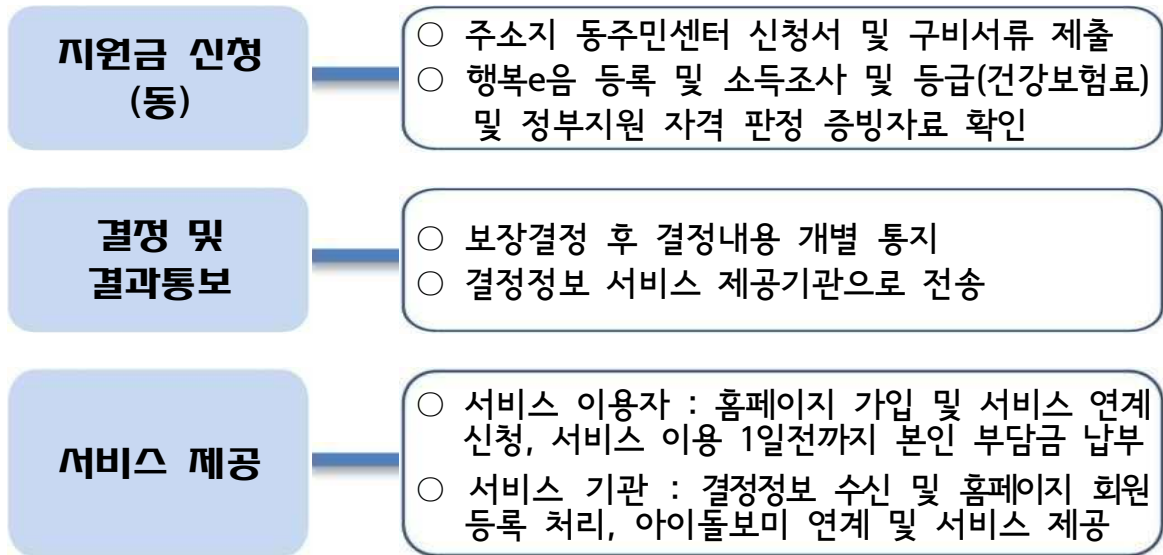
3 선정기준

- 정부 지원대상
 - 시간제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A형), 기준중위소득 65%이하(B형)
(이용요금 [시간당6,500원] 의 25~75% 차등지원)
 - 영아종일제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이용요금 [월156만원] 의 30~70%차등지원)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판별
- 정부지원대상자 자격
 - ① 아동연령
 - ②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④ 가구소득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시간제 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연480시간 이내 이용가능 - 이용요금 : 6,50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유형</th> <th rowspan="3">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th> <th colspan="4">시간제(시간당6,500원)</th> </tr> <tr> <th colspan="2">A형('09.1.1.이후출생아동)</th> <th colspan="2">B형('08.12.31.출생아동)</th> </tr> <tr> <th>정부지원</th> <th>본인부담</th> <th>정부지원</th> <th>본인부담</th> </tr> </thead> <tbody> <tr> <td>가형</td> <td>60%이하 (2,635천원)</td> <td>4,875원 (75%)</td> <td>1,625원 (25%)</td> <td>4,225원 (65%)</td> <td>2,275원 (35%)</td> </tr> <tr> <td>나형</td> <td>85%이하 (3,733천원)</td> <td>2,925원 (45%)</td> <td>3,575원 (55%)</td> <td>-</td> <td>6,500원</td> </tr> <tr> <td>다형</td> <td>120%이하 (5,270천원)</td> <td>1,625원 (25%)</td> <td>4,875원 (75%)</td> <td>-</td> <td>6,500원</td> </tr> <tr> <td>라형</td> <td>120%초과 (5,270천원)</td> <td>-</td> <td>6,500원</td> <td>-</td> <td>6,500원</td> </tr> </tbody> </table>	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시간제(시간당6,500원)				A형('09.1.1.이후출생아동)		B형('08.12.31.출생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이하 (2,635천원)	4,875원 (75%)	1,625원 (25%)	4,225원 (65%)	2,275원 (35%)	나형	85%이하 (3,733천원)	2,925원 (45%)	3,575원 (55%)	-	6,500원	다형	120%이하 (5,270천원)	1,625원 (25%)	4,875원 (75%)	-	6,500원	라형	120%초과 (5,270천원)	-	6,500원	-
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시간제(시간당6,500원)																																		
				A형('09.1.1.이후출생아동)		B형('08.12.31.출생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이하 (2,635천원)	4,875원 (75%)	1,625원 (25%)	4,225원 (65%)	2,275원 (35%)																																	
나형	85%이하 (3,733천원)	2,925원 (45%)	3,575원 (55%)	-	6,500원																																	
다형	120%이하 (5,270천원)	1,625원 (25%)	4,875원 (75%)	-	6,500원																																	
라형	120%초과 (5,270천원)	-	6,500원	-	6,500원																																	
영아종일제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시간 : 1일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월200시간 이내 이용가능 - 이용요금 : 6,50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유형</th> <th rowspan="2">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th> <th colspan="2">보육교사형(월156만원,200시간)</th> </tr> <tr> <th>정부지원</th> <th>본인부담</th> </tr> </thead> <tbody> <tr> <td>가형</td> <td>60%이하 (2,635천원)</td> <td>91만원 (70%)</td> <td>39만원 (30%)</td> </tr> <tr> <td>나형</td> <td>85%이하 (3,733천원)</td> <td>65만원 (50%)</td> <td>65만원 (50%)</td> </tr> <tr> <td>다형</td> <td>120%이하 (5,270천원)</td> <td>39만원 (30%)</td> <td>91만원 (70%)</td> </tr> <tr> <td>라형</td> <td>120%초과</td> <td>-</td> <td>130만원 (100%)</td> </tr> </tbody> </table>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보육교사형(월156만원,200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이하 (2,635천원)	91만원 (70%)	39만원 (30%)	나형	85%이하 (3,733천원)	65만원 (50%)	65만원 (50%)	다형	120%이하 (5,270천원)	39만원 (30%)	91만원 (70%)	라형	120%초과	-	130만원 (100%)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보육교사형(월156만원,200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이하 (2,635천원)	91만원 (70%)	39만원 (30%)																																			
나형	85%이하 (3,733천원)	65만원 (50%)	65만원 (50%)																																			
다형	120%이하 (5,270천원)	39만원 (30%)	91만원 (70%)																																			
라형	120%초과	-	130만원 (100%)																																			
주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와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의 이름 일치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서 접수 가능함 ● 다자녀 가정의 지원연령 입원기간 학원수강 기간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연령초과, 기간 초과 시 정부지원 중지됨을 안내 ● 시간제돌봄 서비스의 경우 보육시설(평일 9~17시) 및 유치원(평일 9~13시)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 보육료,양육수당,아이돌봄 시간제 ↔ 영아종일제 자격 변경시 변경신청 해당월에는 기존 서비스를 말일까지 제공 신규자격은 익월 1일부터 개시 ● 영아종일제 "라형" → 양육수당 신청가능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450-7557)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팀 (☎458-0183)

29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보건소 및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 예방접종 비용전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2015년 지원대상 백신(14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BCG(피내용), B형간염, DTaP-IV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시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A형간염
- 지원 미대상 백신은 다음과 같으며,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결핵 경피용, A형간염,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 예방접종기록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 보관 및 관리
예방접종증명서를 인터넷발급 서비스(민원24 홈페이지)에서 무료발급
예방접종 확인 및 다음 접종 사전알림서비스(문자수신 동의자에 한함)
예방접종 안전관리

3 지원절차

보건소와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 체결

- 보건소와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 체결

예방접종 일정 알림

-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일정 알림

예방접종 시행

-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행

4 문의처

보건소 가족보건팀 (☎450-1958)

30 언어발달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시각, 청각 등록 장애인이거나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때, 만10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를 지원

2 구비서류

- .필 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신분증, 소득서류
- 해당자 :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산정, 확인용)기타 소득 증명 자료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선정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소득별 차등지원)

대상종류 \ 가구원	2016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원)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3,164,000	4,508,000	5,160,000	5,44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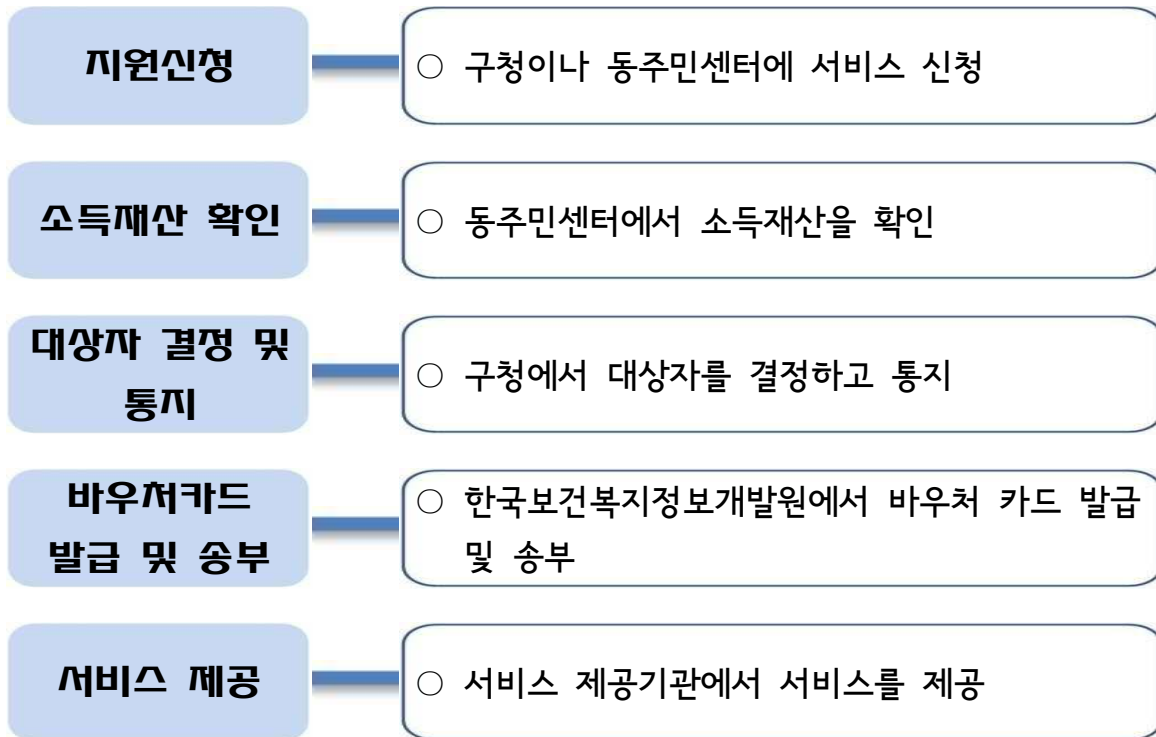
4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 지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구 분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20,000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 상 위 계 층	20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18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장애인팀 (☎450-7532)

31 입양비용지원

1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입양알선비용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합니다.
- 입양철회비용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얼마 후 철회를 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3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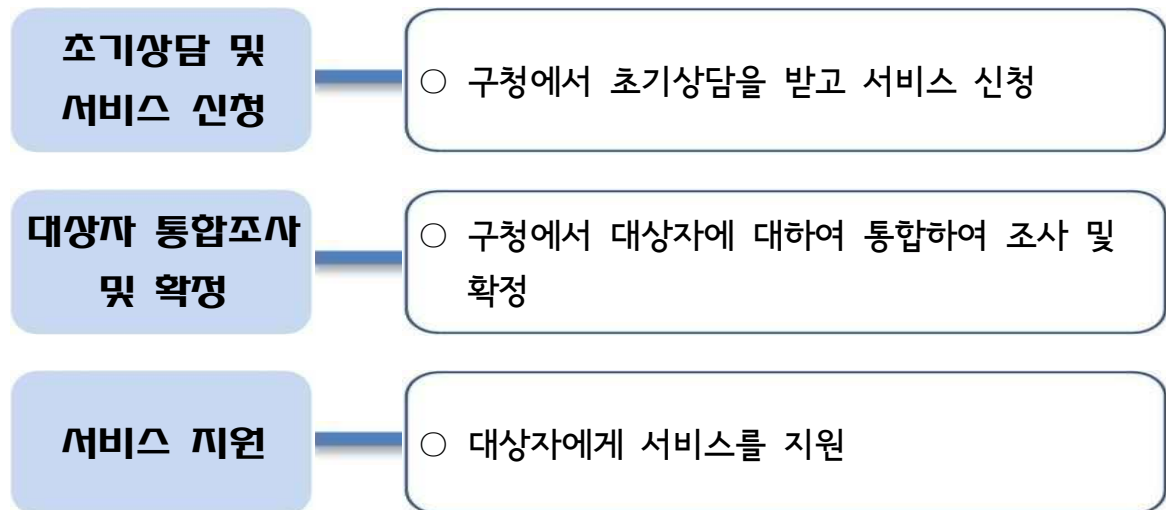
- 입양알선 비용 지원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 비용),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지원 (복지부 허가기관 2,700,000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0,000원 정액 지원)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해당 지자체)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알선 비용을 일괄청구
지급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철회비용 지원 비용 지원

구 분	내용
지원내용	아동 입양에서부터 철회까지 아동보호기간 동안 소요된 비용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구청에 입양비용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을 일괄 청구
지급	입양철회비용은 해당 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입금

4 지원절차



5 문의처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 (☎450-7561)

32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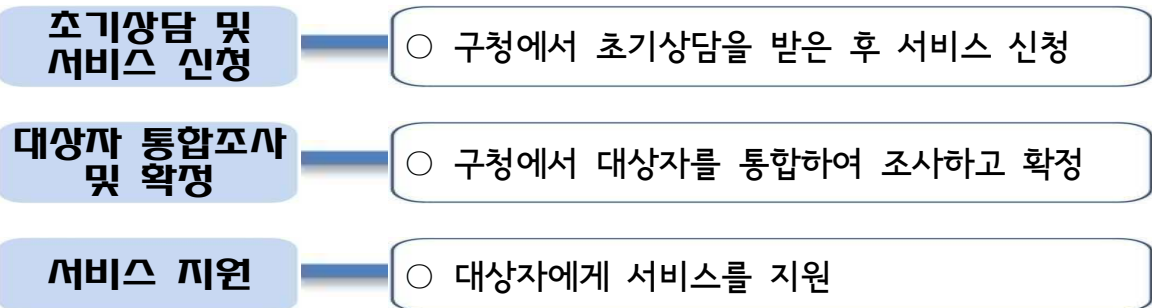
2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16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만16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150,000원 양육수당 지급

4 지원절차



5 문의처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 (☎450-7561)

33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1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함

2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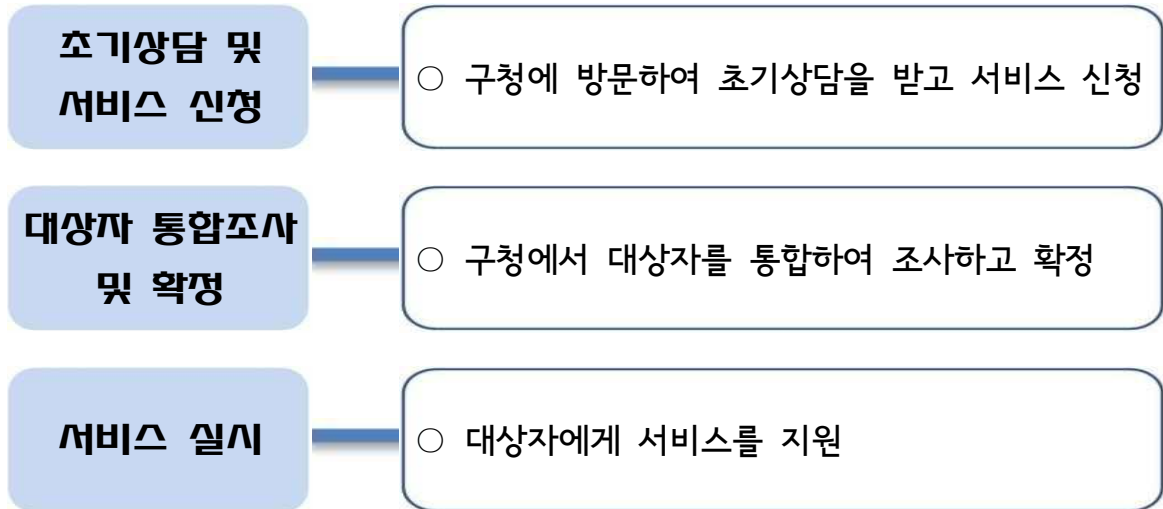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분만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입양후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합의 하에 결정하고, 만 18세까지 지원(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졸업때까지 지원

3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중증장애입양아동	월627,000원
경증장애입양아동	월551,000원

4 지원절차



5 문의처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 (☎450-7561)

34 장애인양아동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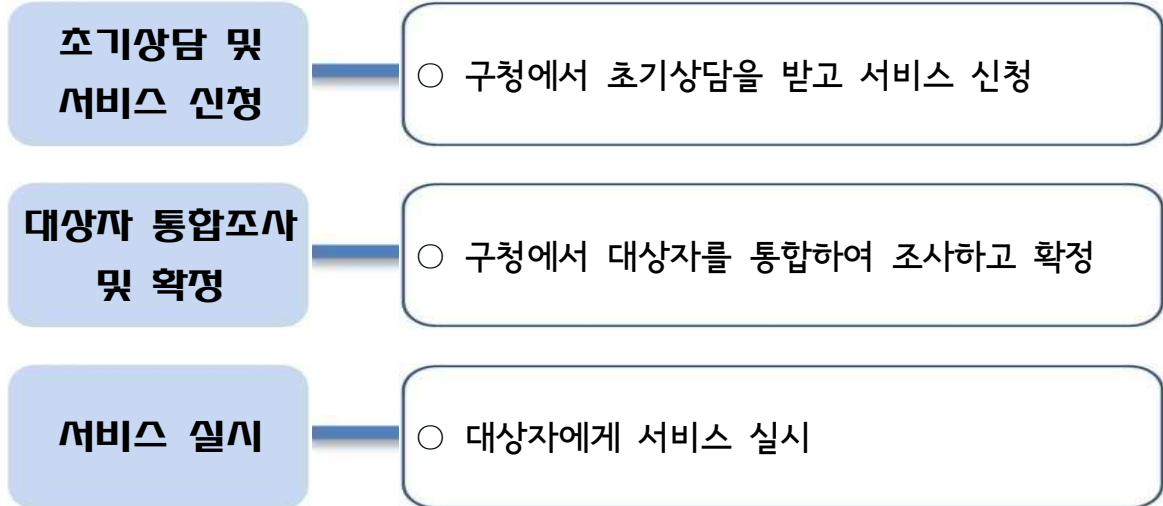
2 선정기준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분만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인해, 입양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도 지원합니다.
 - 위의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
- 입양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도 지원합니다.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협의 후 결정
 -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고등학교 재학중일 경우, 만18세 이상이라도 졸업때까지 지원

3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양육자가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연간 2,600,000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용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중 본인부담금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이내에서 지원합니다.

4 지원절차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450-7514)

35 고교 학비 지원

1 지원대상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 학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시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인 중위소득의 60%인 경우 학비를 지원합니다.

가구원 대상종류	중위소득의 60%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인정액	974,899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학생 중 학생복지 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인 경우 학비를 지원합니다.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장학재단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를 부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기관 장학금 등 기타 방법으로 전액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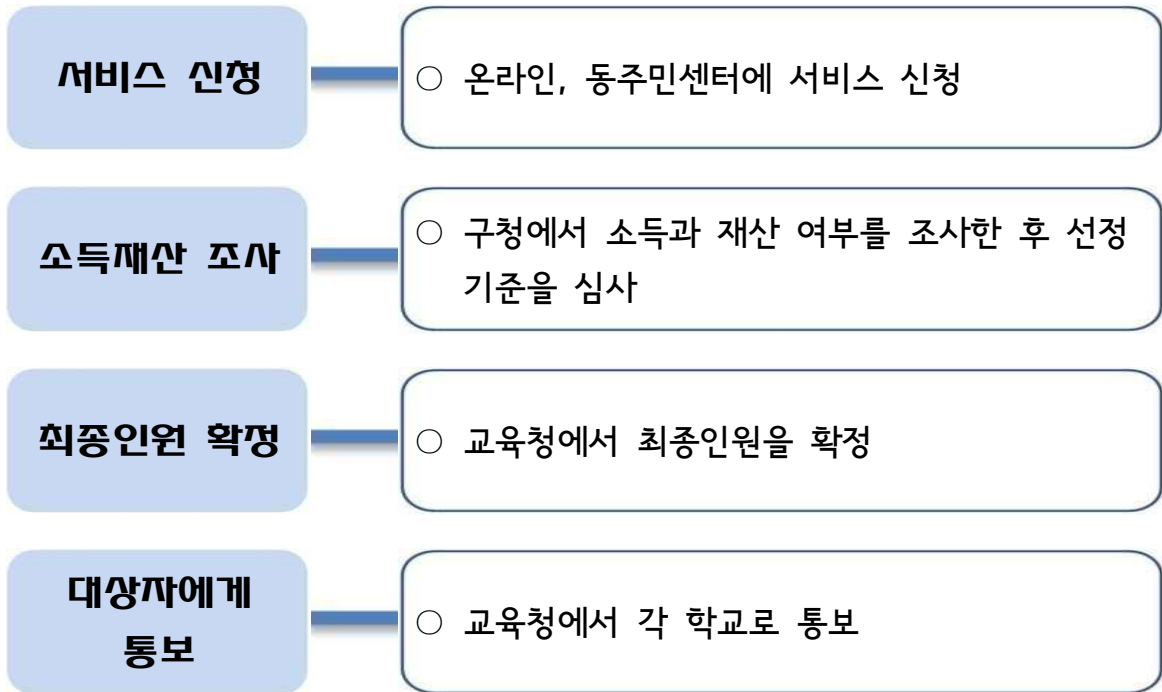
2 구비서류

- .필 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등 제공동의서
-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대상자는 구비서류 생략

3 지원내용

-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합니다

4 지원절차



5 문의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02-1396)

36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781,169원

2인가구 : 1,330,093원

3인가구 : 1,720,682원

4인가구 : 2,111,267원

5인가구 ; 2,501,851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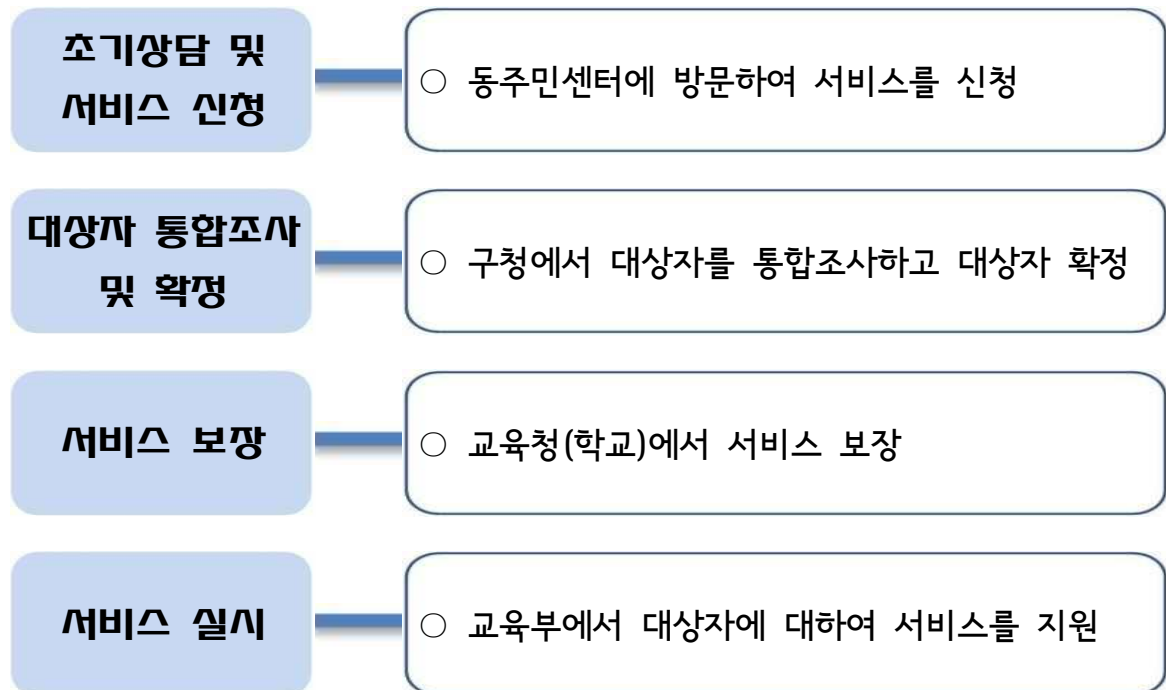
2 구비서류

- .필 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3 지원내용

구 분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초등생 부교재비	1인당 39,200원 연1회 지급
중학생	부교재비로 1인당 39,200원을 연1회 지급 학용품비로 1인당 26,650원을 연2회 지급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전액지급 교과서대금(부교재비 포함)으로 1인당 131,300원을 연1회 지급 학용품비로 1인당 26,650원을 연2회 지급

4 지원절차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37 긴급복지 교육지원

1 지원대상

-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지원합니다.

2 구비서류

- .필 수 : 주거관련서류, 가구원전체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 필요시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선정기준

-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가구원 대상종류	소득인정액(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긴급지원	1,218,623	2,074,953	2,684,264	3,293,576	3,902,888	4,512,199	5,121,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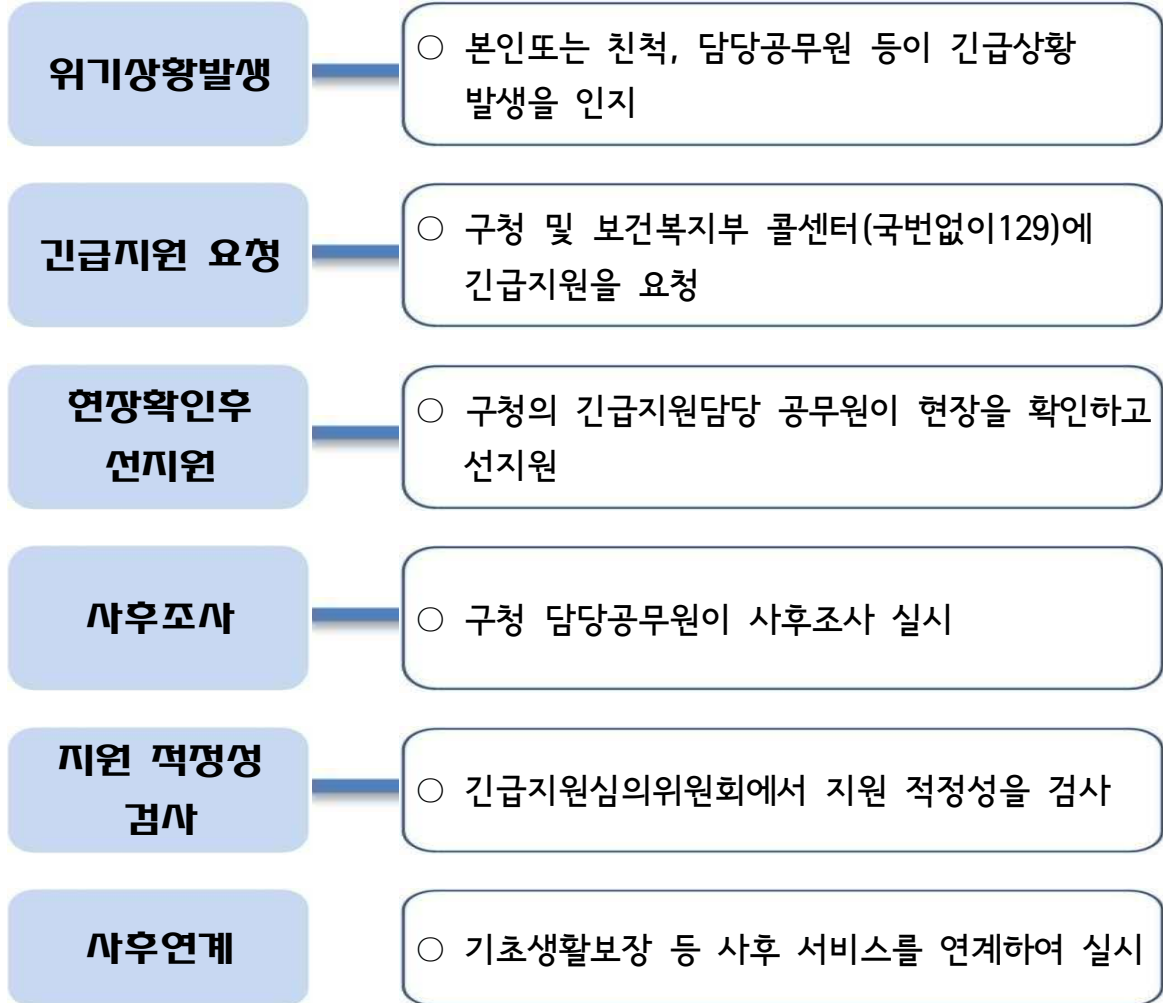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09,312원씩 증가(8인가구 5,730,823원)

- 재산 : 대도시 135,000천원, 금융재산은 5,000천원(생계비 등) 이하,
7,000천원(주거비) 이하

4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초등학생	214,200원 지급
중학생	340,900원 지급
고등학생	417,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급

5 지원절차



6 문의처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450-7492)

38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1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 1~3급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1급~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52%이하를 선정합니다.

가구원 대상종류	중위소득의 52%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인정액	-	1,438,634	1,861,090	2,283,546	2,706,001

- 가구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 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제외하고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3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학교장이 고시한 금액) 교과서대(131,300원), 학용품비(53,300원) 지원
중 학생	부교재비(39,200원), 학용품비(53,300원) 지원
초등학생	부교재비(39,200원) 지원

4 지원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한 후 확정

서비스 실시

- 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실시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450-7533)

39 지역아동센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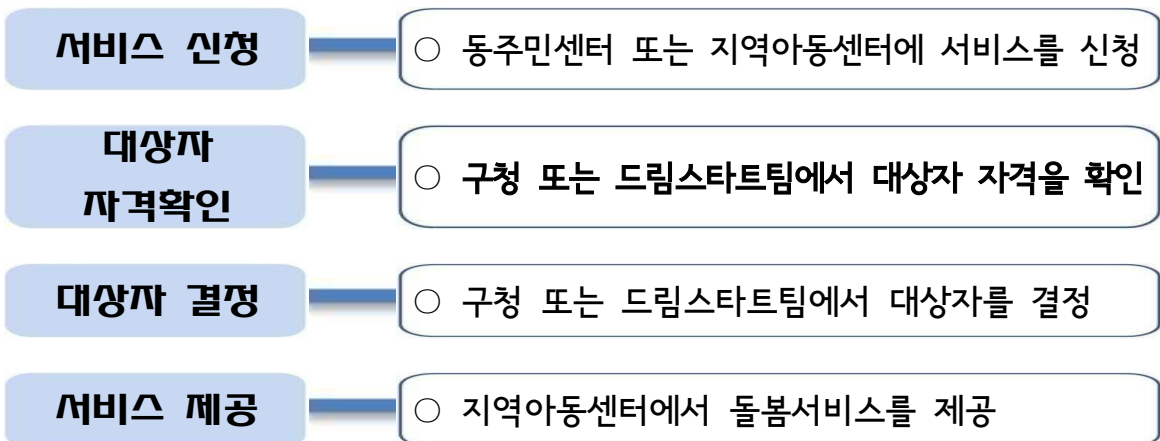
1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18세 미만의 아동(취약계층60%, 일반아동40%)에게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교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취약계층 아동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
 - 차상위계층의 아동
 - 보호대상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아동
 - 다문화가정 아동
 -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정의 아동
 -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의 70%이하 가구중 구청장이 승인한 아동

2 지원내용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업무 흐름도



4 문의처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 (☎450-7562)

40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1 지원대상

-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가구는 제외)

가구원 대상종류	중위소득의 60%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인정액	-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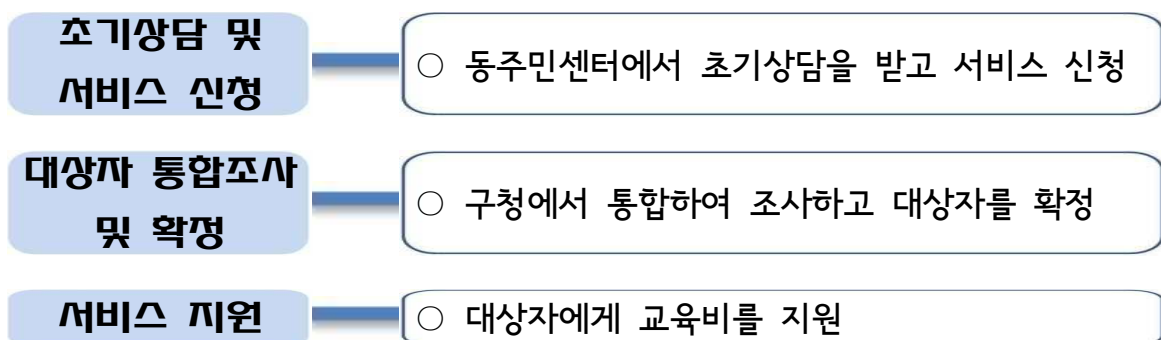
2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3 지원내용

- 고등학교교육비(학비)를 실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로 지원합니다.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450-7554)

41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1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2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3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선정합니다.

가구원 대상종류	중위소득의 52%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인정액	-	1,438,634	1,861,090	2,283,546	2,706,001

-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이며,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자를 포함)인 가족이며,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입니다.
조손가족은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이혼,유기, 행방불명, 실종,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입니다

4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5 업무 흐름도

조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구청에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확정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지원

6 문의처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450-7554)

42 꿈나래 통장사업

1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14세이하 양육자녀의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저축하고자 하는 저소득 가구

2 구비서류

- 필 수 : 신청서(증명사진 1매 필요),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신분증), 가구원 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1년간)

3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부양비 선정 제외)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925,922	1,576,57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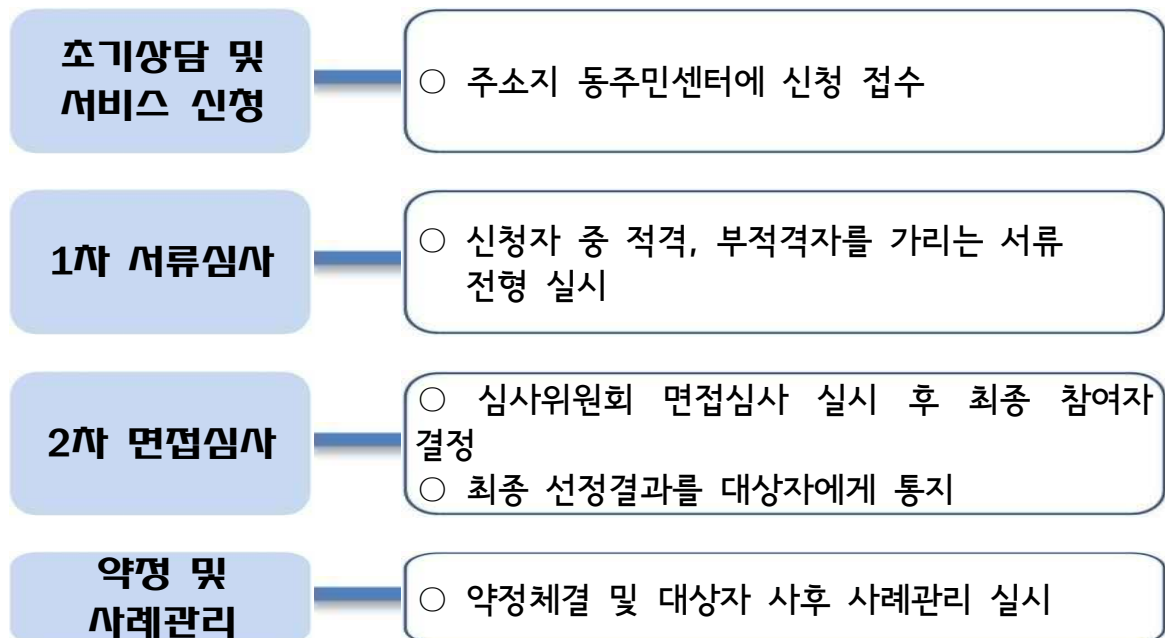
-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 2015년 최저생계비 150%에 대한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 전 가구원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적용

4 지원내용

구분	희망플러스 통장사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 최초 저축개시일로부터 36개월 또는 60개월 ● 지원금액 : 저축액 대비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매칭비율 지원 				
	소득구분	적립기간	월 적립액		총적립금 (최대금액/3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년 5년 (선택)	가입자	사바·민간후원금	1,200만원+이자
	수급자외 저소득층		3/5만원 7/10만원	1.5/2.5만원 3.5/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금리 : 협력은행과 별도 협약 ● 부가지원 :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부모교육,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 저축방법 : 매월25일 저축적립 통장에 자동이체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가정복지과 아동복지팀 (☎450-7564)

43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1 지원대상

- 아래 자격을 갖춘 만5세~만18세 유·청소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2순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우선돌봄), 한부모수급자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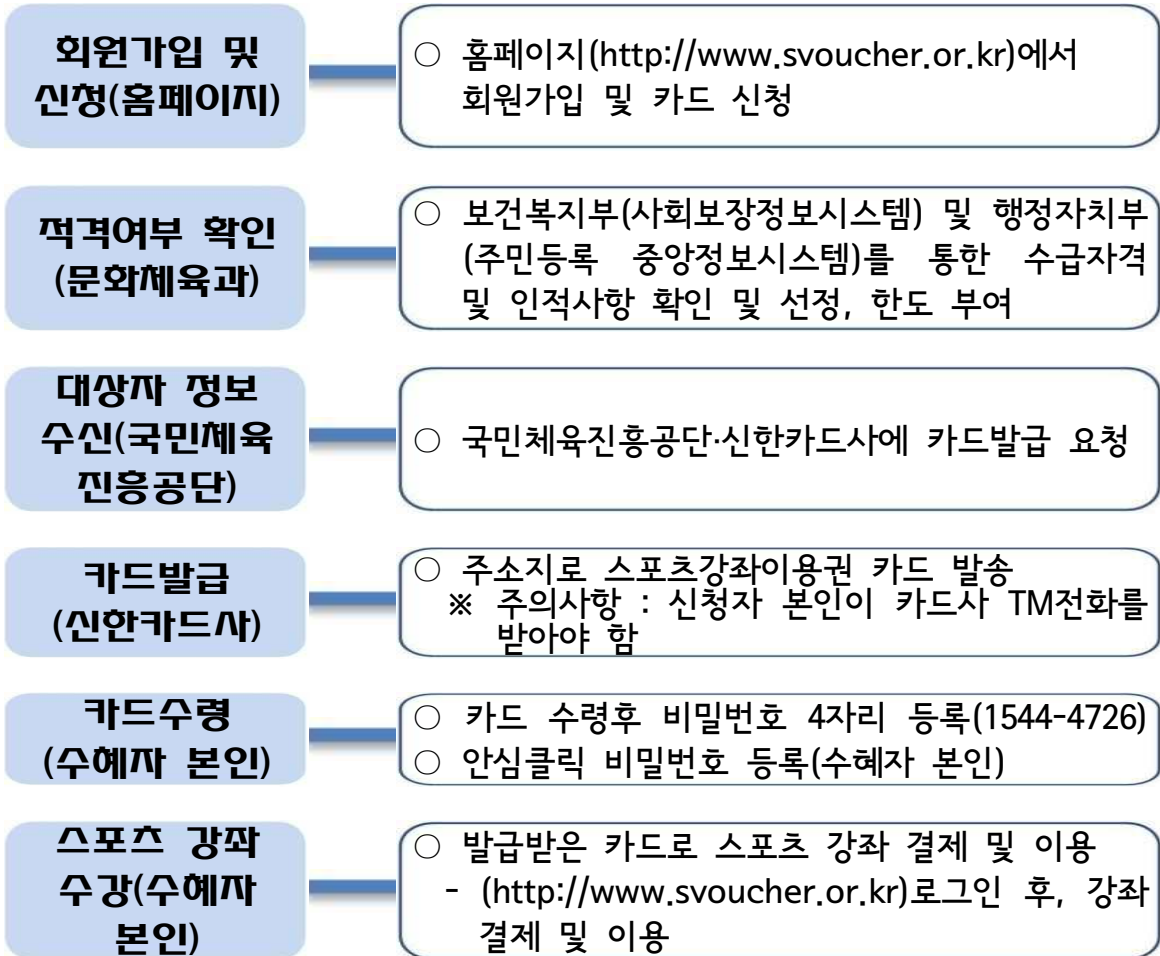
2 구비서류

- 홈페이지 신청 : 구비서류 없음(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우선돌봄 대상자는 증명서 제출)

3 지원내용

구 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좌이용권 지급 : 월 최대 7만원지원 -지급기준 : 세대당 1매 ● 지원내용: 전국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 이용가능 ● 수혜자 선정 순위(2015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신규가입자 - 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기존수혜자 - 3순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한부모 우선돌봄) 신규가입자 - 4순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한부모 우선돌봄) 기존수혜자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스포츠 강좌이용권 시설 이용 가능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통해 시설 확인 ● 온라인 결제 : 홈페이지에서 시설확인후 온라인 결제 ● 1인 1강좌 원칙 2개 강좌 신청 불가 ※ 반드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터넷 결제 원칙 카드 단말기 이용시 지원 불가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450-7588)

44 청소년증 발급

1 지원대상

-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2 구비서류

- 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cm×4cm) 1매
※ 발급신청확인서 요청시 2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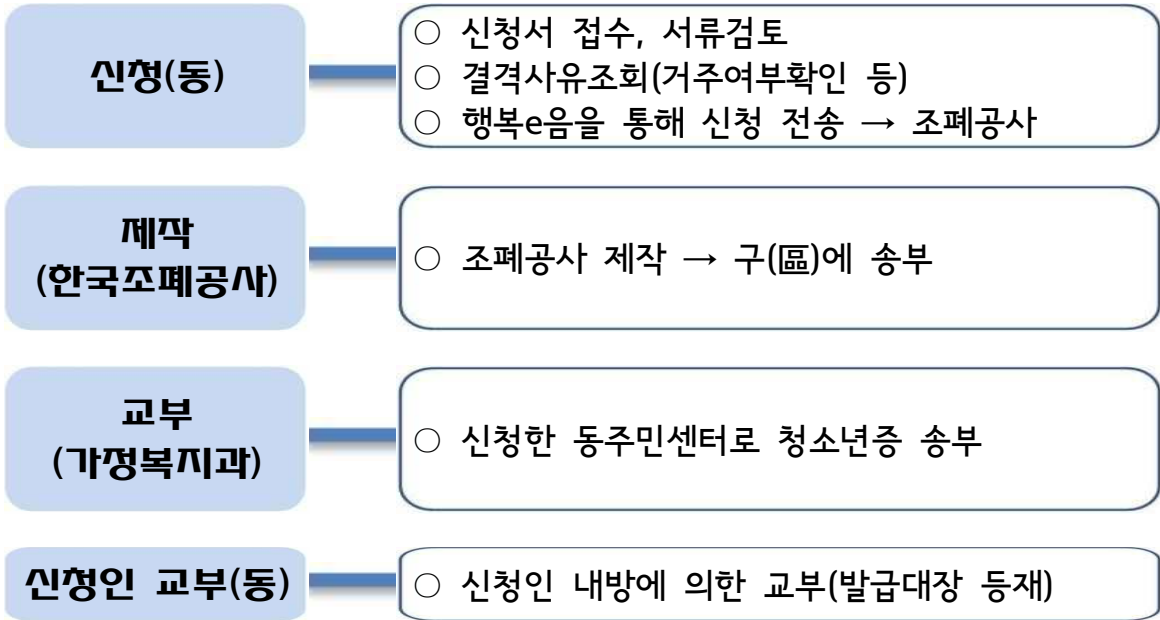
3 선정기준

구 분	청소년증 발급
발급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본인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 ※ 부모님 동행 없이 청소년 본인이 신청 가능 ● 대리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할인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 버스20% 지하철20% 여객선10% ● 영화관 : 500원~1,000원 등 ● 박물관 공원 : 면제~50%내외 ● 미술관 유원지 공연장 궁, 능원 : 30~50% 내외 ※ 할인혜택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 (☎450-7562)

45 발달재활서비스

1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뇌병변, 지적, 자폐,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 양육가정

대상종류	가구원	2016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2,470,000	4,746,000	6,763,000	7,741,000	8,168,000

2 구비서류

-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 카드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 해당자 : 건강보험증 사본, 의사진단서(만6세미만 영유아의 경우 예견되는 장애유형, 재활필요 소견 명시), 검사자료

3 선정기준

-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 소득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15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지원합니다.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4 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구 분	내 용
기초생활수급자	220,000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200,000원(본인부담금 2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180,000원(본인부담금 4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6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8만원)

- 언어, 청각능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운동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지원절차

서비스 신청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소득재산 조사	○ 동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
지원대상자여부 및 등급결정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여부와 등급을 결정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신청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발송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발송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450-7533)

46

입원·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1 지원대상

-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입원 치료중인 결핵환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2015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300%미만(환자가구)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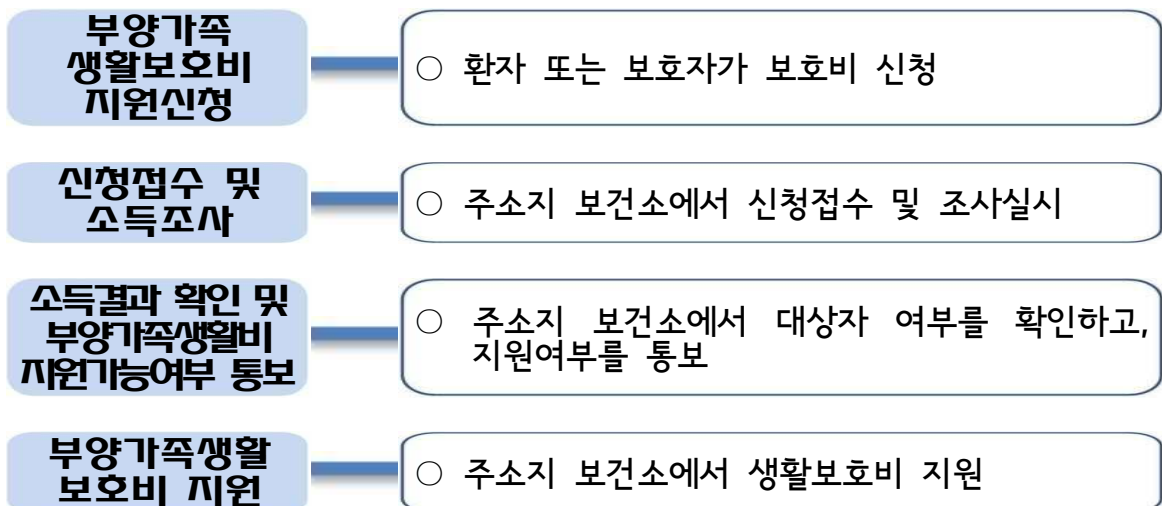
2 선정기준

- 입원·격리치료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 소득이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자격조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소득산정기준은 공적 자료 반영기준을 기본으로 합니다.

3 지원내용

- 2015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은 입원·격리치료 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450-1936)

47 정신보건센터 운영

1 지원대상

-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지역주민과 다음과 같은 아동·청소년 및 정신건강 관계자는 해당 지역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방문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대상자
 - 지역사회 내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청소년쉼터(가출 청소년 일시보호소),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등
 - 부모, 교사, 시설종사자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

2 지원내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을 보조합니다. 그밖에도 상담과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업무 흐름도

신청기관

○ 구의 정신건강 증진센터에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

○ 구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조사

보장기관

○ 구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보장

제공기관

○ 구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4 문의처

중곡종합건강센터 정신보건센터 (☎450-1565)

48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1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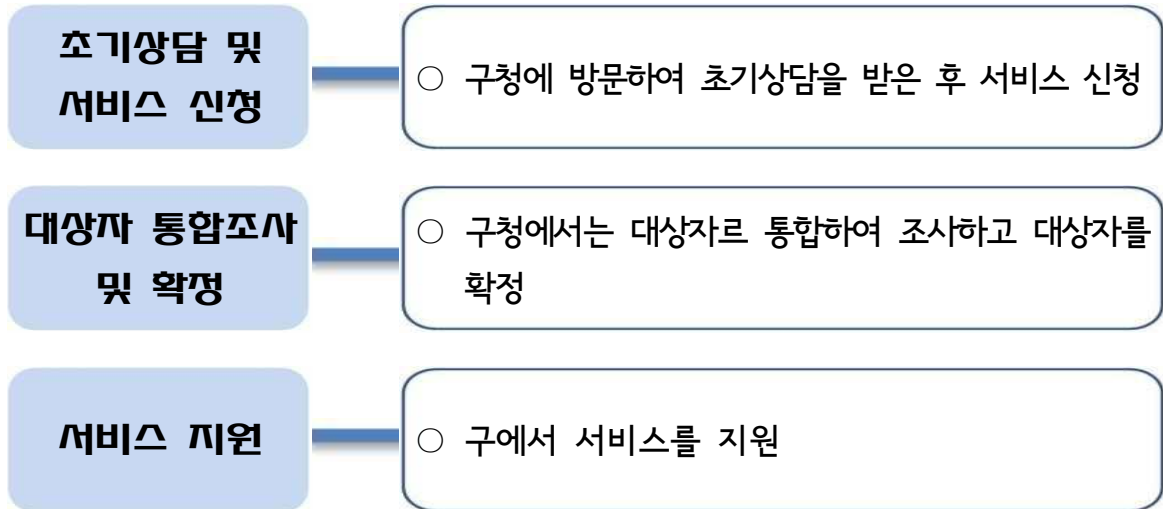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 생활 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 2011년 : 1999년생(신규)
 - 2012년 : 1999년(기존) / 2000년생(신규)
 - 2013년 : 1999년 / 2000년생(기존) / 2001년생(신규)
 - 2014년 : 1999년생 / 2000년생 / 2001년생(기존) / 2002년생(신규)
 - 2015년 : 1999년생 / 2000년생 / 2001년생 / 2002년생(기존) / 2003년생(신규)
- 2003년생은 2015년 1월중 홍보하고, 2월중 통장가입 희망자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 선별(통장가입 포함)한후, 3월부터 매칭 지원을 시작합니다.
- 가정이 회복되어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희망플러스(서울시), 꿈나래(서울시) 통장 등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 사업과 지원가구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지역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2013.1.1일부터)

3 업무 흐름도



4 문의처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 (☎450-7569)

4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 자폐성, 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장애인(장애1~3급)

2 구비서류

-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소득 증명자료
- 해당자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 선정기준

- 전국가구평균 100%이하인 1~3급 장애아동을 선정합니다(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지원을 받는 중간에 만18세가 됐을때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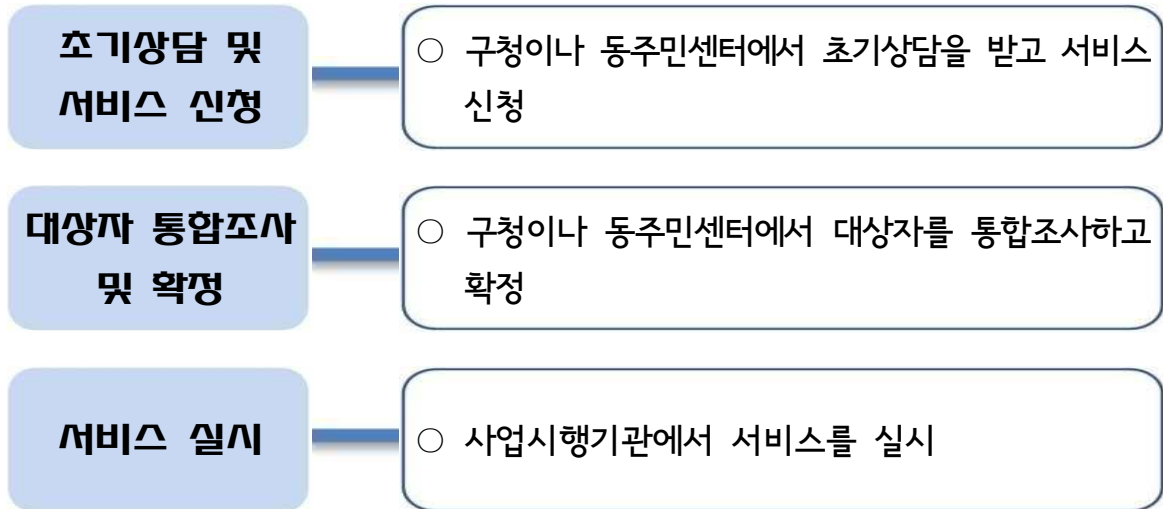
대상종류 \ 가구원	2016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원)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3,164,000	4,508,000	5,160,000	5,445,000

- 다른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 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 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원내용

- 한가정당 연480시간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5 지원절차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450-7531)

50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

1 지원대상

- 대 상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
- 신청자 : 다자녀가정 세대원중 만18세(주민등록증 발급나이)이상인 자

2 구비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우리은행 전 영업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우리은행 방문 신청시)

3 사업개요

구 분	지원내용
신용(체크)카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칼텍스 리터당 2자녀 50원, 3자녀 60원, 4자녀 이상 70원 할인(LPG충전액 제외) ※ 최근 3개월간 신용구매 이용실적(GS칼텍스 주요제외) 30만원 이상 고객에 한함 ● 패밀리 레스토랑 20% 할인(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빕스, T.G.I Friday's, 베니건스, 우노) ※전월 신용구매 20만원 이상 회원에 한함 ● 환전수수료 50% 우대 ● 우리은행 24시간 CD/ATM 예금인출, 이체수수료 및 인터넷뱅킹(텔레뱅킹 포함) 수수료 면제 ● 연회비, SMS 문자서비스 평생 무료제공 ● 기타 혜택은 홈페이지(http://seouli.bccard.com) 참조

4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등록

○ 동주민센터

카드발급 및
배송, 본인수령

○ 카드사

※ 우리은행 전국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

5 문의처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450-7554)

51 아동급식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중
 - 소년소녀가정 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족
 - 보호자가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동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자로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2 구비서류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영수증,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3 선정기준

- 201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 원수	중위소득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1인	802천원	24,944	4,041	26,209
		(26,578)	(4,306)	(27,926)
2인	1,366천원	41,544	18,324	42,212
		(44,265)	(19,524)	(44,977)
3인	1,768천원	54,261	35,239	54,630
		(57,815)	(37,547)	(58,208)
4인	2,169천원	66,550	55,215	66,814
		(70,909)	(58,832)	(71,190)
5인	2,570천원	78,716	76,143	79,472
		(83,872)	(81,130)	(84,677)
6인	2,971천원	90,671	91,873	91,062
		(96,610)	(97,891)	(97,027)
7인	3,373천원	103,233	110,404	104,450
		(109,995)	(117,635)	(111,291)
8인	3,774천원	115,136	126,409	116,655
		(122,677)	(134,689)	(124,296)
9인	4,175천원	127,882	141,621	129,743
		(136,258)	(150,897)	(138,241)
10인	4,576천원	139,235	153,994	141,277
		(148,355)	(164,081)	(150,531)

*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기준액수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1식 4,000원(전자카드, 단체급식)
지원방법	● 일반음식점(편의점 포함), 단체급식

5 업무 흐름도

아동급식 신청 (동)

-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 결격사유조회(주민등록시스템으로 거주여부 확인)

실태조사 (동)

- 결식아동 대상 생활실태조사
(식사형태, 가구구성, 급식 필요사유 등)
- 동주민센터 ⇒ 가정복지과 선정 요청

대상자 선정 (가정복지과)

- 대상자 선정

서비스 이용

- 대상자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등)

6 문의처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 (☎450-7564)

52 미취업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1 지원대상

만18세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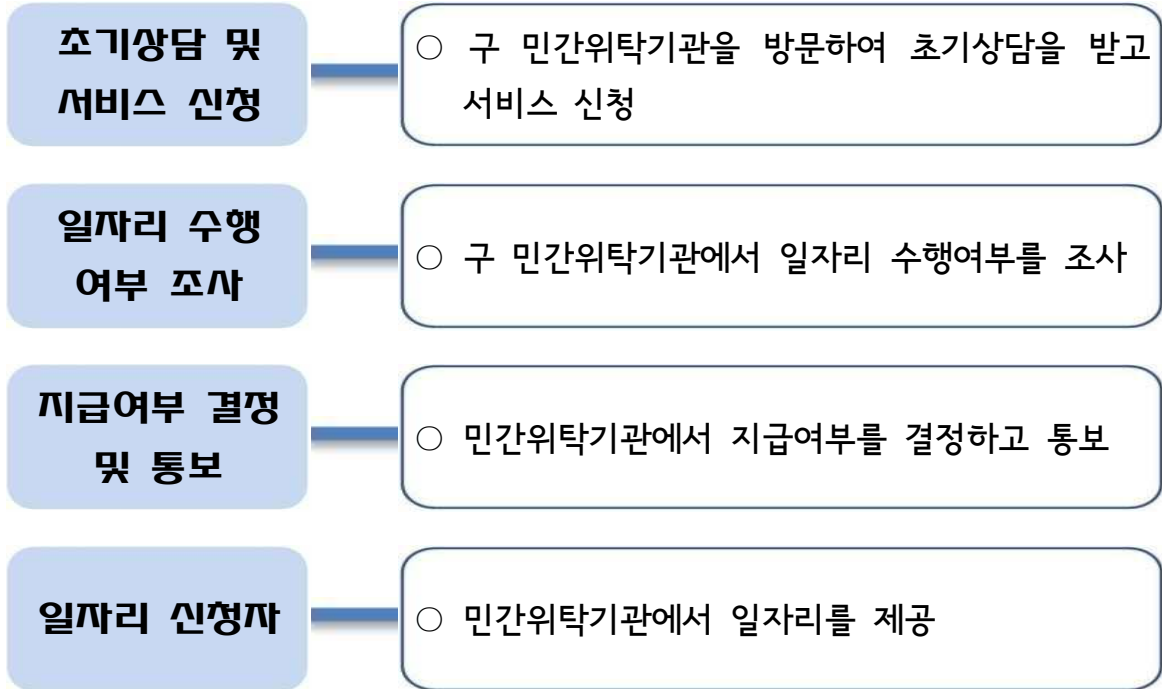
2 선정기준

- 행정도우미 :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에서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선발
-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며 사무자동화(문서작성, 데이터관리 등)를 통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행정을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회복지관련 전공자거나 관련 분야의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배치)
 - 1순위 : 신규중증(1~3급)장애인
 - 2순위 : 중증(1~3급)장애인, 여성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장애인
 - 3순위 :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우선선발 순위를 고려해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발, 신규 참여자를 선발하여 취업의 기회를 골고루 배분함)

3 지원내용

- 일반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월급은 1,167,000원입니다.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450-7097)

53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1 지원대상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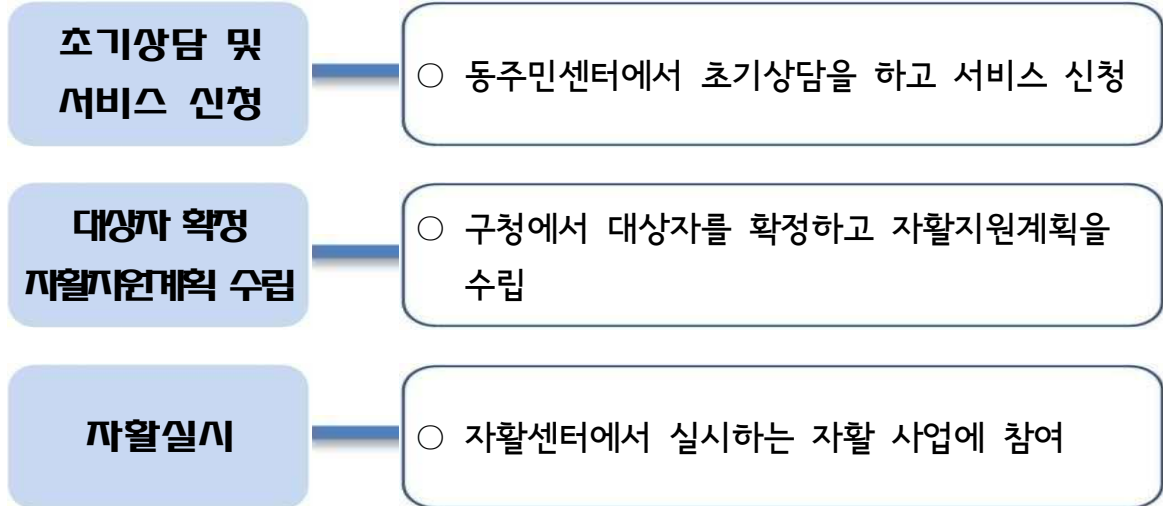
2 선정기준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여건, 환경적응, 근로참여 등으로 조건부과가 제외된자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를 지원받는 가구의 가구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서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가구원을 지원합니다.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의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활급여특례자를 지원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를 지원합니다.(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

3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5일 근무, 급여 36,770원(38,770)
인턴형	1일 8시간, 주5일 근무, 36,770원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1일 8시간, 주5일 근무, 33,270원(35,270)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5일 근무, 24,800원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 (☎450-7522)

54 자활장려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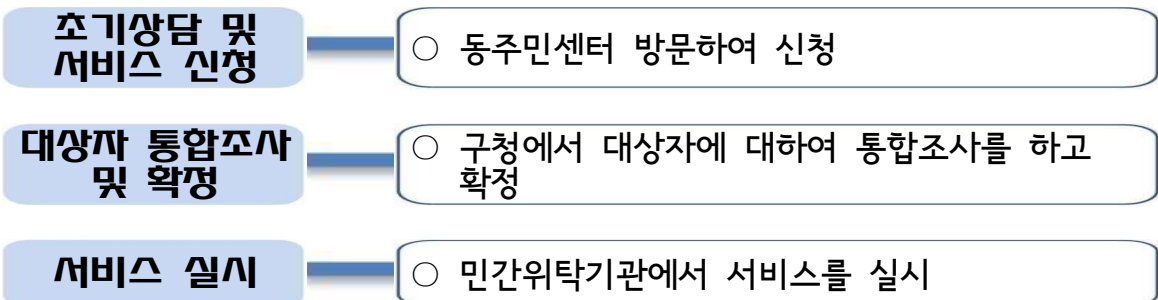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거나 자활기업에 근무하면 지원합니다.
- 차상위계층, 자활급여특례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자활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합니다.

2 지원내용

-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자활기업에 근무하여 얻은 소득,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은 포함하여 산정) : 공제율 30%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를 계산하는 방법 :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30%)-(생계급여기준 초과소득)
 생계급여기준 = 현금급여기준-해당가구의 주거급여액

3 업무 흐름도



4 문의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450-7526)

55 공공근로사업

1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광진구민(사업개시일 현재)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노숙자(행정기관 인정)
- 신청인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이하 신청자는 재산기준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구소득 합산 시 가족의 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로 한정함.

2 구비서류

- 필 수 : 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고지서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구직등록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직업훈련 참여 확인증, 장애인 복지카드, 실직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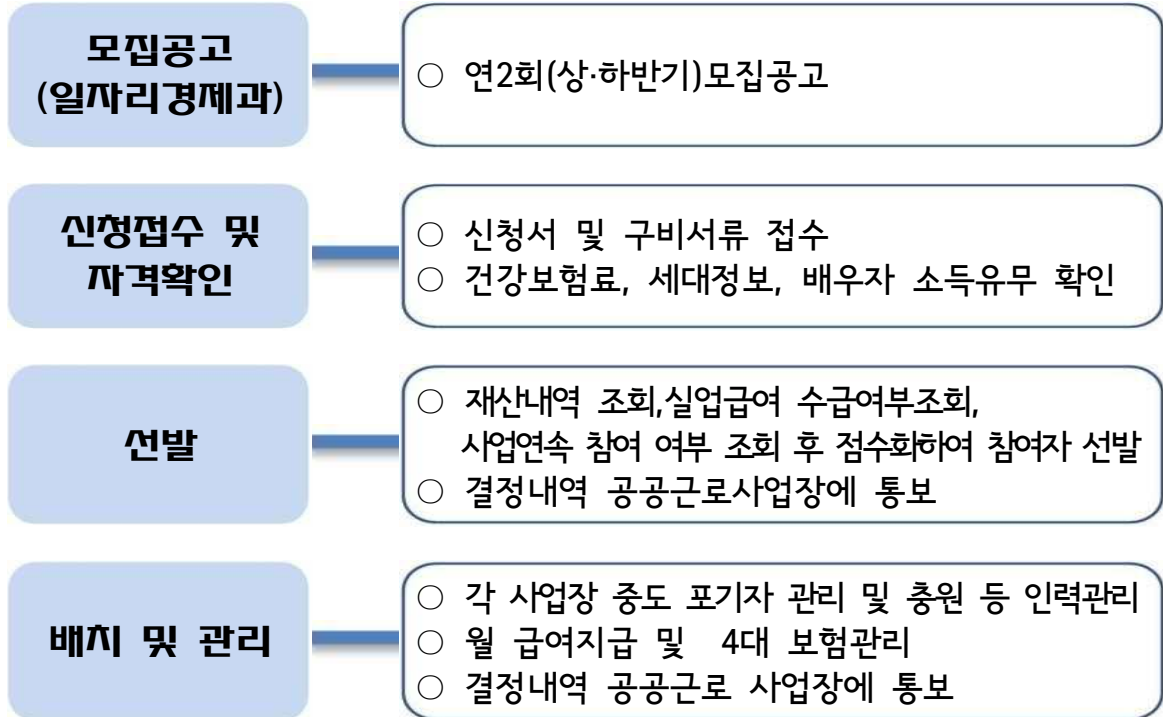
3 선정기준

- 사업별 자격 조건과 세대주, 부양가족 수,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사업별 고려요소 등을 판단하여 선발 체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참여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직계가족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가 정기소득이 있는자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근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5,580원 식비3,000원 만근시 주월차 유급수당 지급 • 1일 6시간 이내(사업따라 상이), 주 5일 근무원칙 4대보험 의무가입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450-7056)

5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 지원대상

-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자

2 구비서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주민등록증, 개인정보제 동의서(본인, 배우자, 세대원포함)
 - ※ 해당자 :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결혼이주여성확인서, 기타 사업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등

3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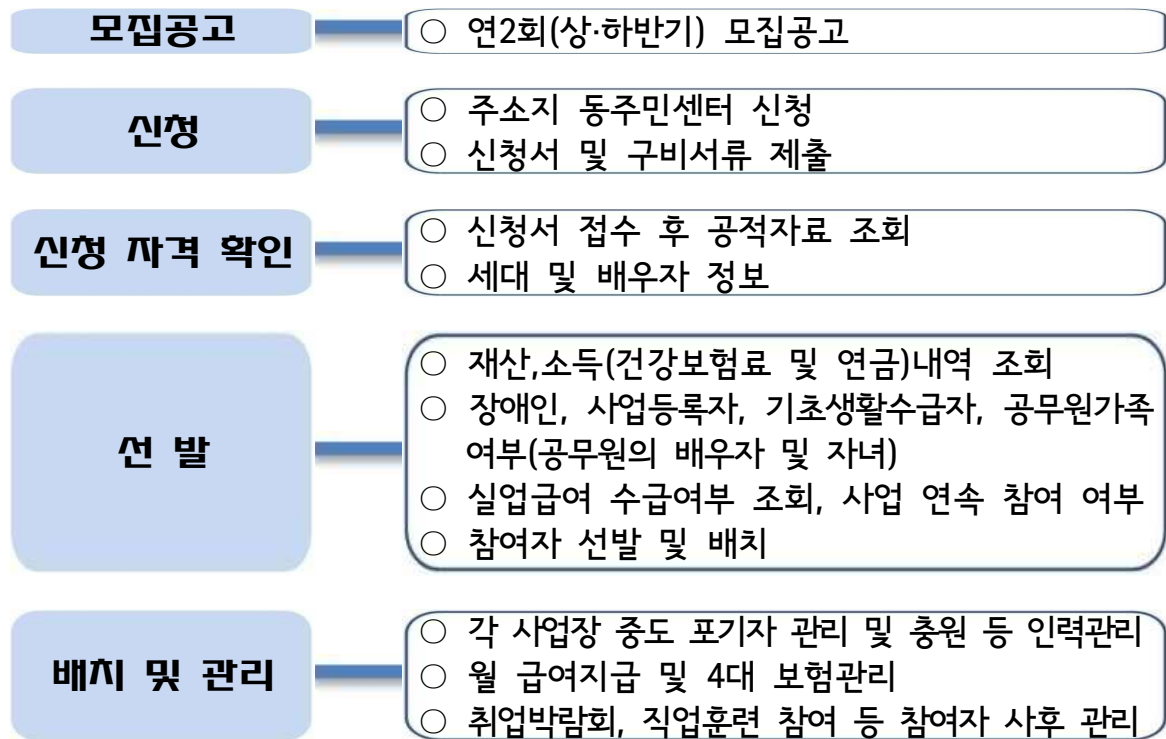
구 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선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 배제 사유자 제외 : 공무원의배우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연속하여 2년 초과 재정일자리 사업 반복참여자, 2회 이상 반복 참여자(최근 3년 기준) 등 ● 사업별 재산, 소득 등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발
참여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 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중도포기한자(예외: 65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모 집인원 부족) ● 접수일 기준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공공숲가꾸기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예외: 모집인원 부족)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자

구 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 후 소득초과(최저생계비150%), 재산이 2억원 초과자 ● 1세대 2인 참여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상반기 선발되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참여중 중도 포기한 자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근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간당 5,580원 1일 5.2시간 근무 1주 26시간 근무 ※ 65세 이상 1일 3시간 근무 1주 15시간 근무 ● 간식비 3,000원 ●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450-7057)

57 내일키움 통장사업

1 지원대상

- 신청당시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대상

2 구비서류

- 필 수 : 희망·내일키움통장(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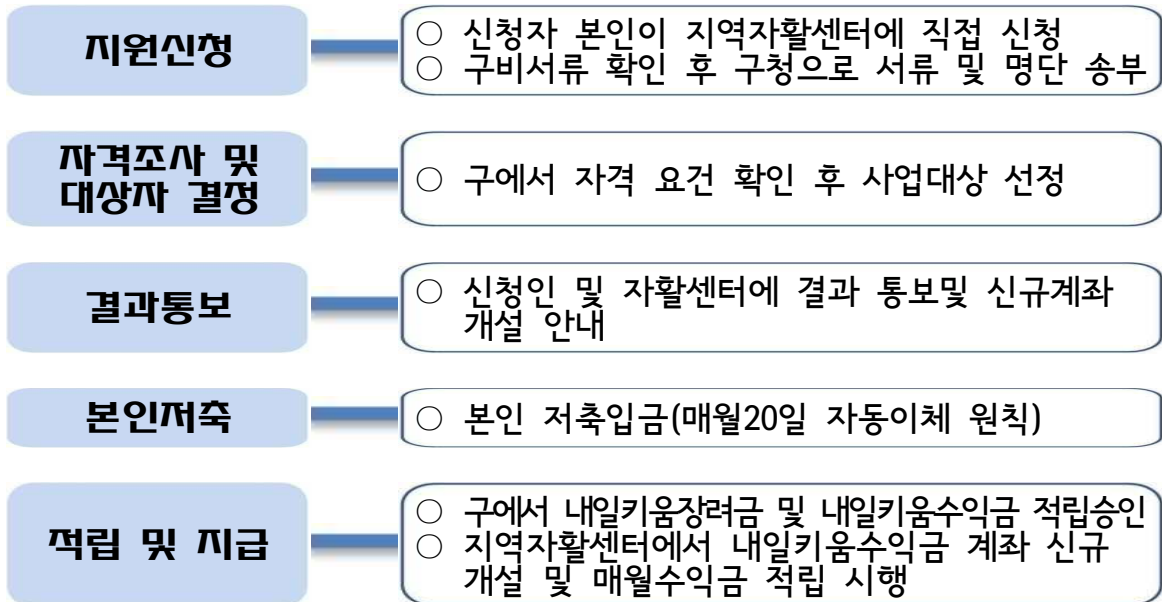
3 선정기준

구 분	내일키움 통장 사업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당시 최근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히 참여 기준) 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가입당시 시장진입형 사업단이나 매출액이 발생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 인턴 도우미(복지자활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근로유지형자활근로 참여자 제외) ● 중복참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키움통장에 현재 가입하고 있거나 과거 희망키움통장 수혜자는 제외 - 희망플러스, 행복키움 등 유사사업 참여자나 기 수혜자는 제외 (아동 대상인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참여자는 중복참여 가능) - 내일키움통장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일부)지급 해지한 자는 재가입 불가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본인 저축(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 상품) 			
	구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매출10%이상)	사회서비스형 (매출10%미만)
	매칭비율	1:1	1:0.5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키움통장 수익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해당 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배분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 (☎450-7522)

58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과 어려운 생활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1~3급의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보건복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그 밖에 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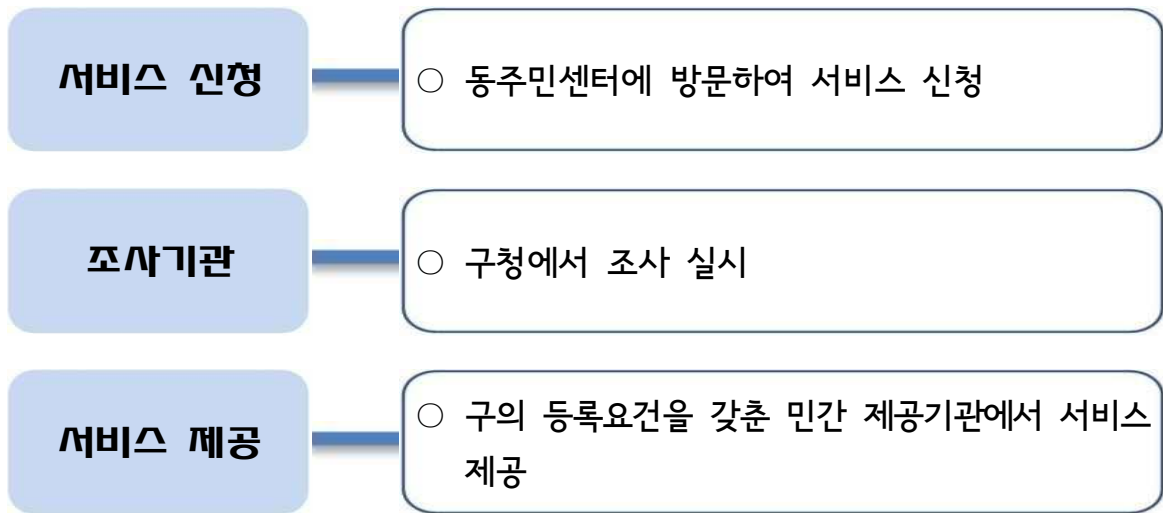
※ 지원제외자

- 만65세이상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돌봄서비스(장애활동지원서비스, 노인 돌봄종합서비스, 만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 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3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서비스 비용	24시간 이용시 : 월235,000원 27시간 이용시 : 월264,600원 (시간당 9,800원, 30분당4,900원)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연장은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
지급방법	월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가사·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이용권으로 지급
지원금액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며,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은 본인부담임.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 (☎450-7522)

59

노숙자 등 알콜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1 지원대상

- 전국에 있는 6개소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관련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기관 : 노숙자쉼터 등 노숙인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대상기관 : 정신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2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센터를 선정합니다.

3 지원내용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주취범죄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국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국비50%, 지방비50%)
-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유관기관 연계망을 구축합니다.
- 유관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자에게 집단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 업무 흐름도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를 신청

5 문의처

중독종합건강센터 정신보건센터 (☎450-1565)

60

중독관리통합센터(알콜상담센터) 운영

1 지원대상

- 지역사회내 알콜 의존자, 문제음주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 해당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구 알콜 상담센터)는 관내 주민우선, 상황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에게도 관련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알콜을 의존자 중에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알콜 의존 및 남용자 기타 알콜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선정기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구,알콜상담)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국비 50%,지방비50%지원)하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센터를 신청합니다.

3 지원내용

- 알콜올등 중독자 관리, 중독자가족지원,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 지역진단 및 기획 등을 지원합니다.

4 업무 흐름도

보조금 교부 신청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센터운영실적
보고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구, 알콜상담센터)는 운영 및 실적보고

보조금 집행

- 구에서 보조금 집행

5 문의처

강북센터 (☎989-9224), 구로센터 (☎989-9224), 도봉센터 (☎989-9224)
노원센터 (개소예정)

61 암검진 사업

1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86,000원 이하, 직장 가입자는 월87,000원 이하인자
- 암종류별 표준 검진연령 및 성별, 검진주기
 - 위 암 :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2년
 - 간 암 : 40세이상의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1년
 -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1년
 - 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 2년
 - 자궁경부암 : 30세 이상의 여성(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만20세 이상), 2년

2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이 당해연도 선정기준 월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자 선정시 보험료 산정기준 초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경우 등은 소급하여 산정한 보험료가 당사의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절차를 거쳐 추가 등록

3 지원내용

-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
- 국가암검진 사업에 포함하지 않는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50%의 대상자 (공단 암검진 대상자)인 경우는 수검자 비용의 10%를 부담하는 형태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 공단 암검진 대상자까지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음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62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암환자(소아,성인)로서 소득과 재산 기준 적합자로 아래 조건 해당자
 - 만18세 미만 소아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검진 완료후 만 2년 이내 진단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9구분코드 C, E, F)
 - 폐암환자

2 구비서류

- 소아암환자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서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지원신청서(환자용), 진료비 영수증, 은행통장 사본
- 성인의료급여수급자, 성인건강보험가입자(국민암검진 수검자)
 -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은행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 성인폐암 환자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은행통장 사본, 지원신청서(환자용)

3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15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한 신규 암환자(1차 검진 필수)와 2014년도 이전에 국가암 검진을 통한 암환자에게 5대 암종(위암C16,유방암C50,자궁경부암C53,간암C22,대장암C18~C20)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등 차상위계층의 암환자에게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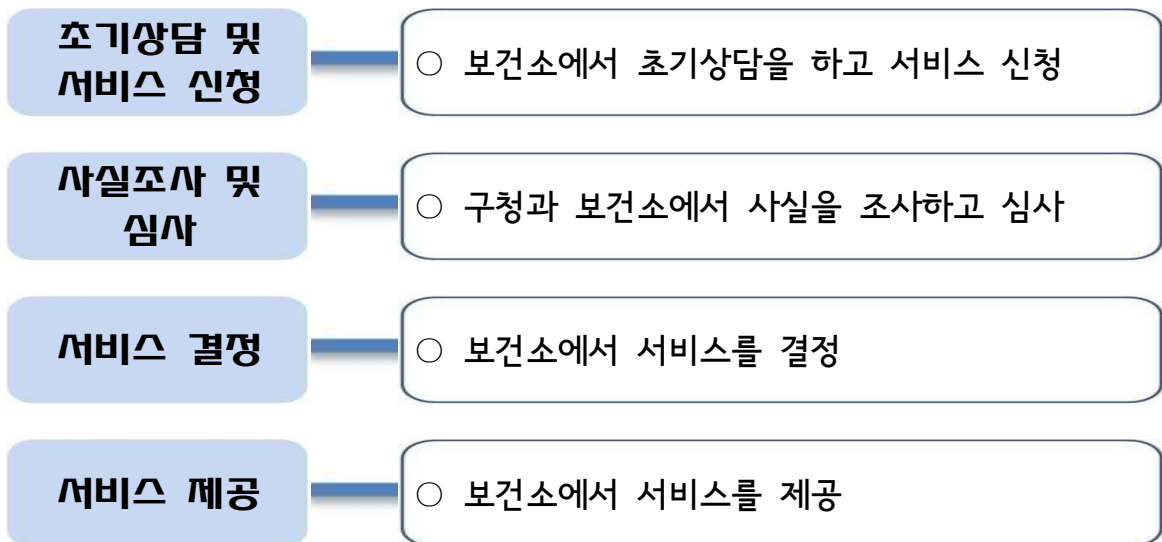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환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 차상위계층의 폐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폐암환자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근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기관지 및 폐의 원발성 악성 신생물(C34)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만18세미만(1997.1.1출생자)인자, 2014년도 기지원자 중에서 2015년도에 만18세(1995.1.1~1995.12.31.)가 되는 자, 2015년도에 만18세에 해당하는 소아암 환자의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소아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는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외국 국적인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4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 진단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원발성 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2,0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비 • 의료급여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본인부담 의료비, 희귀 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암치료 과년 성형치료비, 구강 주위암(C00~C14)으로 인한 치과 보철 치료비

구 분	내용
성인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급여 2,000,000원까지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1,200,000원,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1000,000원까지 지원
폐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 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1,000,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1,200,000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0,000원까지 지원
소아암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암종에 대해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 지원하며,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백혈병은 연간 최대 30,000,000원, 백혈병 이외의 소아암은 연간 최대20,000,000원(조혈모세포 이식시 최대30,000,000원)지원합니다.
소아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구강 주위암(C00~C14)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건강관리과 노인보건팀 (☎450-1962)

63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1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암환자 또는 심장 및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한 환자, 중증화상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게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된 자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3 지원내용

- 질환에 따라 급여일수를 선정하여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의 경우에는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뇌혈관이나 심장질환자는 제외)

4 지원절차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 발급

- 의료기관에서 중증진료를 등록하고 신청서 발급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 제출 및
등록확인서발급

-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 제출하고 등록확인서 발급 받음

등록확인서
제출

- 의료기관에 등록확인서를 제출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450-7513)

64 의료급여(본인부담보상금)

1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기준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1종은 매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원을 초과했을 때 적용합니다.
- 2종은 매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0원을 초과했을 때 적용합니다.

3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이 매30일간 일정금액(1종:20,000원, 2종:20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4 업무 흐름도

신청기관

○ 구청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

○ 구청에서 조사 진행

보장기관

○ 구청에서 의료급여 업무 실시

제공기관

○ 의료급여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450-7513)

65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1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 100% 본인부담 진료비는 제외합니다.
 - 진료개시일 상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입원 식대중 본인부담금 등
-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급권자 자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는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함으로 제외합니다.
- 수급권자가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는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함으로 제외합니다.

3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1종	매 30일간 50,000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매 6개월간 600,000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후 본인 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구청에서 초과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4 업무 흐름도

신청기관

- 병원비 청구 영수증을 지참하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조사기관

- 구청에서 조사를 진행

보장기관

- 구청에서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 진행

제공기관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제공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450-7513)

66 의료급여(요양비)

1 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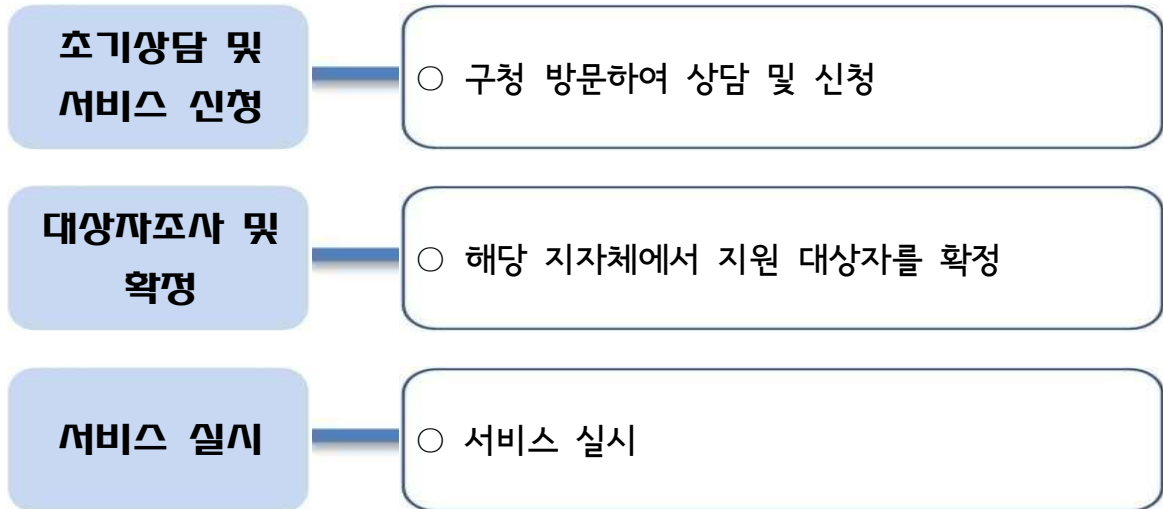
2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 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해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 요양을 받은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소모성 재료인 혈당검사지움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가정에서 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3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요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 가정 산소 치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450-7513)

67 의료급여(의료급여)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타법에 의한 수급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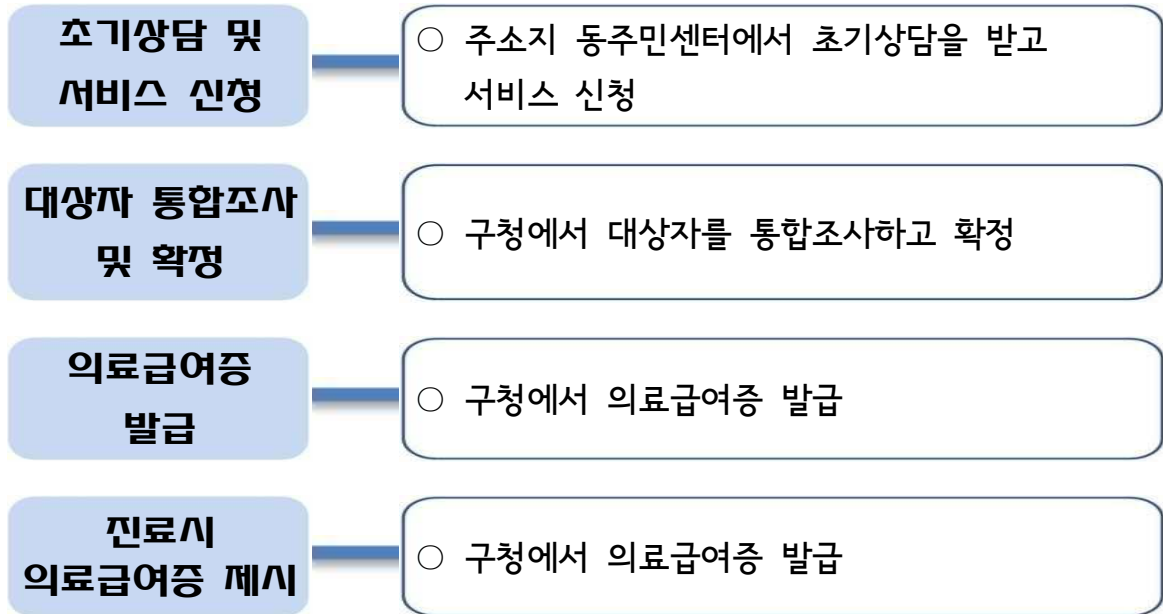
2 선정기준

구 분	지원내용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자
2종 의료급여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행려환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

3 지원내용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450-7513)

68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1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는 제외)에게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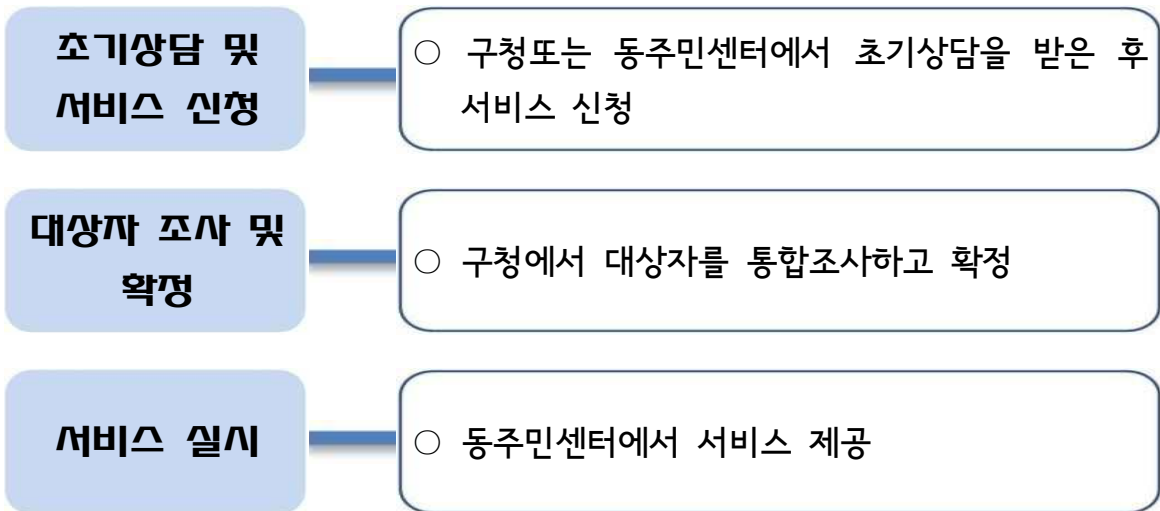
2 선정기준

구 분	지원내용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임환자중증희상환자)로 등록된 자
2종 의료급여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자
행려환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

3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현역사병이나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개월 분을 지원하며, 입대연도 해당월에 1개월 분과 매년 1월1일에 1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450-7513)

69 의료급여본인부담 면제

1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18세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자,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 등에서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구 분	지원내용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중증회상환자)로 등록된 자
2종 의료급여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행려환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

3 지원내용

-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450-7513)

70

의료급여선택병의원제

1 지원대상

- 1종·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 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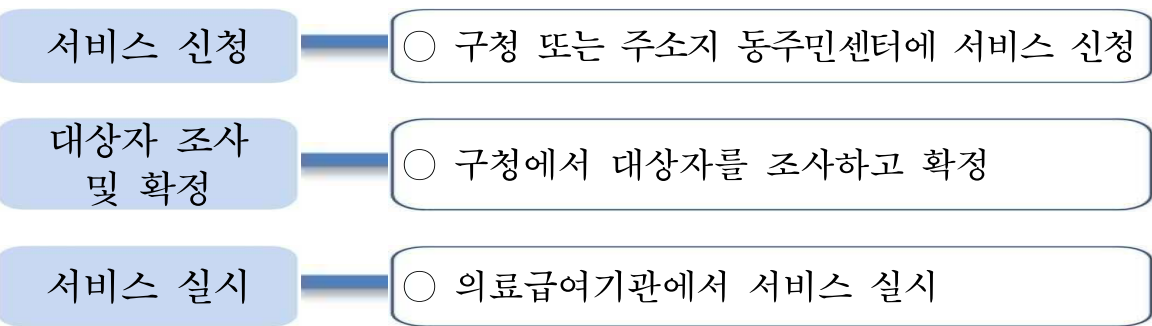
2 선정기준

- 연간 의료급여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요청 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보장기관(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3 지원내용

- 수급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1종)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450-7513)

71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지원

1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등록된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급여대상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과 기준액, 내구 연한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3 지원내용

- 장애인보장구 급여를 지원합니다.

4 업무 흐름도

장애인보장구 처방	○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보장구 처방
보장구 신청 및 자격확정	○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보장구를 신청하고 자격 확정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 및 판매업자에게 보장구를 구입
구입비용 지급 청구	○ 보장구 제작 및 판매업자에게 보장구를 구입
구입비용 지급	○ 구청에서 구입비용을 지급
사후점검	○ 구청에서 급여지급후 3개월 경과시점에 사후 점검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450-7513)

72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1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지원합니다.

2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통장사본,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및 가구원 판단에 관한 서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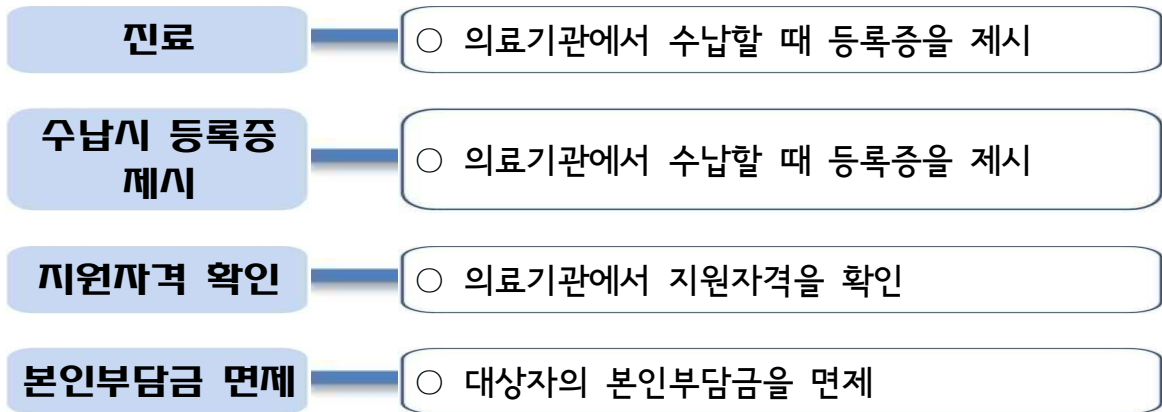
3 선정기준

구 분	지원내용
건강보험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여 선정된 자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질환별로 차등 적용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건강보험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증(특정기호 C, E, F)확인이 가능한자
지원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국적자(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임)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다른사업 지원을 받는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정부지원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차액만큼 지원 가능)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자(차액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4 지원내용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보장구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구입비 등은 현금급여로 지원합니다.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 노인보건팀 (☎450-1962)

73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계층 및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건강 위험군, 질환군
- 방문이 필요한 건강문제를 가진 취약계층

2 구비서류

- 동 업무 담당자로부터 의뢰 받은 취약계층 대상자 중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방문건강 관리사업 등록관리

3 동별 방문간호사 연락처

동명	연락처	동명	연락처
중곡1동	450-1439	광장동	450-1754
중곡2동	공석	자양1동	450-1787
중곡3동	450-1439	자양2동	450-1885
중곡4동	450-1437	자양3동	450-1887
능동	450-1379	자양4동	450-1888
구의1동	450-1783	화양동	450-1754
구의2동	450-1778	군자동	450-1886
구의3동	450-1379		

4 업무 흐름도

대상발굴

- 건강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추천
- 구청 사회복지과, 주민자치센터로부터 대상자 확보

대상등록 및 분류

- 취약계층 일반검진자 및 생애전환기검진자 중 건강검진 결과 상담과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에 동의한 경우
- 기초조사표와 건강 상담 등으로 대상자의 건강 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군분류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군별 집중관리

- 집중관리군
 - 8회(6~10회)의 집중관리/2~4개월
- 정기관리군
 - 2~3개월에 1회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기관 연계
- 자기역량지원군
 - 4~6개월에 1회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기관 연계

대상자 평가

- 매년 대상자 재평가로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없거나 미방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록
- 집중관리군은 8회(6~10회) 관리 후 증상조절 여부에 따라 정기관리군 또는 자기역량 지원군으로 분류

5 문의처

보건소 방문보건팀 (☎450-1580)

7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구비서류

-

3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대상종류	중위소득의 43% (단위: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인정액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제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4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4%적용))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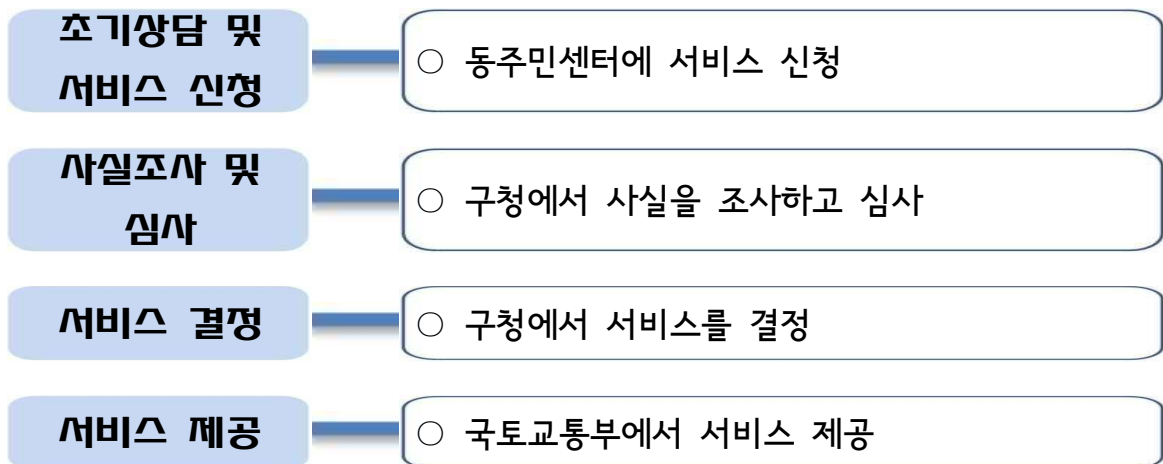
● 기준임대료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95,000원	225,000원	266,000원	307,000원	317,000원

●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3,500,000원), 수선주기(3년), 수선예시(도배,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6,500,000원), 수선주기(5년), 수선예시(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9,500,000원), 수선주기(7년), 수선예시(지붕,기둥 등)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450-7528)

75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1 지원대상

- ‘자가가구 등’ 해당하는 수급자가 집을 수리하고자 할 때 현금이나 현물 급여를 병행하여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않아도 수선 및 점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가가구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전체를 무료로 임차한 경우(주택소유자가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경우도 포함. 단, 주택소유자가 수선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가가구 등’에서 제외)
 -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증명 가능한 공공기관의 문서 또는 사실확인 필요)
 - 기타 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현물급여 공제가 적용되는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차상위계층의 가구는 본인이 자재비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가 가구당 주거현물 급여는 최대2,2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 한함)

3 업무 흐름도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하고 확정

서비스 실시

○ 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실시

4 문의처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450-7515)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로 민간주택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자로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가구

2 구비서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신청인과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자가 동일인임이 원칙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재임차의 경우 제외)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에 한함
 - 가족(부모, 자식, 형제, 자매)간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은 대상에서 제외

3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긴급지원등 최저생계비(150%)	925,921	1,576,572	2,039,532	2,502,493	2,965,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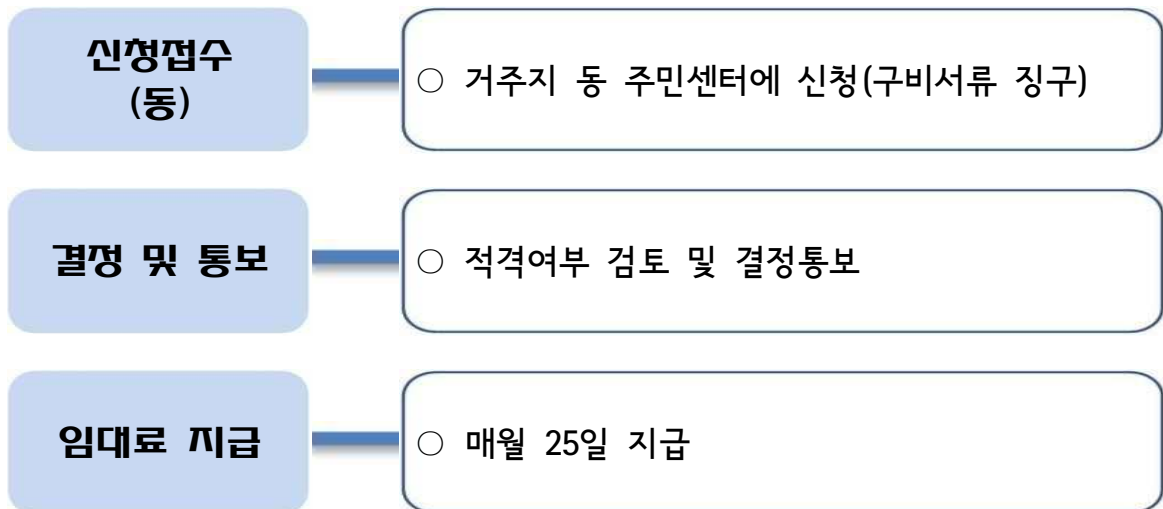
-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기준 : 9,500만원 이하(신청 기준 지원)
※ 전세전환가액 = 월세×75 + 월세보증금

4 지원내용

구분	주택바우처(월세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시기 : 매월25일 지원(신청기준 지원) • 지원방법 : 개인별 은행계좌 입금 • 지원금액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월지급액	43,000	47,500	52,000	58,500	65,000	72,500

구 분	주택바우처(월세지원) 지원내용
지원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가구(단 개별수급가는 가능)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세대주의 직업이 대학 및 대학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 (단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 가능) ● 세대구성원이 주택 소유한 경우 제외 ●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소명자료 제출시 지원여부 검토가능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450-7096)

77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 지원대상

-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사산포함)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울 때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행방불명구급시설 수용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주소득자 : 이혼, 휴업, 폐업, 실직, 단전, 출소, 노숙 등)

※ 위기상황(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신설(2014.4.24. 시행)

- ☞ 단전·단가스로 1개월 경과가구, 3개월내 기초수급중지가구 중 근로 무능력 가구, 주소득자의 군복무·간병, 출산, 아동동반 주거취약계층, 부모 부양불능으로 아동 방치 가구 등

2 선정기준

-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가구원 대상종류	소득인정액(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긴급지원	1,218,623	2,074,953	2,684,264	3,293,576	3,902,888	4,512,199	5,121,511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09,312원씩 증가(8인가구 5,730,823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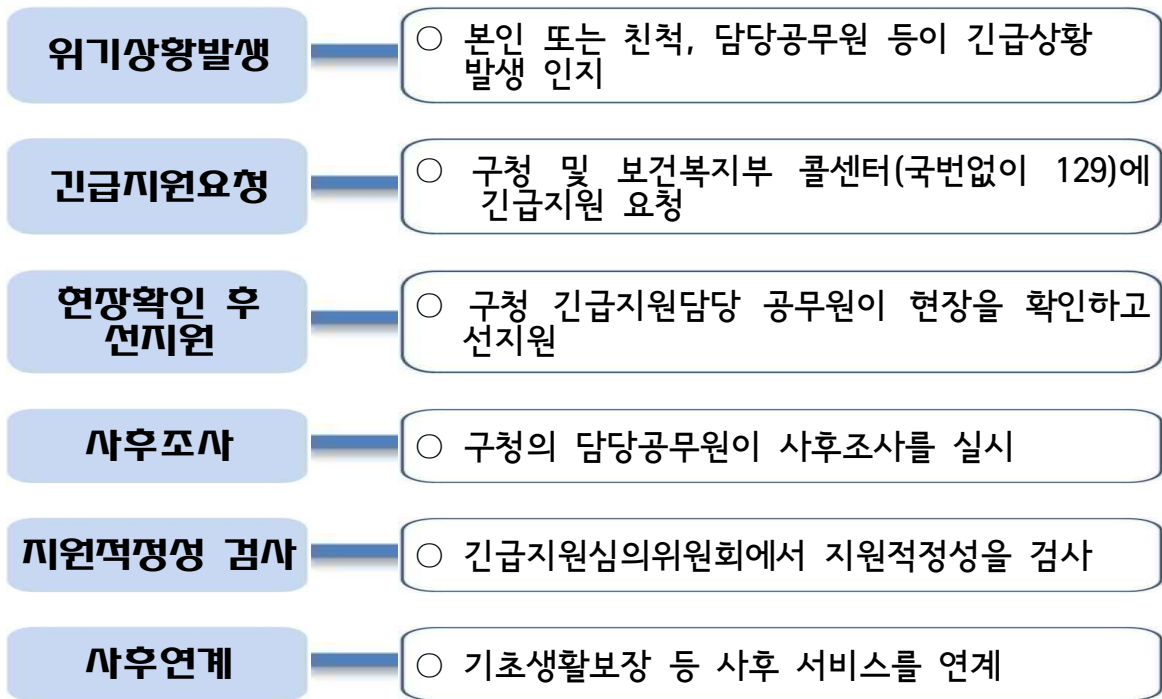
- 재산 : 대도시 135,000천원, 금융재산은 5,000천원(생계비 등) 이하,
7,000천원(주거비) 이하

3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금을 지급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517,900원	883,500원	1,143,200원	1,401,700원	1,661,300원	1,920,900원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450-7492)

78 긴급복지 생계지원

1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자를 지원합니다.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주소득자 : 이혼, 휴업, 폐업, 실직, 단전, 출소, 노숙 등)

※ 위기상황(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신설(2014.4.24. 시행)

- ☞ 단전·단가스로 1개월 경과가구, 3개월내 기초수급중지가구 중 근로 무능력 가구, 주소득자의 군복무·간병, 출산, 아동동반 주거취약계층, 부모 부양불능으로 아동 방치 가구 등

2 구비서류

- 필 수 : 주거관련서류, 가구원 전체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 해당자 : 위기사유에 따른 아래 해당서류 구비 제출
 - (의료지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계산서, 보험증권 등
 - (주거지원) 강제퇴거명령서, 내용증명, 경매판결문 등
 - (휴폐업)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시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실직)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또는 입출금내역 등
 - (교정시설출소자) 출소증명서, (노숙자) 긴급지원의뢰서
- 필요시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선정기준

-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대상종류	가구원						
	소득인정액(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긴급지원	1,218,623	2,074,953	2,684,264	3,293,576	3,902,888	4,512,199	5,121,511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09,312원씩 증가(8인가구 5,730,823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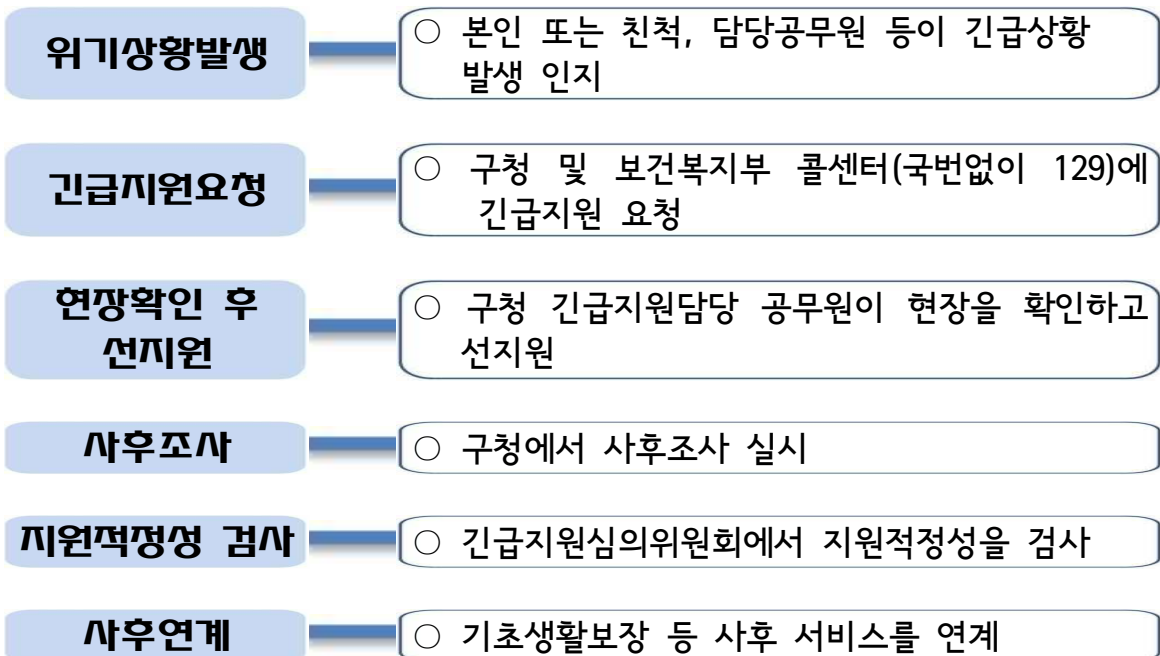
- 재산 : 대도시 135,000천원, 금융재산은 5,000천원(생계비 등) 이하, 7,000천원(주거비) 이하

4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금을 지급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18,400원	712,500원	921,800원	1,131,000원	1,340,300원	1,549,500원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450-7492

79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1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동절기(10~3월)에 한해서 연료비 지원
 -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전기요금 지원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주소득자 : 이혼, 휴업, 폐업, 실직, 단전, 출소, 노숙 등)

※ 위기상황(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신설(2014.4.24. 시행)

- ☞ 단전·단가스로 1개월 경과가구, 3개월내 기초수급중지가구 중 근로 무능력 가구, 주소득자의 군복무·간병, 출산, 아동동반 주거취약계층, 부모 부양불능으로 아동 방치 가구 등

2 구비서류

- 필 수 : 주거관련서류, 가구원 전체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 해당자 : 위기사유에 따른 아래 해당서류 구비 제출
 - (의료지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계산서, 보험증권 등
 - (주거지원) 강제퇴거명령서, 내용증명, 경매판결문 등
 - (휴폐업)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실직)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또는 입출금내역 등
 - (교정시설출소자) 출소증명서, (노숙자) 긴급지원의뢰서
- 필요시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선정기준

-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대상종류	가구원						
	소득인정액(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긴급지원	1,218,623	2,074,953	2,684,264	3,293,576	3,902,888	4,512,199	5,121,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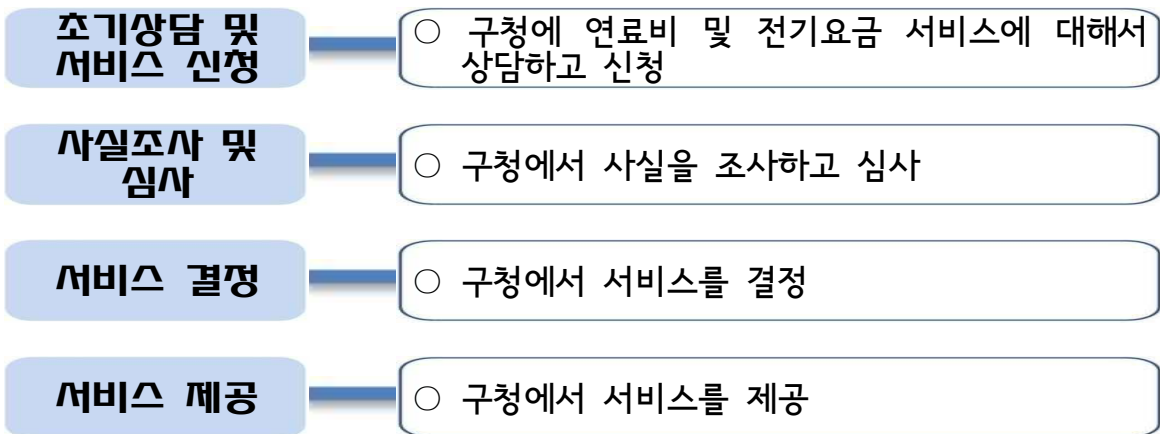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09,312원씩 증가(8인가구 5,730,823원)

- 재산 : 대도시 135,000천원, 금융재산은 5,000천원(생계비 등) 이하,
7,000천원(주거비) 이하

4 지원내용

- 500,000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를 1회 지원합니다.
- 동절기(10월~3월)에 한해서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연료비를 92,800원 지원합니다.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450-7492)

80

긴급복지 장애비 지원

1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나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주소득자 : 이혼, 휴업, 폐업, 실직, 단전, 출소, 노숙 등)

※ 위기상황(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신설(2014.4.24. 시행)

- ☞ 단전·단가스로 1개월 경과가구, 3개월내 기초수급중지가구 중 근로 무능력 가구, 주소득자의 군복무·간병, 출산, 아동동반 주거취약계층, 부모 부양불능으로 아동 방치 가구 등

2 구비서류

- 필 수 : 주거관련서류, 가구원 전체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 해당자 : 위기사유에 따른 아래 해당서류 구비 제출
 - (의료지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계산서, 보험증권 등
 - (주거지원) 강제퇴거명령서, 내용증명, 경매판결문 등
 - (휴폐업)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실직)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또는 입출금내역 등
 - (교정시설출소자) 출소증명서, (노숙자) 긴급지원의뢰서
- 필요시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선정기준

-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대상종류	소득인정액(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긴급지원	1,218,623	2,074,953	2,684,264	3,293,576	3,902,888	4,512,199	5,121,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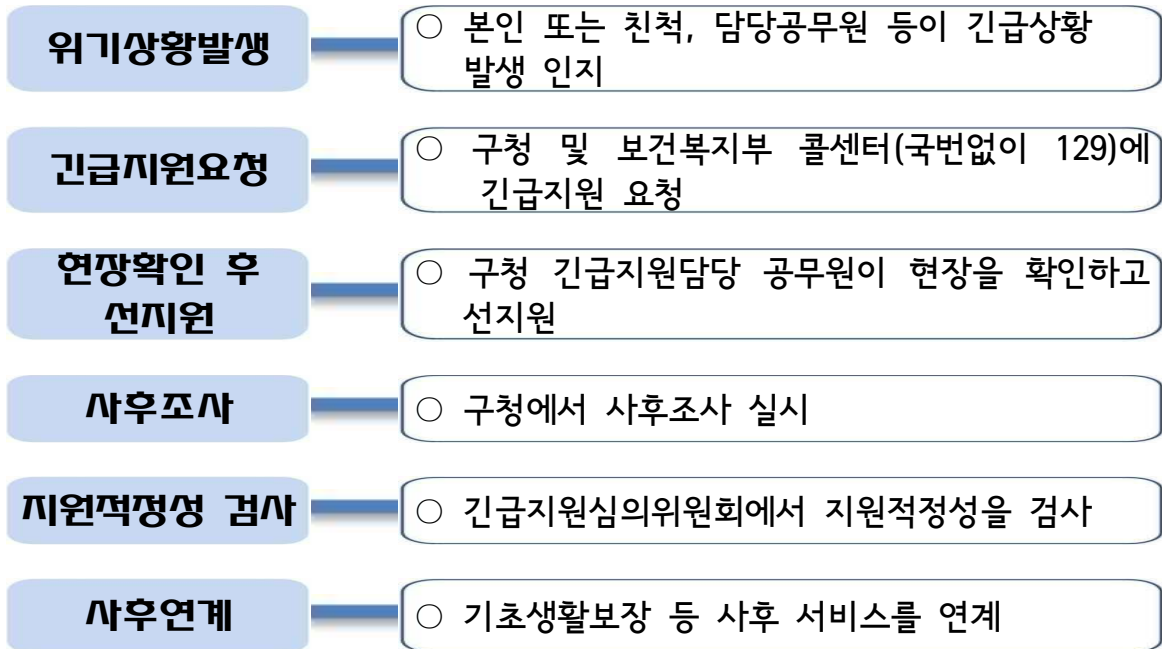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09,312원씩 증가(8인가구 5,730,823원)

- 재산 : 대도시 135,000천원, 금융재산은 5,000천원(생계비 등) 이하, 7,000천원(주거비) 이하

4 지원내용

- 장제비로 750,000원을 지원합니다.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450-7492)

81 노숙인등 복지지원

1 지원대상

- 노숙인 시설(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입소해 있는 노숙인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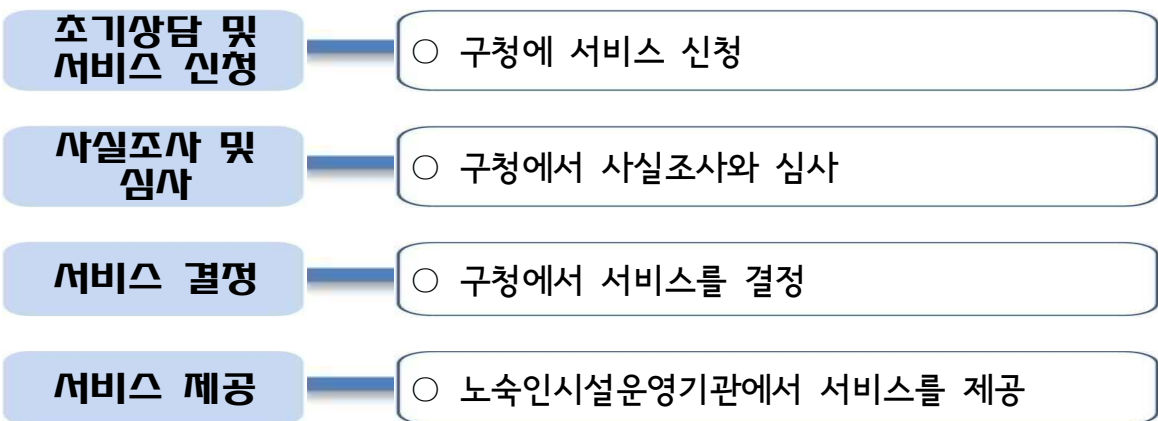
2 선정기준

- 노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중 노숙인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 노숙인의 재활/요양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종사자의 인건비, 공공요금, 자활프로그램비를 지원합니다.
- 노숙인의 재활/요양시설의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개수 또는 보수, 필요한 장비구입을 지원합니다.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450-7515)

82 사할린 한인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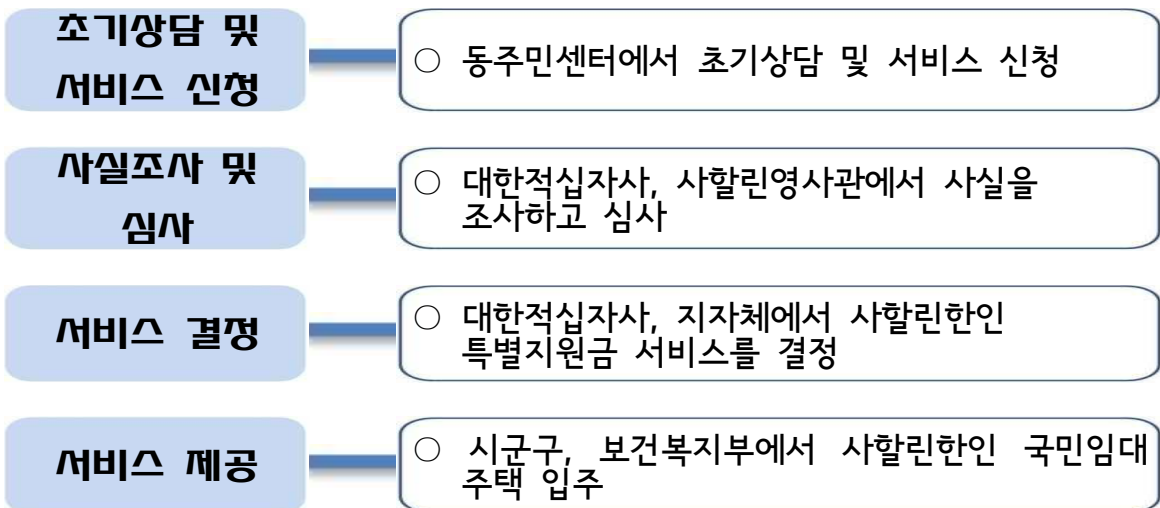
1 지원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 1세, 1세의 배우자, 장애인 자녀를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 신규 입국자는 임대주택 비용으로 2인 1가구당 17,700,000원을 지원합니다. > 국토교통부(LH 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후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할 때,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의 집기 비품비로 1,400,000원을 지급합니다.
-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가 신규 입국할 때 항공료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특별생계비로 매월75,000원을 지원 (월임대료 및 아파트 관리비)합니다.

3 업무 흐름도



4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83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1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지원 대상으로 결정합니다.
- 타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 등 타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2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기타구비서류

3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29%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대상종류	중위소득의 29% (단위: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인정액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제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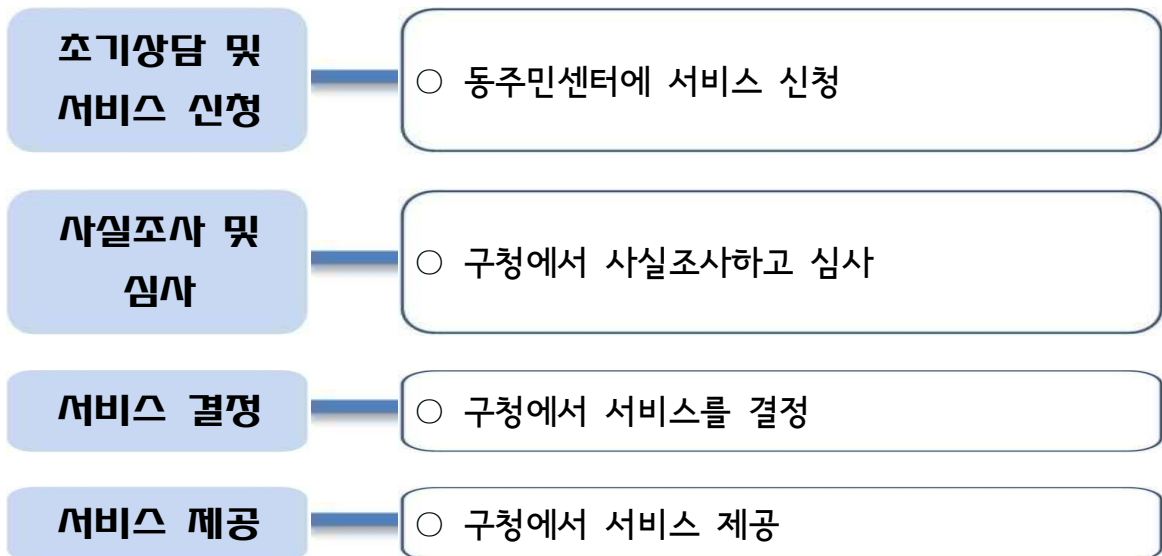
4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현금지급 기준(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471,201원	802,315원	1,037,916원	1,273,516원	1,509,116원

- 시설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450-1311)

84 양곡할인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복지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정부양곡 구입 희망자에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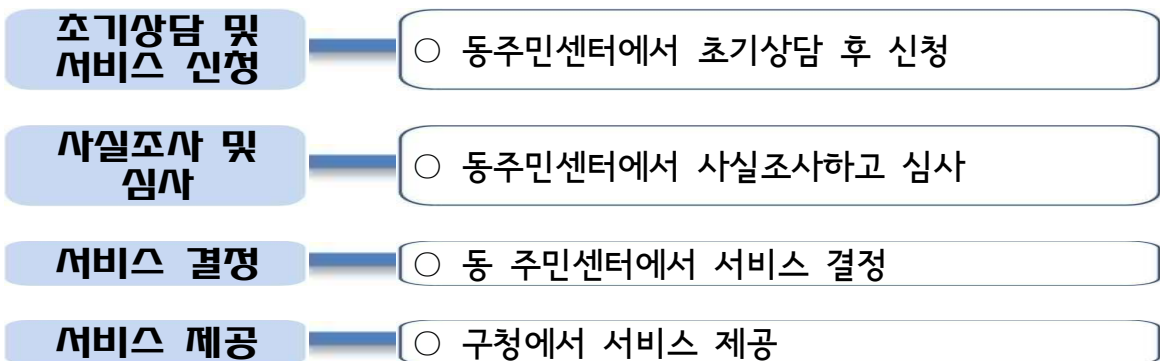
2 선정기준

- 아래와 같이 차상위복지수급자가 해당합니다.
 - 한부모 보호대상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최종 확인)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장애인 수당이나 연금 수급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 지원 대상가구
- 생계, 주거급여를 합산하여 공급가격(20kg, 1포대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여 예산에서 양곡대금을 공제합니다.
- 자활특례수급자 및 지급받는 급여액이 양곡 공급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양곡 구입방법을 똑같이 적용하여 현금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원내용

- 정부양곡 구입시 50%를 할인합니다.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450-7523)

85 의사상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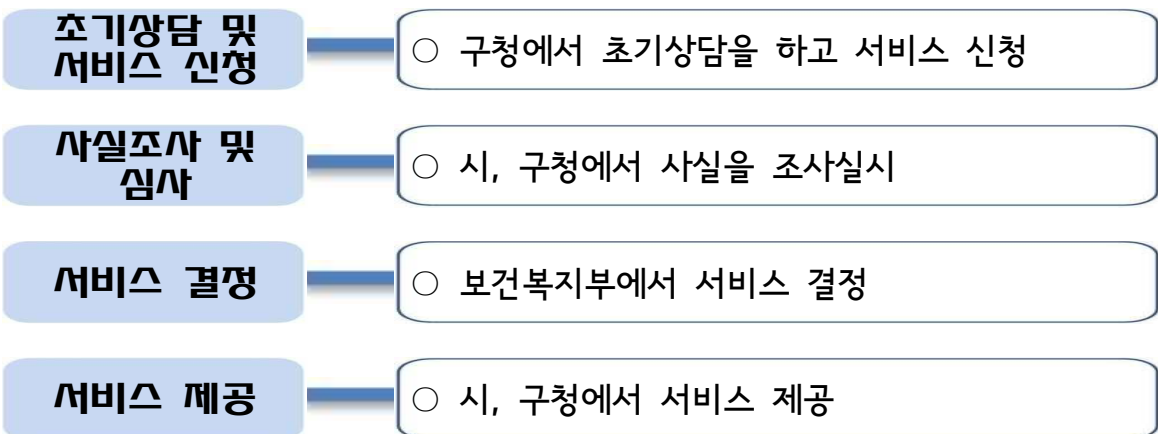
1 지원대상

-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을 돕기 위해 생명이나 신체를 희생한 의사자, 1~6급의 의상자, 의사상자의 유족을 지원합니다.
 - 의사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하고, 의사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의사자의 장제를 치러준 분을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의사자 보상금	202,913,000원(2015년기준)
의상자 보상금	1~9급별로 202,913,000~10,146,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 1종 의료급여

3 업무 흐름도



4 문의처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450-7483)

86 저소득층 생업자금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서 자활 의지가 있고 사업전망이나 기술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구청장이 용자 대상자로 결정을 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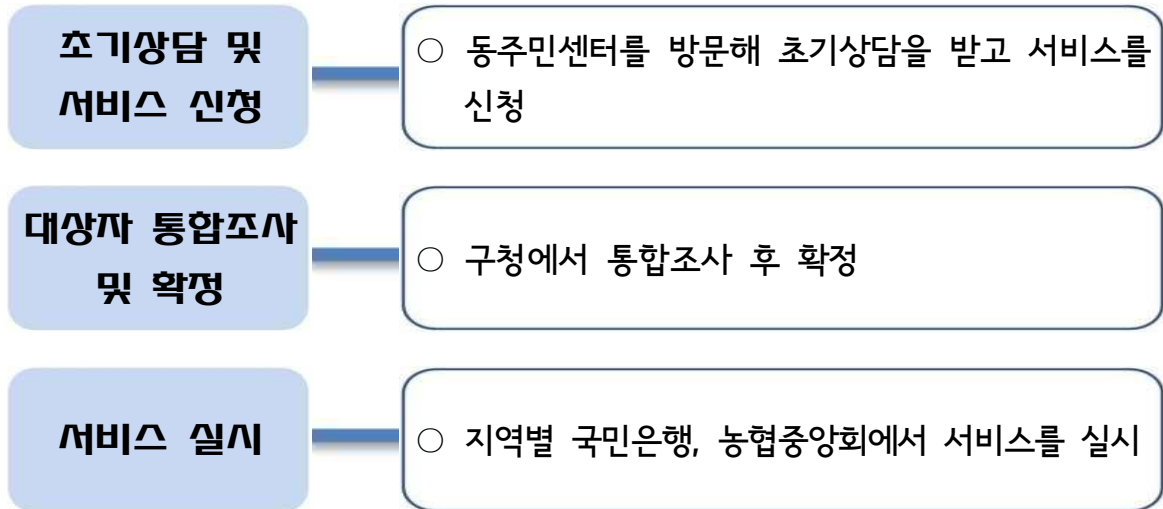
2 선정기준

구 분	지원내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며, 재산이 100,000,000원 이하인 경우 선정합니다.
무보증 대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금융채불이행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이 20,000,000원 이하 이면서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0,000원 이상이거나 연소득이 6,000,000원 이상인 사람(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0,000,000원 이하일 것)
보증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0,000원 이상이거나 연소득이 8,000,000원 이상인 사람 • 대출금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기 요건의 보증인이 한명 더 필요

3 지원내용

- 창업자금 용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0,000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0,000원 이하
 - 담보 대출 : 50,000,000원 한도에서 담보범위 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연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5년)에는 이자만, 상환기간(5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 (☎450-7522)

87 지역자활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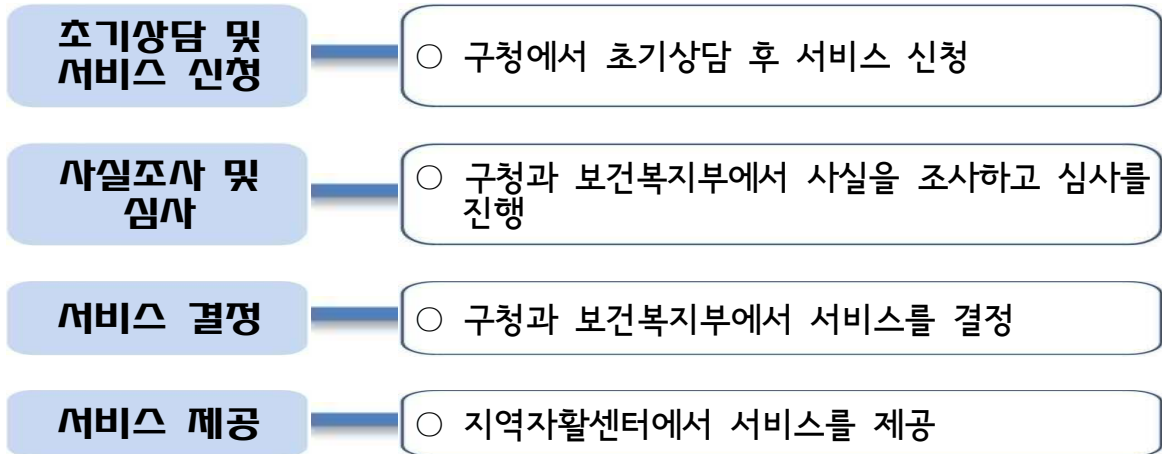
1 지원대상

- 지역사회의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지역사회의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지원합니다.

3 업무 흐름도



4 문의처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 (☎450-7522)

88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지원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고, 자활을 도울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초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중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구
 - 수익자 부담은 없음

2 구비서류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3 선정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접수된 대상자는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대상자와의 개입기간을 결정

4 지원내용

- 대상가구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서비스 전반을 지원합니다.

구 분	지원내용
공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한 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1가구당 생활지원비 최고 300,000원 진단비 및 교육비 최대 500,000원)
민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가구의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5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6 문의처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 (☎450-7302)

89 희망키움통장 (I)

1 지원대상

- 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자활(탈수급)의지 있는 가구

2 구비서류

- 필수 :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동동의서

3 선정기준

구 분	지원내용
희망키움통장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에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 포함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를 선정합니다.

4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2013년 이전 가입가구 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 지원
 - 2014년 가입가구 민간매칭금 미지원(제외)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text{가구총소득} - (\text{최저생계비} \times 0.6)] \times 0.85$ (장려율)
- 희망키움가입자 주거월세 대출
 - 매월30만원씩 2년간 총720만원 한도 대출
 - 단, 주거급여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 거주자는 제외

5 업무 흐름도

지원신청

- 동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 동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보장결정을 요청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대상자 본인 저축입금

- 신청인 본인이 저축액을 입금

근로소득장려금 입금

- 구청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입금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 (☎450-7526)

90 희망키움통장 (Ⅱ)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2 구비서류

- 필수 :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희망키움 통장Ⅱ 자가 진단포 등

3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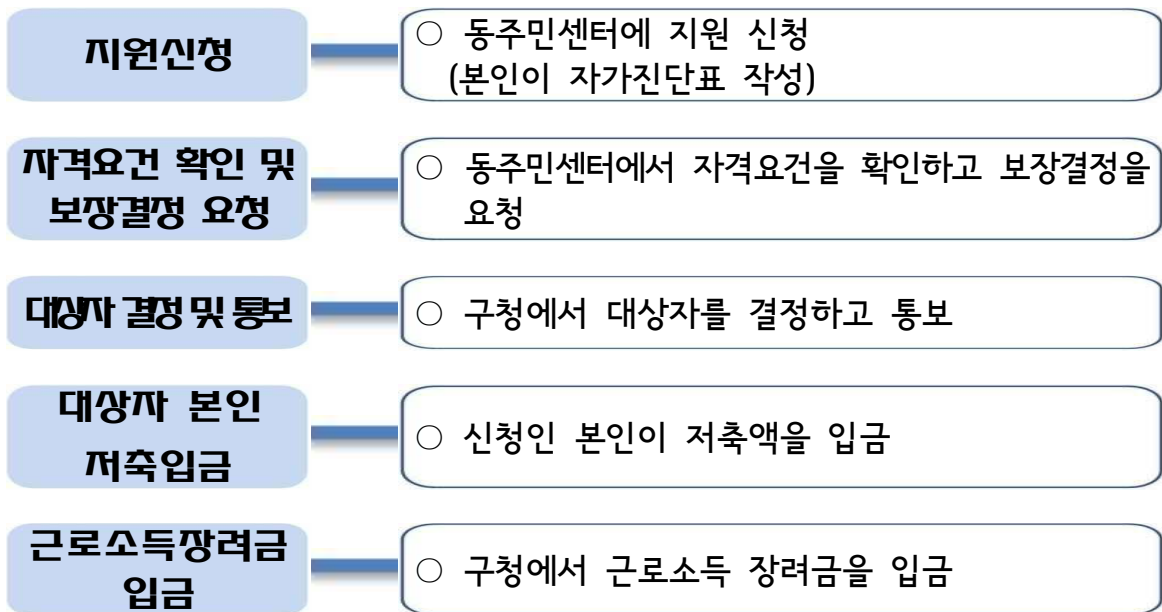
구 분	지원내용
희망키움통장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를 선정합니다.

4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10만원을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 (환수해지)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70%(연1회 확인조사) 미달될 경우 단, 확인조사 결과를 민간위탁기관에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내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후 3개월 내 소득조사 기간에서 제외)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교육 연2회)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계좌입금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 근로소득장려금 = 1(월10만원 저축):1(정부지원금 10만원)
 - (3년 가입시) 본인저축액(360만원)+이자+정부지원금(360만원)=720만원+(이자)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 (☎450-7526)

9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1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맞지 아니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2 구비서류

- 필 수 : 서울형 기초보장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정보이용동의서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존 기초생활보장 조사이력 확인결과 서울형 기초 보장 선정기준에만 적합할 때는 별도서류 생략 가능
-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제적등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3 선정기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2016년 (단위:원)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자동차기준 적합한 가구
 (월100%소득환산 적용, 자동차 소유시 신청 제한)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 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 기준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356,304	5,201,217	5,802,405	6,403,592	7,004,779	7,605,966	8,207,155
재산기준	5억원						

산출식 : ((2인 대상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185%) + 2인 대상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 적용

4 지원내용

○ 생계급여, 장애급여, 해산급여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구 분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생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1/2수준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급여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4 \times \text{해당가구 소득평가액})$ <small>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변동</small> 							
	(단 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최소 지원	생계급여	235,601	401,158	518,958	636,758	754,558	872,359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최소 지원	생계급여	79,617	135,564	175,372	215,180	254,988	294,798	
<small>☞ 8인 이상 가구의 최대지원액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최대지원액과 6인가구 최대지원액의 차이를 7인가구 최대지원액에 더하여 산정</small>								
해산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동일 ※ 1인당 600천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추가 지급 							
장애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동일(1구당 750천원) 							

5 업무 흐름도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구비서류 검토, 자격 및 서비스 안내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보장결정

- 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보장결정

서비스 지원

- 결정내용 대상자에게 통보
- 급여지급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450-1311)

92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로 차상위 자격 확인이 필요한 세대

2 구비서류

- 필 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소득·재산 관련서류 등

3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제외

4 지원내용

구 분	우선돌봄 차상위 지원사업			
중앙부처 지원내역	부처	지원내용	부처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 정부양곡50%지원 - 노인안검진, 개인 수술비 지원 - 희망키움통장 II지원 - 푸드뱅크 연계	산업통상지원부	-연탄보조사업 -전기요금 긴급지원 -난방비 지원 -에너지효율개선
	행정자치부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재청	- 궁능 무료입장	교육부	-국가장학금지원 - 대입 기회균형선발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 패키지	산림청	-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미래창조과학부	- 통신요금 감면제도 - 디지털 방송전환	금융위원회	- 미소금융사업 - 채무조정 분할상환
서울시 지원내역	주택바우처 지원 (단,월세 세입자)			

5 업무 흐름도

급여신청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복지대상자 조사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 소득·재산조사 및 소명자료 확인
- 행복e음을 통한 보장결정 의뢰

보장결정 후 서비스 지원

-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서 서면 통보
- 서비스 지원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450-1311)

93 희망플러스 통장사업

1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근로중인 저소득가구 중 생산적 목적(주거마련, 소규모창업,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 훈련)으로 저축하고자 하는 근로 저소득층

2 구비서류

- 필 수 : 신청서, 재직증명 및 소득증빙서(근로소득 입증서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 소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3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부양비 선정 제외)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5 소득기준(원)	925,922	1,576,57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4 지원내용

구 분	희망플러스 통장사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 최초 저축이 시작된 월로부터 36개월간 ● 지원금액 : 저축액 대비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매칭비율 지원 				
	소득구분	적립 기간	월 적립액		총적립금 (최대금액/3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년	가입자	사바·만간후원금	360/720만원+이자
	수급자외 저소득층		10/20만원	5/10만원	540/1,080만원+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금리 : 협력은행, 고정금리 ● 부가지원 :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창업·경제교육,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 저축방법 : 매월25일 저축적립 통장에 자동이체 					

5 업무 흐름도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접수

1차 서류심사

- 신청자 중 적격, 부적격자를 가리는 서류 전형 실시

2차 면접심사

- 심사위원회 면접심사 실시 후 최종 참여자 결정
- 최종 선정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

약정 및 사례관리

- 약정체결 및 대상자 사후 사례관리 실시

6 문의처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450-7309)

94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긴급구호 사업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최저생계비 200%이내, 재산135백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2 구비서류

- 이웃돕기 성금 활용 긴급지원 현장 확인서, 배분요청서 (배분신청 담당자 작성)
- 기타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최저생계비 200%이내, 재산135백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가구원 대상종류	2016년 소득인정액(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긴급구호 (최저생계비200%)	1,299,864	2,213,284	2,863,216	3,513,148	4,163,080	4,813,012	5,462,946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생계비 지원	● 지원기준			
	가구원수	1~2인	3~4인이하	5인 이상
	지원액	50만원	70만원	90만원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 : 사안별 50~200만원 지원 ● 기타(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지원 			

5 업무 흐름도

**지원대상
발굴 · 신청
(구사업부서 · 동)**

- 동주민센터 및 사업부서
- 현장확인서, 배분요청서 첨부하여 공문 요청

**배분요청
(복지정책과)**

- 광장, 자양, 중곡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배분 요청

**계좌입금
(복지관)**

- 지원대상 계좌입금
- 신청일로부터 당일 및 익일

6 문의처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450-7494)

95

희망온돌 지역단위 위기긴급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2 구비서류

- 희망온돌 지역단위 위기긴급지원 의뢰서(추천기관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신청항목별 증빙자료(거점기관에서 방문 상담시 징구)

3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사각지대 우선

구분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기준	4인 기준	5인 기준	6인가구
중위소득80%이하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4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가구당 1개분야 지원가능 (단, 긴급상황인 경우 2개분야까지 중복지원 가능) • 지원항목별로 연3회 가능 (생계비의 경우 1회 30만원, 최대90만원 지원가능) 	
	지원구분	지원내용
생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지원 원칙(가구 특성에 따라 현물지원 가능) • 기초수급자,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제외(단,생계비 지원액이 없을 경우 지원가능) 	가구당 최대 월30만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주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시원비, 월세, 관리비, 임시주거비 등 거점기관에서 고시원, 집주인, 관리사무소에 대납 	가구당 최대 월30만원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료비, 약값, 진단비 등 거점기관에서 병원, 약국 등에 직접 대납 	가구당 최대 월30만원
	냉난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가스비, 전기료는 해당기관에 대납 전기장판, 솜이불, 전기난로, 내복, 방한복, 선풍기 등 구입 	가구당 최대 월30만원
	기타 긴급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수리비용(수도·보일러공사, 도배·장판공사, 집수리재료비 등) 	가구당 최대 월30만원

5 업무 흐름도

지원대상 발굴
(구·동, 거점기관)

- 구 사업부서,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등에서 대상 발굴
- 발굴대상 관할지역복지관으로 지원요청(의뢰서 첨부)

대상가구 방문상담
(거점기관)

- 관할 지역복지관에서 발굴대상 가정방문 상담

사례회의 및 대상 선정
(거점기관)

- 관할 지역복지관에서 사례회의 및 대상선정

대상자 지원
(거점기관)

- 대상 가구별 맞춤형 지원(물품구입 및 대납처리 등)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거점기관)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6 문의처

광장종합사회복지관 (☎2201-1333), 자양종합사회복지관(458-1664),
중곡종합사회복지관 (☎3436-4316)

96

희망온돌 광역단위 위기긴급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위기긴급 상황에 놓인 중위소득 80% 이하 주민

2 구비서류

- 희망온돌 광역단위 위기긴급 지원사업 신청서, 기초자료(사례관리기관 작성)
- 광역단위 위기긴급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본인이 직접 작성)
- 신청시 첨부되는 증빙자료
 - 의 료 : 청구서, 견적서, 진단서, 소견서 등
 - 주 거 : 체납증빙자료(정확한 기간, 금액 명시, 임대인 확인서명된 체납 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자료(임대차계약서, 공공임대주택 납부서 또는 선정·계약안내문 등)
 - 기타긴급 : 제해·재난 피해여부 증빙(화재 또는 수해사진, 기타보고서 등)등

3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사각지대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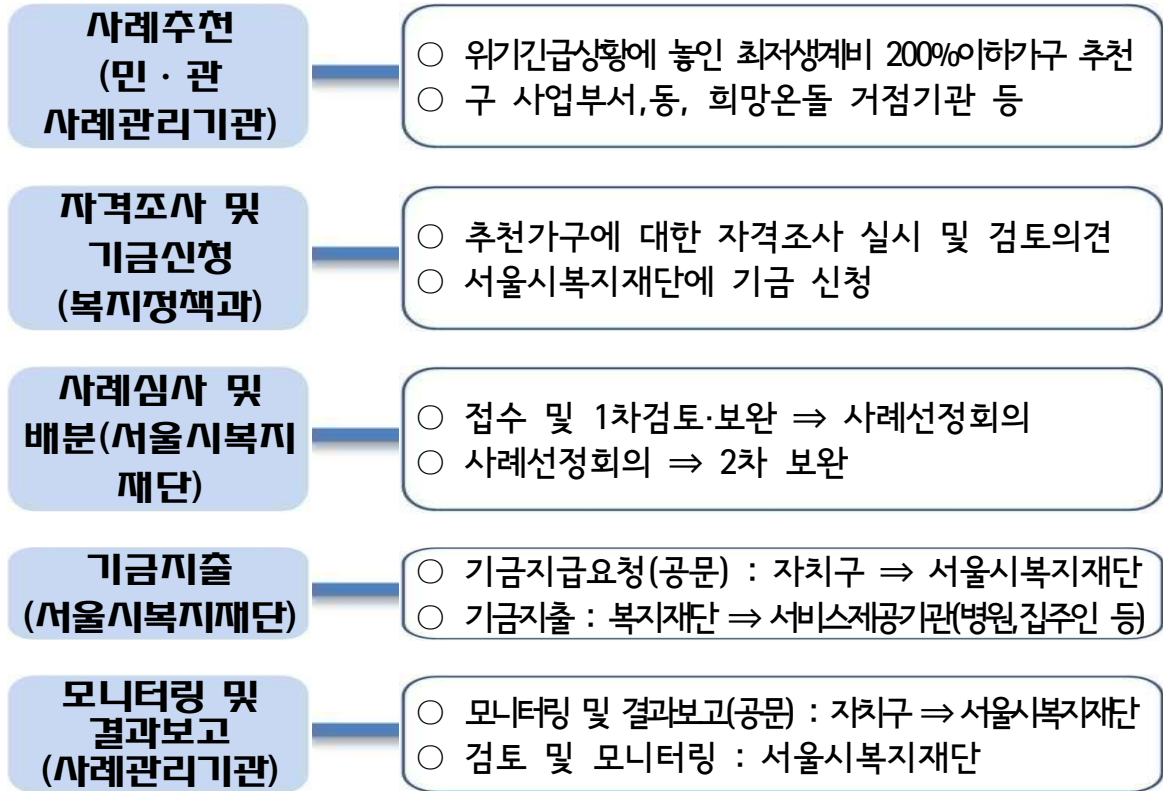
구분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기준	4인 기준	5인 기준	6인가구
중위소득80%이하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금융재산:300만원이하,주거비:50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복지부 “긴급지원” 절차에 준하여 소득조사

4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긴급의료비	• 갑작스런 질병, 부상으로 입원치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 입원중 요청되는 간병비, 의료기구, 의료보장구 구입 대여비 • 진단을 위한 검사비(의사소견서 등 제출) • 초과치료비(치아로 인한 음식물 섭취장애로 건강상 문제 유발시) ※ 만성·요양성질환, 긴급하지 않은 성형 목적의 진료비 등 제외)	최대500만원 지원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광장종합사회복지관 (☎2201-1333), 자양종합사회복지관(458-1664),
중곡종합사회복지관 (☎3436-4316)

9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기가정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계층(기초수급자, 만성적 저소득층 제외)

2 구비서류

- 추천기관 : 위기가정지원사업신청서, 사례판정회의기록서, 기관 통장사본
- 위기가정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사례관리서비스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6개월 내역 기재된 건강보험 각각 납부시 가입자별 제출, 기타부채, 의료비, 관리비, 퇴고 통보서 등 항목별 제증빙서류(해당자)

3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가구(사례관리에 동의한 가구에 한함)

구분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기준	4인 기준	5인 기준	6인가구
중위소득 100%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4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항목별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1가구당 최대백만원 한도 • 동일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사유의 지원은 1회만 가능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 승인 후 1회 추가지원 가능 	
	지원항목	지원내용
	생계·주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부식비, 단전·단수, 전기료, 가스료, 건강보험 체납료, 소액의료비, 기타필요한 긴급생계비 • 월임대료(월세), 관리비, 이사비, 임시주거비 등
		지원금액
		100만원

구 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작스런 질병, 부상으로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가능한 입원 치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간병비, 의료기구, 의료보장구구입 및 대여비 등 	100만원
	재해재난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복구지원비, 교육비, 급식비, 주거비 등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 	500만원

※ 심사지원대상의 경우 생계·주거비, 의료비 최대500만원까지 가능

5 업무 흐름도

위기가정발굴
(구·동 복지관)

- 구 사업부서,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등에서 대상 발굴
- 발굴대상 관할 지역복지관으로 지원요청(신청서 첨부)

**상담 및
사정기준확인**
(지역복지관)

-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적격여부 확인
- 사례관리 본인 동의 및 가능여부 진단
- 공동모금회 긴급지원대상 중복여부 확인
- 지원신청:매주 월~화(복지관→한국사회복지관협회)

지원대상 심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지원대상 심사 : 매주 수~목
- 우수지원대상 : 서류적합여부 심사
- 심사지원대상 : 심사위원회 심사
- 문의:한국사회복지관협회(02-719-8939)

위기정 지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지원금교부 : 매주금요일(협회에서 추천기관으로 온라인 입금)
- 지원금집행 : 추천기관에서 위기가정으로 지원 (필요시 기관에서 집행하여, 현물 지원도 가능)

사례관리
(지역복지관)

- 상담,가정방문,자원연계 등 통합사례관리
- 사례관리기관은 기본적으로 12월까지 진행 후 결과보고

6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중앙위기가정지원콜센터(1899-7422)
- 광장종합사회복지관 (☎2201-1333), 자양종합사회복지관(458-1664), 중곡종합사회복지관 (☎3436-4316)

9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질병, 재난 사망 등으로 긴급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거주자,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 월소득 중위소득 80%이하(정부보조금 생계급여 포함)

2 구비서류

- 긴급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무료임대확인서)
- 자격기준 확인서류
 -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저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소득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택일

3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사각지대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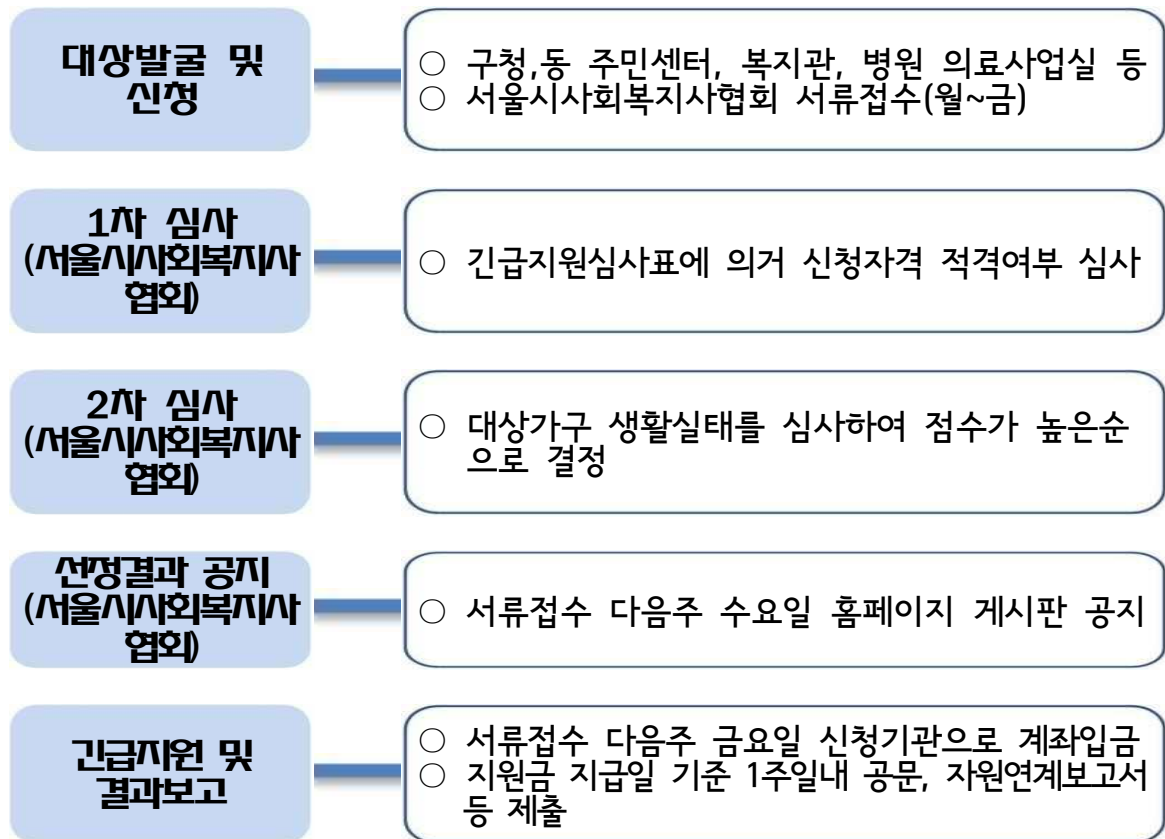
구분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기준	4인 기준	5인 기준	6인가구
중위소득80% 이하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 배분제외 대상 및 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자
 - 당해연도 '사랑의열매(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의료비)을 받은 자
 - 의료비 경우
 - 이미 퇴원(수납완료)한 자
 - 소액의료비(50만원 미만) 희망하는 자
 - 외래진료비를 희망하는 자
 - 요양성질환, 만성질환(고혈압, 고관절염, 노인성 난청, 뇌졸중,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B형간염, 비만, 심근경색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이상지혈증(고지혈증), 중독, 천식 등 질병관리본부 참조)
 - 성형목적의 의료비, 일반시력교정비, 치과진료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등
 - 장제비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장제급여 지원대상임)

4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구분	신청시기	지원내용	지원금액
	의료비	• 입원중 신청 (단, 미납된 상태에서 퇴원했을 경우 가능)	• 입원비(검사수술 등) • 간병비, 의료기구, 의료보장구구입 및 대여비	최대300만원
	재난복구비	• 재난발생후 10일 이내	• 화재,수해 등	50만원
	장제비	• 사망진단후 10일 이내	• 장제비	50만원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786-2964)

99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암, 심·뇌혈관(비수술 포함),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자 중 저소득층 및 의료비 과부담가구

2 구비서류

- 신청서(공단홈페이지 다운로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포함 통합서식,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3 선정기준

- 유형별 지원대상 의료비 규모

지원대상 유형	발생 의료비 규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 시
차상위 및 저소득가구 (기준중위소득 80%)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상
의료비 과부담 가구 (기준중위소득 80~120%)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소득대비 30%이상 발생시 심의를 통해 결정

-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원)	39,780	68,210	88,430	108,560
지역가입자 보험료(원)	16,170	58,870	89,350	119,440

- 고액재산 및 고가 차량 보유가구는 제외
 - 재산과표기준 2억 7천만원 초과자
 - 5년 미만의 3,000cc 자동차 보유자 등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액 의료비 구간별 차등지원 - 입원 및 외래(항암치료) 진료일을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 제외) <p style="text-align: center;"><확정본인부담의료비 발생 구간별 지원수준></p>				
	본인부담액	100~200만원미만	200~500만원	500~1000만원	1000만원~
	지원비율	50% (의료급여,차상위)	50%	60%	70%
※ 최종지원액: 구간별 지원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					

5 업무 흐름도

본인신청

- 환자(보호자 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입원시부터 퇴원후 60일 이내 신청
(2015.1.1.이후 퇴원자부터 적용)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2천만원 한도내 본인부담액 의료비 구간별 차등 적용
- 입원 및 외래 진료일을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6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1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건강보험 적용자+의료급여 적용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제외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이라도 시설에 입소할 때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합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를 제한합니다.(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2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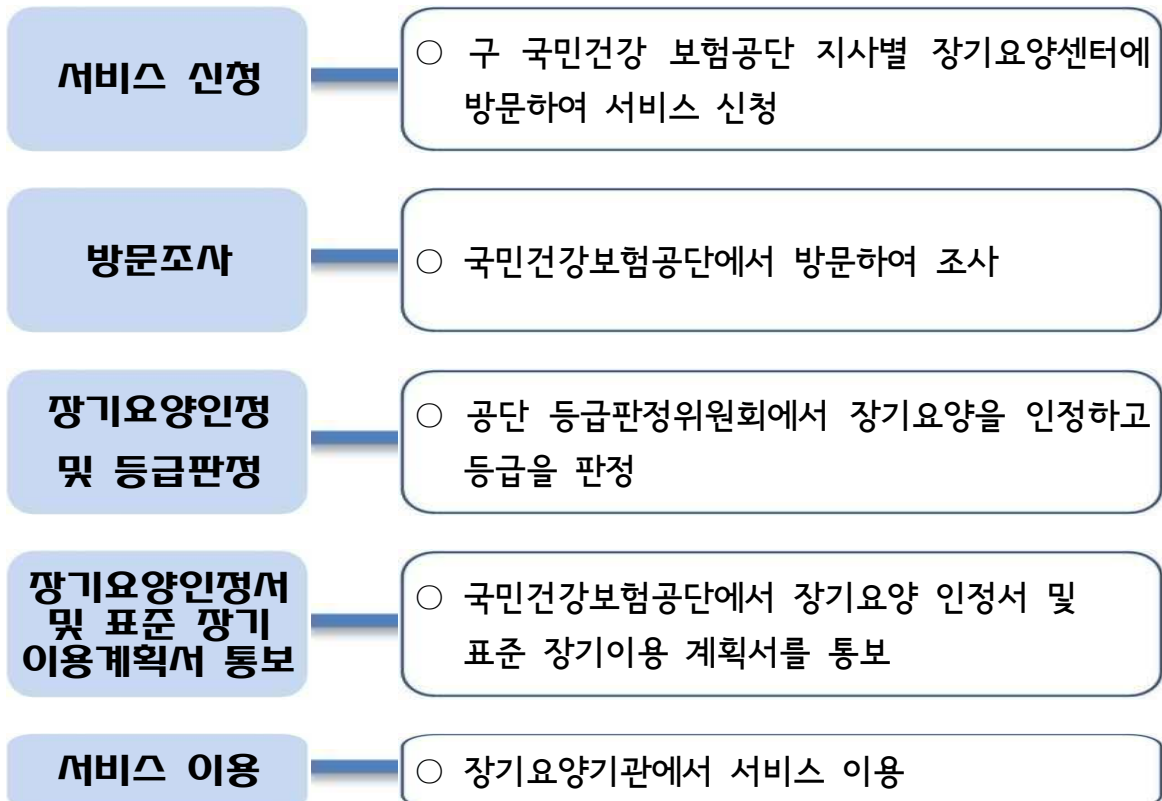
- 입소·이용신청서 및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3 지원내용

-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1,600,000원)합니다.
 - 17개 품목(구입9개 품목, 대여8개 품목)

구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석, 자세변환용구
 대여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 배회감지기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 지원대상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행방불명구급시설 수용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주소득자 : 이혼, 휴업, 폐업, 실직, 단전, 출소, 노숙 등)

※ 위기상황(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신설(2014.4.24. 시행)

- ☞ 단전·단가스로 1개월 경과가구, 3개월내 기초수급중지가구 중 근로 무능력 가구, 주소득자의 군복무·간병, 출산, 아동동반 주거취약계층, 부모 부양불능으로 아동 방치 가구 등

2 구비서류

- 필 수 : 주거관련서류, 가구원 전체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 해당자 : 위기사유에 따른 아래 해당서류 구비 제출
 - (의료지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계산서, 보험증권 등
 - (주거지원) 강제퇴거명령서, 내용증명, 경매판결문 등
 - (휴폐업)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실직)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또는 입출금내역 등
 - (교정시설출소자) 출소증명서, (노숙자) 긴급지원의뢰서
- 필요시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선정기준

-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가구원 대상종류	소득인정액(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긴급지원	1,218,623	2,074,953	2,684,264	3,293,576	3,902,888	4,512,199	5,121,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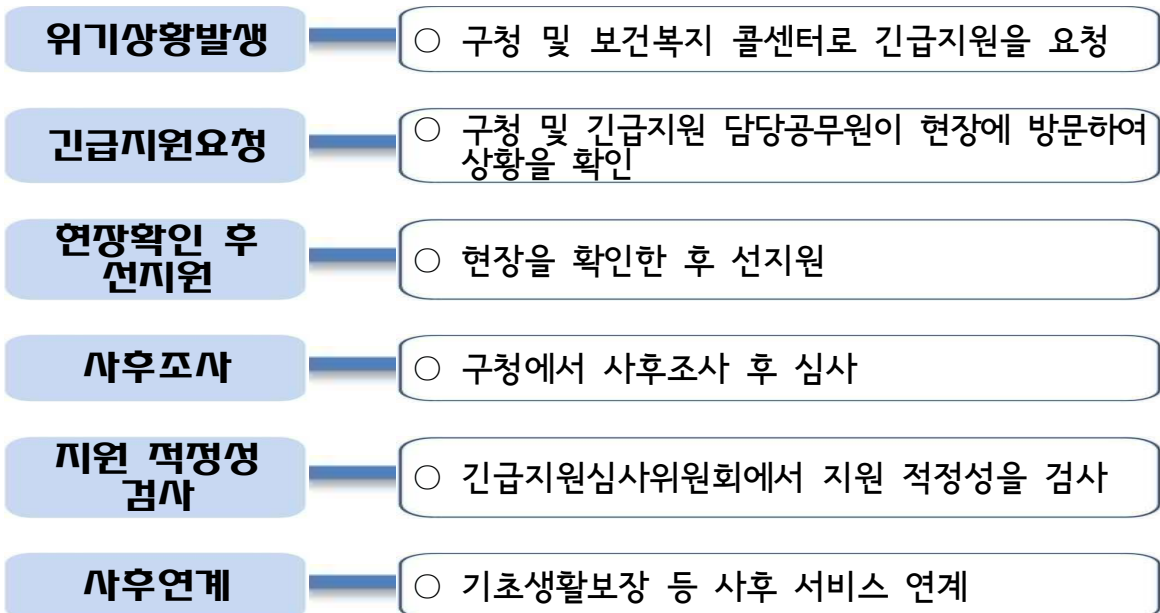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09,312원씩 증가(8인가구 5,730,823원)

- 재산 : 대도시 135,000천원, 금융재산은 5,000천원(생계비 등) 이하,
7,000천원(주거비) 이하

4 지원내용

-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을 3,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450-7309)

1 지원대상

- 만40세와 만66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비용을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합니다.
- 검진비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국고 및 지방비)

구 분	지원내용
1차 건강검진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학적 검사 : 건강상태 등 ● 혈압·신체검사 ● 진단의학검사(HDL콜레스테롤 등 12항목) ● 흉부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 치면 세균막 검사 등 ● 암검사(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자궁경부암)
2차 건강검진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건강진단 결과 상담 ● 건강위험평가 상담 ● 생활습관검사(평가 및 처방) ● 정신건강검사 및 상담 ● 고혈압·당뇨 확진 검사 ● 보건교육 실시

3 업무 흐름도

건강검진 실시
방법/절차 등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실시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

건강검진 실시

-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

결과 통보

-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를 통보

4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103

한센인 피해자 지원

1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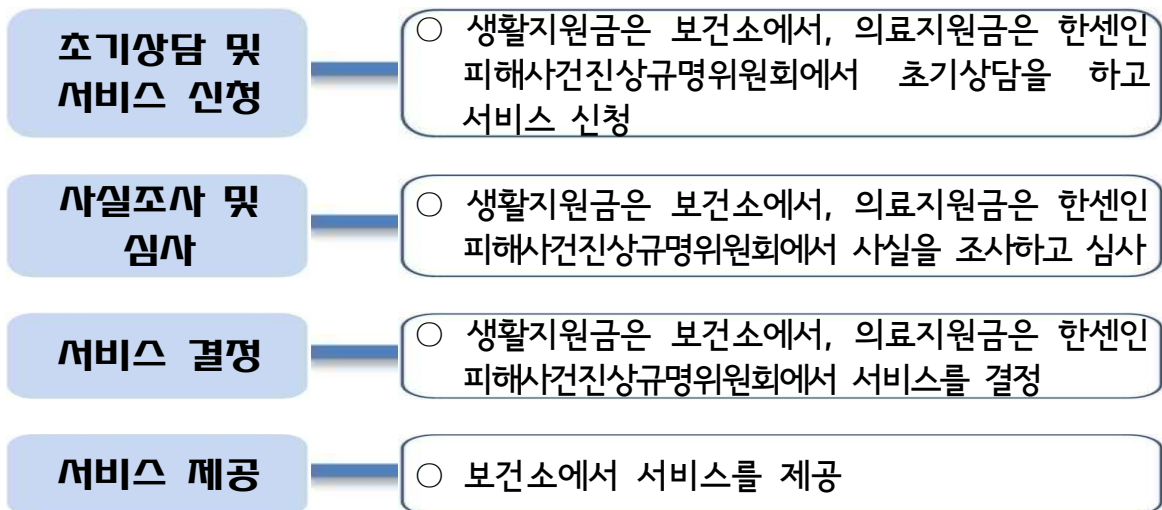
2 선정기준

-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과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원합니다.

3 지원내용

-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를 지원합니다.
- 피해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매월 150,000원을 지급합니다.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1 지원대상

-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를 지원합니다.
- 보육교사 직무를 겸하고 있는 원장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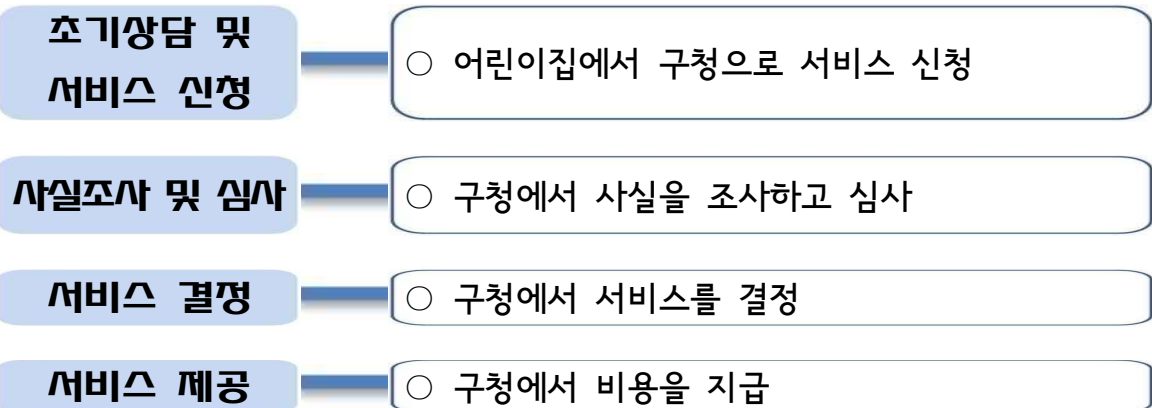
2 선정기준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입면(입면과 해면)상황을 보고하고 월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3 지원내용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16년 기준으로 월200,000원 지원합니다.
- 교사겸직 원장지원비는 '16년 기준으로 월75,000원을 지원합니다.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450-7559)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에 지원합니다.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합니다. ●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자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를 지원합니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한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홈의 구성원은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 탈(脫)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 시설퇴소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 노숙인 중 관련법령 등에 의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쉼터, 부랑인 복지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한 경우 지원합니다.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 포함)와 군 출신 대학 재학생 (당해연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에게 지원하며 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 장애인(소득100%아내),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하 - 3순위 : 일반가구 대학생 ●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또는 재혼5년 이내인 부부이면서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일 때 지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혼인3년이내, 유자녀 - 2순위 : 혼인3년초과 5년이내, 유자녀 - 3순위 : 혼인5년 이내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하 및 무주택자를 지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대리양육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아동복지시설 또는 중앙아동자힘지원센터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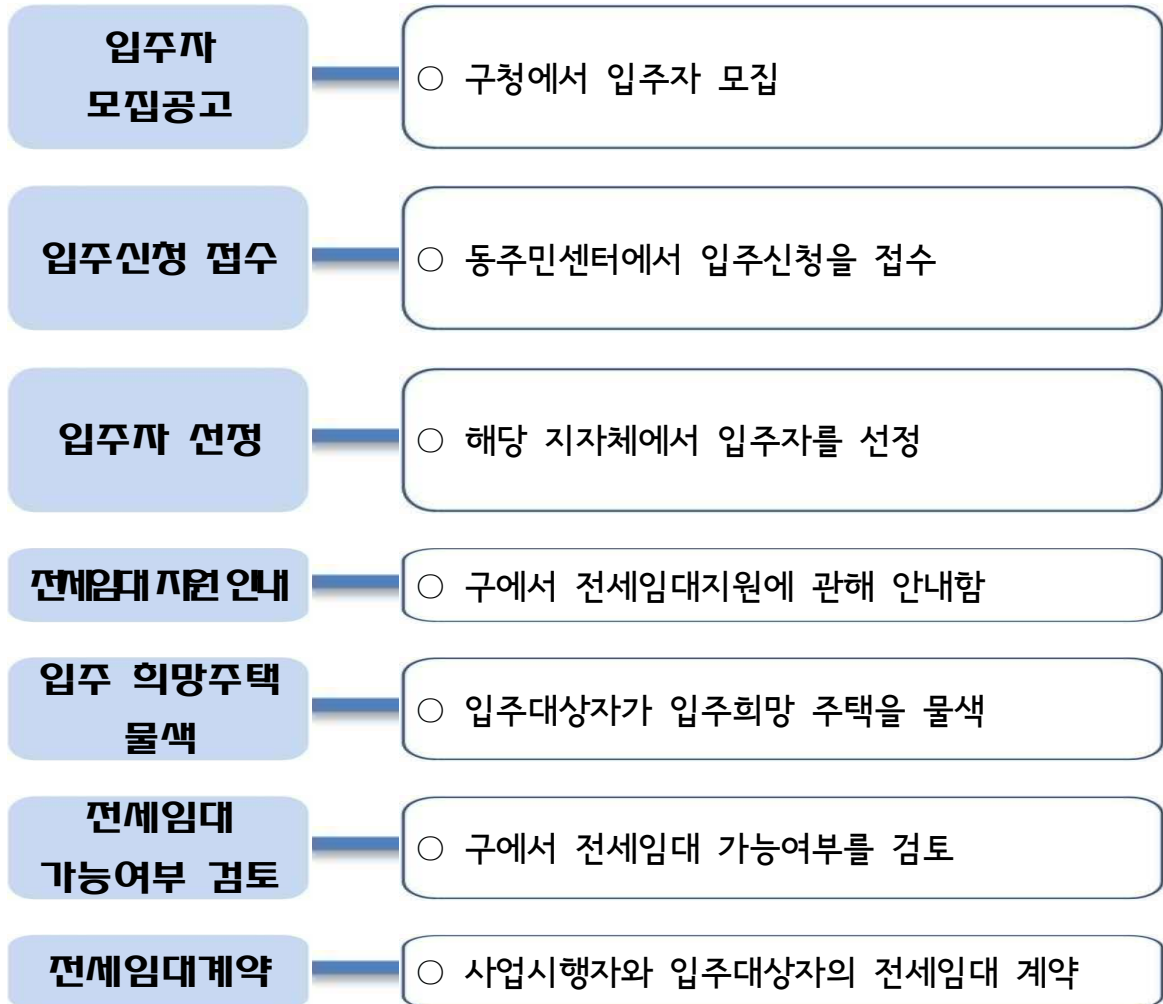
2 선정기준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구청장이 입주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 통보합니다.(단,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LH공사에서 선정)

3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450-7096)

LH공사 (☎1600-7100)

한국토지주택공사 (☎031-738-7114)

1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거주할 장소나 거주비용이 필요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주소득자 : 이혼, 휴업, 폐업, 실직, 단전, 출소, 노숙 등)

※ 위기상황(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신설(2014.4.24. 시행)

- ☞ 단전·단가스로 1개월 경과가구, 3개월내 기초수급중지가구 중 근로 무능력 가구, 주소득자의 군복무·간병, 출산, 아동동반 주거취약계층, 부모 부양불능으로 아동 방치 가구 등

2 구비서류

- 필 수 : 주거관련서류, 가구원 전체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 해당자 : 위기사유에 따른 아래 해당서류 구비 제출
 - (의료지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계산서, 보험증권 등
 - (주거지원) 강제퇴거명령서, 내용증명, 경매판결문 등
 - (휴폐업)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실직)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또는 입출금내역 등
 - (교정시설출소자) 출소증명서, (노숙자) 긴급지원의뢰서
- 필요시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선정기준

-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대상종류	가구원						
	소득인정액(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긴급지원	1,218,623	2,074,953	2,684,264	3,293,576	3,902,888	4,512,199	5,121,511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09,312원씩 증가(8인가구 5,730,823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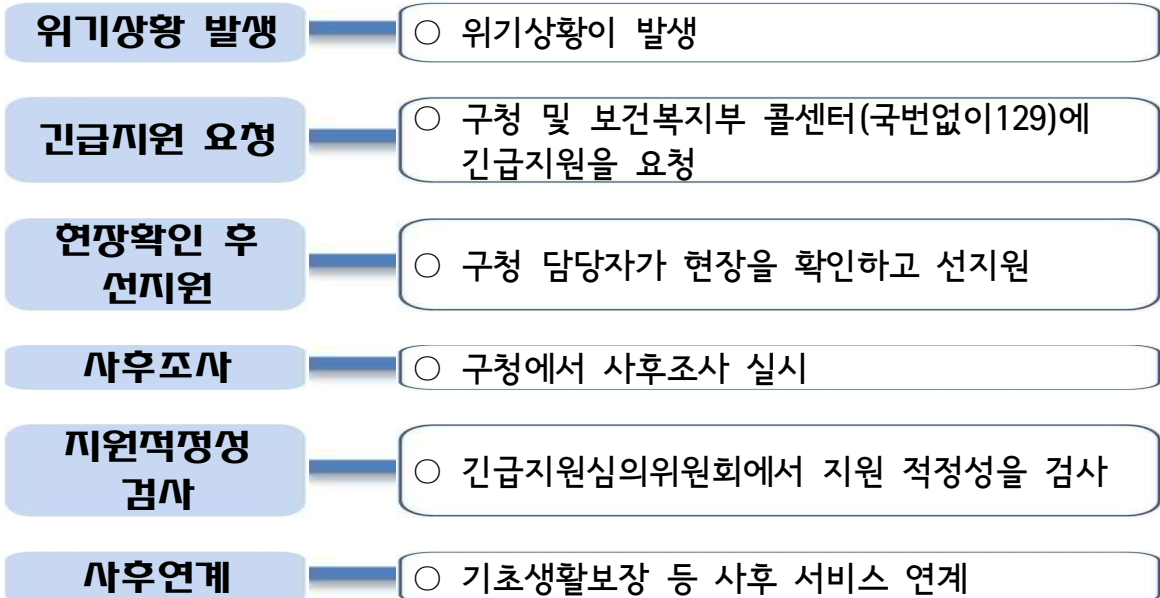
- 재산 : 대도시 135,000천원, 금융재산은 5,000천원(생계비 등) 이하, 7,000천원(주거비) 이하

4 지원내용

- 거주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구원수	1~2인	3인~4인	5인~6인
지원금액	374,200원	621,700원	820,100원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450-7492)

1 지원대상

구 분	지원내용
일반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선정기준일 당해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은 세대주 요건을 제외)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자
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 부/모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脫)성매매여성, 기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 노숙인 중 관련법령 등에 의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
기존임차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임차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주택의 기존 임차인이 당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2순위 내에 해당하는 자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공공주택지침 제51조 제1항의 제1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대학생,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 2순위 : 공공주택지침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대학생
주거취약계층 (범죄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일원이 범죄피해로 인해 종전 거주자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로 범죄 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자발검찰청장이 추천하여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자
장기미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주택의 전반적인 보수 후 6개월간 신청자가 없는 주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공공주택지침 제51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 분	지원내용
부도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m²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60m² 초과 :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공공임대 입주 자격
미분양주택 매입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m²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 60m² 초과 :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전세,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2 선정기준

- 소득자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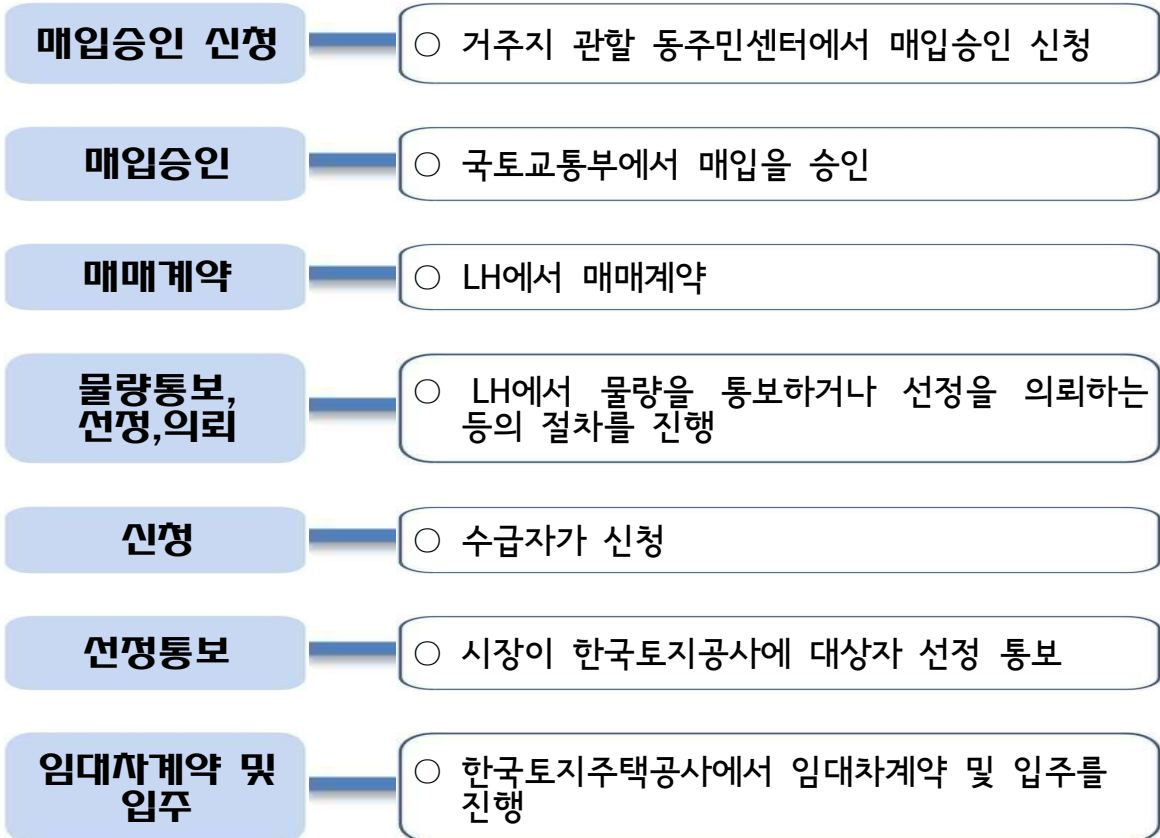
구분		소득	자산
국민임대 소득자산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부동산126,000,000이하, 자동차 24,670,000원 이하
10년 공공임대	생애최초 전용60m ²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부동산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27,690,000원 이하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장기전세 소득자산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부동산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27,690,000원 이하

- 영구임대주택을 보완하여 최저소득층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결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 2순위 : 장애인 중 소득이 100%이하인 자(자산기준 있음), 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점수에 따름

3 지원내용

-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로 거주 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함.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450-7096)
 LH공사(☎1600-7100),
 LH공사 본사 주택매입팀 (☎031.738-3411~3)
 한국토지주택공사(☎031-738-7114)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 장애인 등에게 지원합니다.

2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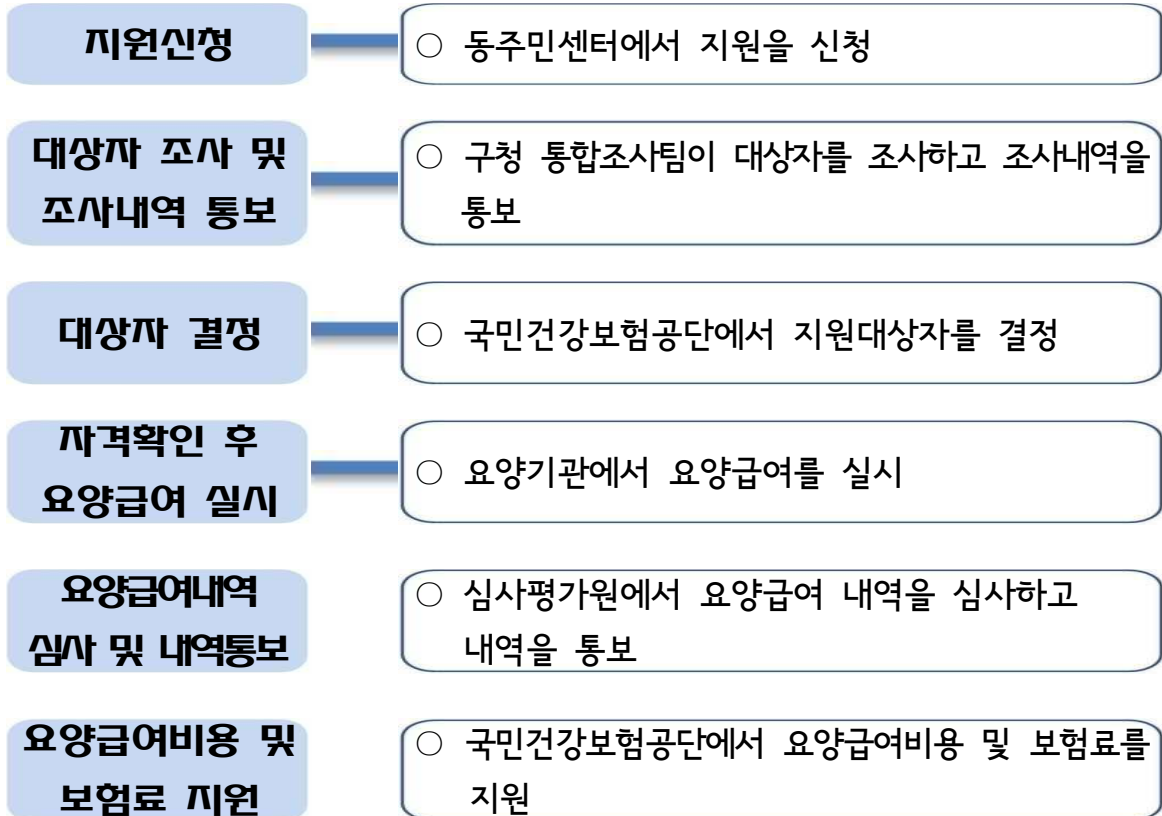
3 선정기준

구 분	대상자 기준
<p>선정기준 : 신청자 중에서 우선대상자 및 선정기준표상에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보다 소득이 낮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합니다.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중에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보다 소득이 낮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 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저소득65세이상을 부양하는 자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4 지원내용

- 일반적인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450-7096)
 LH공사 (☎ 1600-1004)
 LH콜센터 (☎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031-738-7114)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입니다.

2 구비서류

- 필 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통장사본
- 해당자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무료임대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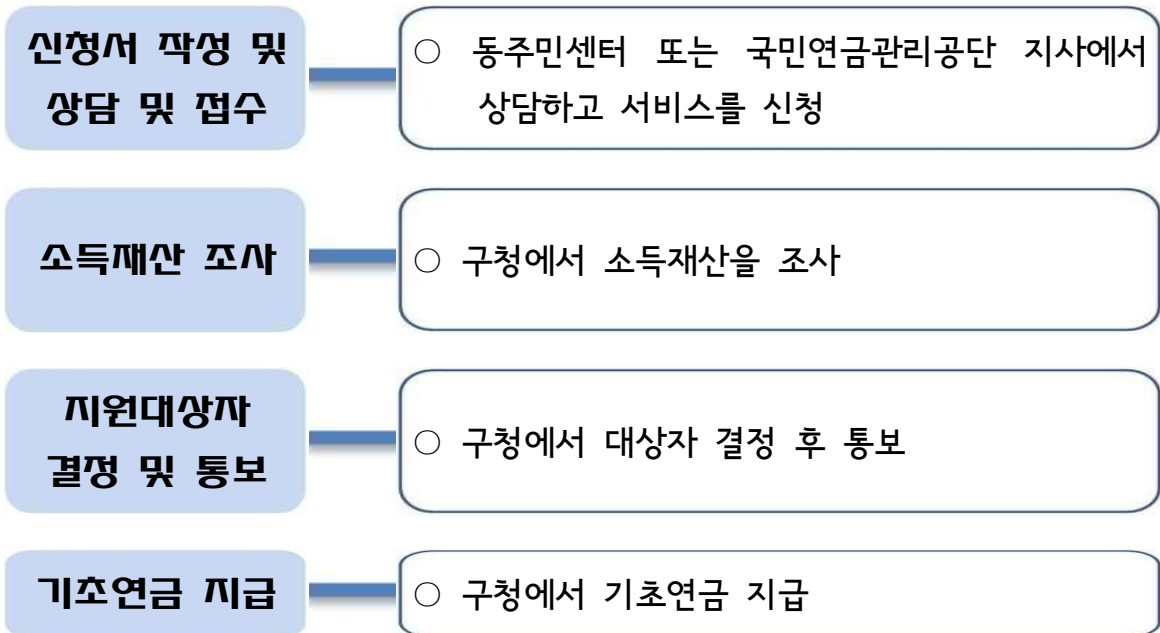
3 선정기준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000,000원, 부부가구는 1,600,000원입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존의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최대 101,300원의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는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4 지원내용

- 매달 25일 월 최대 단독가구는 202,600원, 부부가구는 324,16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0,000원~202,60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450-7553)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1355)

1 지원대상

- 노숙인 시설(노숙인 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입소해 있는 노숙인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노숙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중 노숙인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이라면 지원가능

3 지원내용

- 노숙인의 재활/요양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종사자의 인건비, 공공요금, 자활 프로그램비를 지원합니다.
- 노숙인의 재활/요양시설의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개수 또는 보수, 필요한 장비구입을 지원합니다.

4 업무 흐름도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구청에서 담당자와 상담한 후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사실조사 및 심사

- 구청에서 사실조사와 심사

서비스 결정

- 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서비스 제공

- 노숙인시설 운영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450-751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1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 지원대상

- 요양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으나 돌봄이 필요한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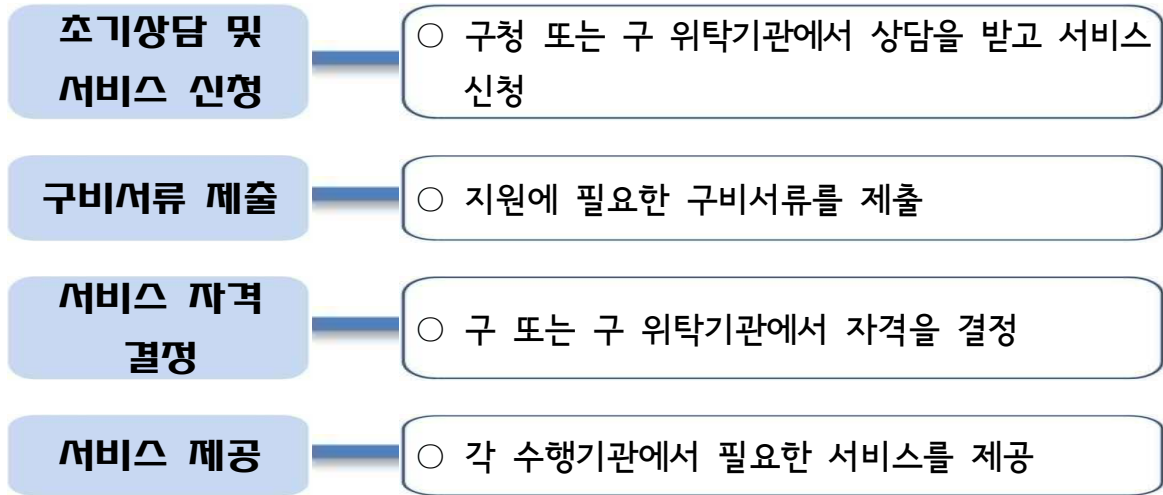
-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없음을 상관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을 선정합니다.

구 분	지원내용
열악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생활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낮아 복지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 확인이 필요하진 않지만 정기적 생활 상황 점검이나 사회적 접촉 기회가 필요한 경우
국고사업에 의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종합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를 받고 있는 경우 • 그 외 기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가사 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3 지원내용

- 장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을 지원합니다.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450-7567)

112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1 지원대상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65세 이상(1951년 출생일 경과자)

2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서비스이용자용), 서비스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의 경우),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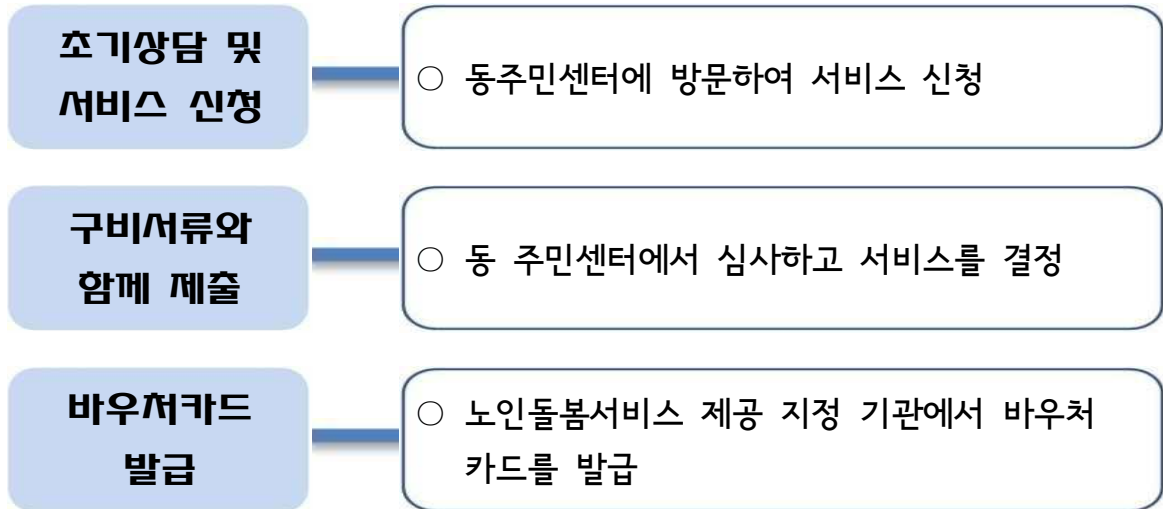
3 선정기준

-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에 속하고 전국가구월평균 소득의 150%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1~3급의 장애와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방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 세면 체위변경 옷 갈아입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의 신변활동 지원 • 취사 생활용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가사 일상생활 지원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등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450-7567)

113 장제급여

1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2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등

3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장례를 행하는데 보탬 수 있도록 가구당 750,000원을 지급합니다.

4 업무 흐름도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행복e음 입력)

대상자 확정 및
지원

- 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인하여 확정하고 장제비 지원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450-7513)

1 지원대상

- 만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2 구비서류

-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통장 사본

3 선정기준

- 자격요건
 - 참전유공자 자격은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기산일로부터 인정
 -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 소득초과여부 확인 요망
 - 무공수훈자 자격 또한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기산일로부터 인정
- 지급일 기준관련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자치구간 전출자 : 시 행정망 통보자료에 명시된 해당월 자치구에서 지급
- 지급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면서 동법 제11조의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고도장애, 중증도장애, 경도장애)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안법 위반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자,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자

4 지원내용

- 1인 월 5만원(매월25일 본인계좌 입금)

5 업무 흐름도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참전명예수당 신규신청
- 구청으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송부

자격확인

- 서울시에 신규 신청자 명단 송부
- 서울시에서 보훈청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 요청

수당 지급

- 매월 25일 대상자 명의 통장에 입금

6 문의처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450-7484)

115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일부사업 기초연금 미수급자 또는 만60~64세 참여가능)

2 구비서류

- 신분증 및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3 선정기준

-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일부사업 기초연금 미수급자 또는 만60~64세 참여가능)

구분	대상자
공익활동	전국형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역형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구 교육형은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가능
취업활동	인력파견·공동작업형 만60세 이상 전체노인
창업활동	공동작업장, 제조판매형 만60세 이상 전체노인

※ 신청제외 : 국민기초수급자(단,의료급여2종은 가능), 정부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은 제외), 장기요양 보험 등급판정자, 전년도 부적격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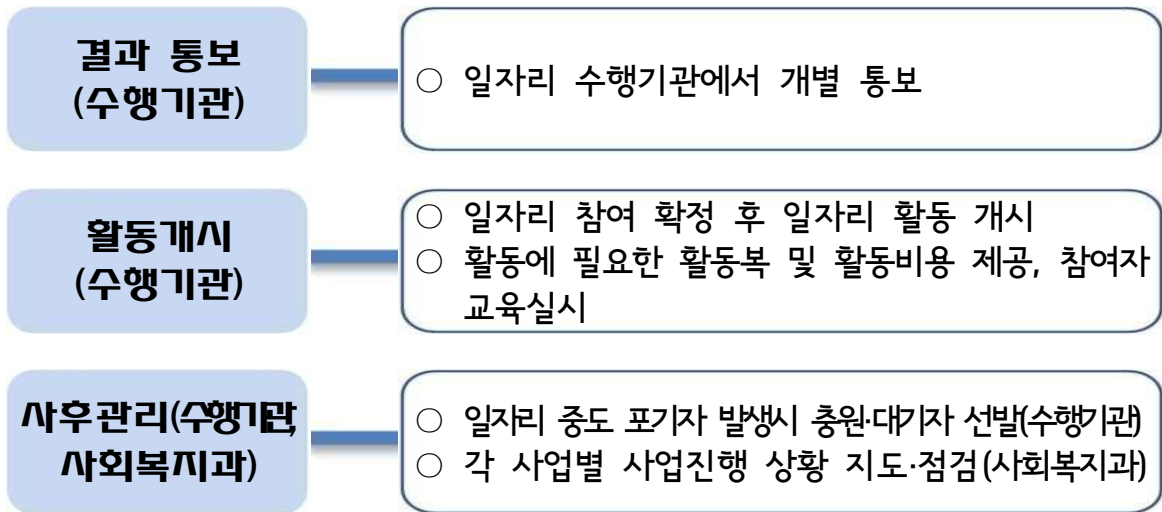
4 업무 흐름도

신청접수
(수행기관)

- 참여자 모집 홍보(노인복지과)
-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행기관에 신청접수(수행기관)

참여자 선발
(수행기관)

- 참여자 선발 조건 적합자 중 공통선발기준표에 의거 선발
- 타 일자리 중복여부 확인후 최종명단 확인 및 산재보험 가입



5 문의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450-7519)

1 지원대상

- 안 검진은 만60세 이상 노인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우선지원)
- 개안수술은 만60세 이상의 노인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기초생
활보장수급자 우선 지원)

2 선정기준

-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수술병원의
진단서 첨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 모든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신청일 이전
-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서식 2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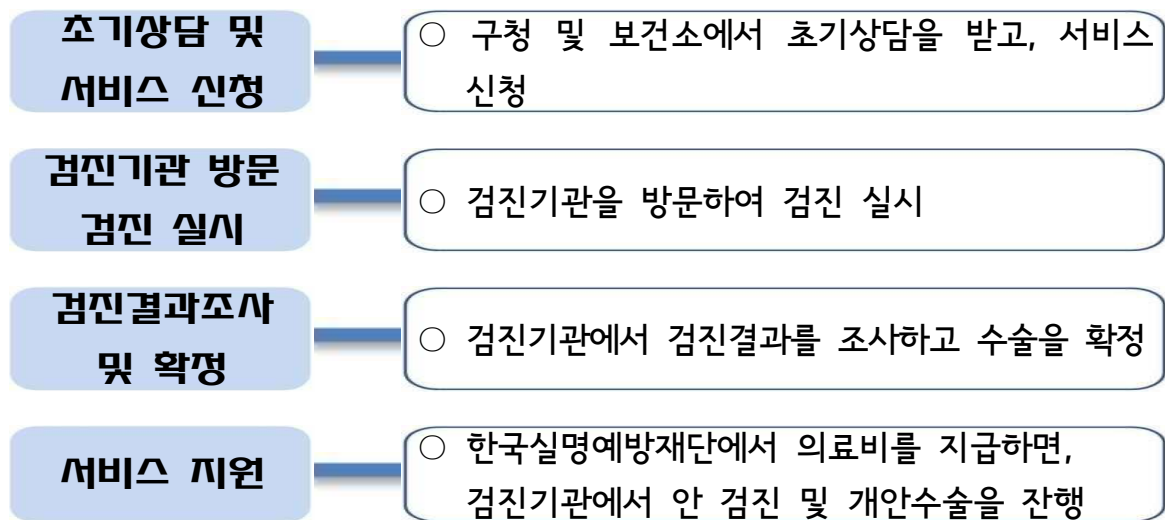
3 선정기준

- 노인 안 검진 대상자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과 전문의가 없는 동 지역의 만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시장이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장이 선정한 지역의 만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 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만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 선정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노인대상의 안검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60세 이상의 노인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아래와 같은 질환에 대한 개안 수술을 지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 내 장 : 안과 전문의에 의해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시력이 0.3이하인 노인 - 망막질환 : 안과 전문의에 의해 당뇨병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 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노인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노인

5 업무 흐름도



※ 수술지원 통보후 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로 수술 진행

6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088,1102)

117

노인의치보철(보건소 의치(틀니) 사업)

1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가 대상입니다.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법 개정에 따라 ‘차상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만성 질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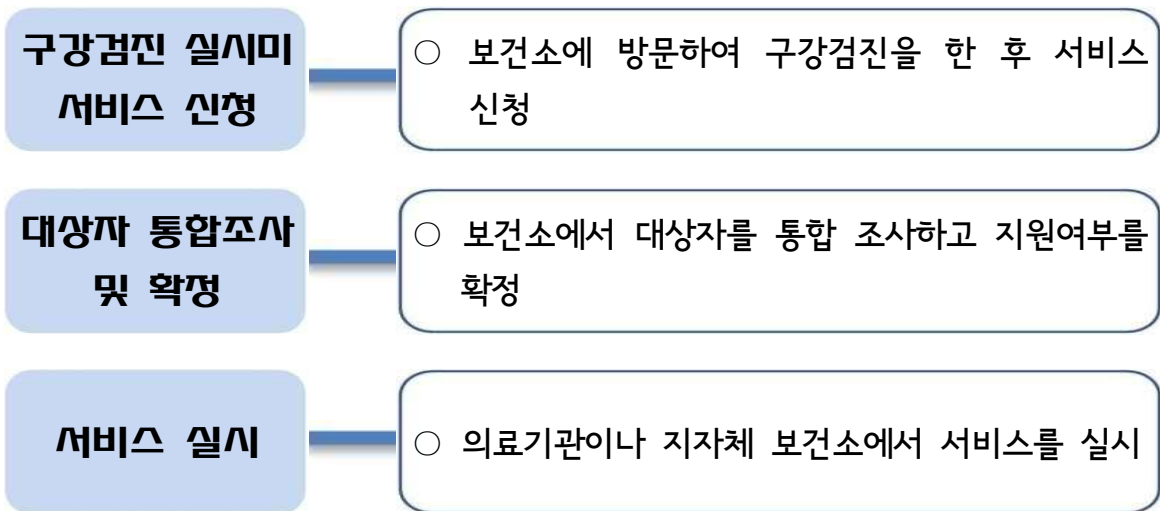
2 선정기준

구 분	지원내용
완전의치(틀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위 아래턱 양측에 전혀 차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노인 ● 2순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히 뽑거나 뺀 후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노인 ● 3순위: 위 아래턱 중 한쪽에 차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노인
부분의치(틀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위 아래턱 양측 어금니가 없는 자 중 지대치(고정식 또는 가설식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차아)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노인 ● 2순위 : 위 아래턱 한쪽 어금니가 없는 자 중 지대치(고정식 또는 가설식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차아)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노인

3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의치보철에 필요한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의치 : 1,051,340원(편약기준) ● 부분의치 : 1,864,050원(편약기준) ● 부분의치(프레임) : 1,279,050원 ● 부분의치(프레임)+지대치 1개 : 1,474,050원 (12,790,000원+1,950,000원) ● 부분의치(프레임)+지대치 2개 : 1,669,050원 (12,790,000원+390,000원) ● 부분의치(프레임)+지대치 3개 : 1,864,050원 (12,790,000원+5,850,000원)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보건소 노인복지팀 (☎450-1966)

118 원폭 피해자 지원

1 지원대상

- 원폭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대한 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 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 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 피해자(건강수첩 미소자)를 지원합니다.

3 지원내용

- 진료보조비는 매달 100,000원을 분기마다 지급합니다.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 입소한 경우에는 매달 50,000원을 지급합니다.
- 진료비는 건강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원폭 피해자가 사망 했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1,500,000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4 업무 흐름도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한적십자사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사실조사 및 심사

○ 대한적십자사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서비스 결정

○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

○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제공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02-3705-3705)

1 지원대상

- 해당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

2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시 제출 생략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선정기준

구 분	지원내용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할 것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할 것
치료기준	•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를 확인함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경우(4인기준-5,160,000원),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을 지원함.

- 2012년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경증치매, 초로기치매, 기초노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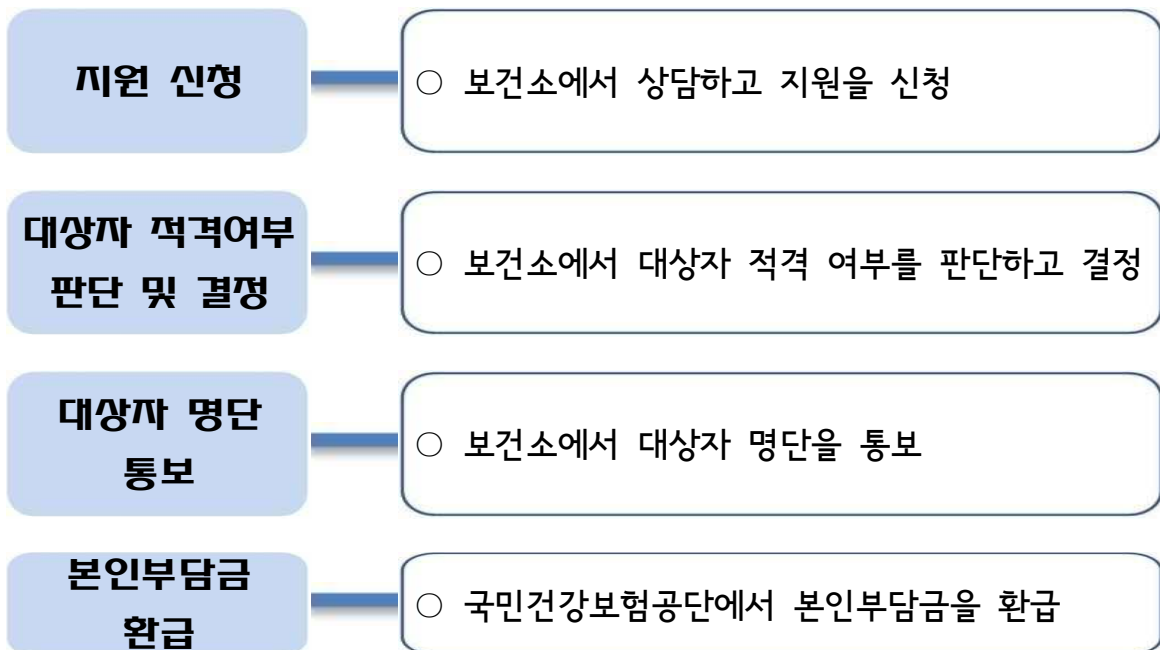
금수급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계속 지원할 수 있으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격 유지 시까지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자, 의료급여본인부담금 보상제 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4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30,000원(연360,000)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보건소 노인보건팀 (☎450-1966)

1 지원대상

- 지역 내 만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 노인이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에 처해 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재가)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를 지원합니다.
-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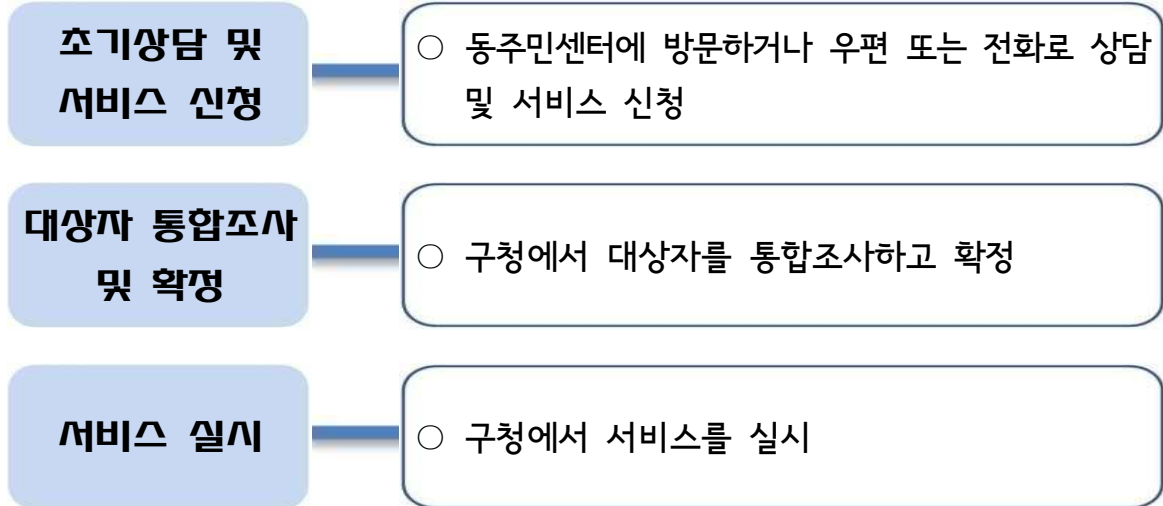
2 선정기준

- 지자체 업무 담당자의 승인 후 서비스 제공
- 응급안전서비스는 보건복지부서비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 선정

3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상황 모니터링 ● 안전확인 ● 생활교육서비스 연계
제공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가스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독거노인응급 안전시스템 이용사례를 교육합니다. ● 실제 응급상황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필요시 인근에 있는 노인돌보미에게 방문하여 확인할 것을 요청함)합니다. ●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을 통해 안전확인 조치를 합니다.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450-7567)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사회보장정보원 생활안전지원부 (☎ 6360-6170,6171)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서비스 (☎ 6360-6170,6171)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2 구비서류

- 필 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부채 확인 서류

3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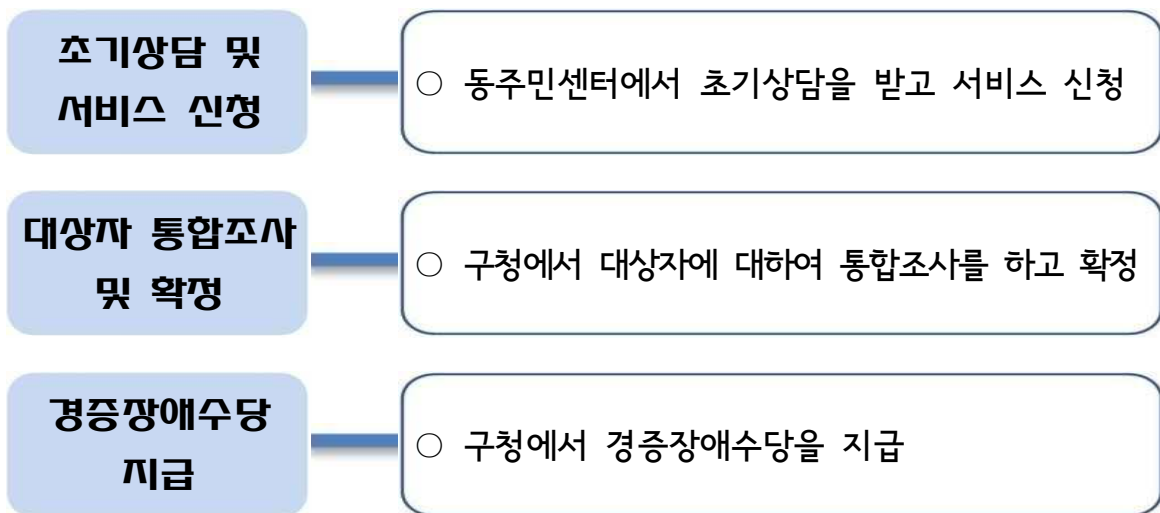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선정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연령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또는 휴학 중인 18~20세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 포함
- 신청일 현재 등록된 장애인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대상종류	중위소득의 50% (단위: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인정액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4 지원내용

- 기초수급 및 차상위의 경우 40,000원, 시설기초의 경우 20,000원의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450-7534)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122 장애인보장기금 교부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등록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심장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계층은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를 포함합니다.

2 선정기준

- 아래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둡니다.
 -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재가 장애인
 - 보조기구를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3 지원내용

- 장애종류, 등급에 따라 18가지의 보장기금을 지원합니다.

4 업무 흐름도

장애인보장기금
교부 신청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자격기준 검토

- 구청에서 자격기준을 검토

평가 및 검진

- 의료기관과 장애인단기관에서 평가 및 검진을 실시

교부결정

- 구청에서 교부 결정

교부 및 검수

- 구청에서 교부하고 검수를 실시

사후관리

- 구청에서 사후관리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450-7514)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지역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실비 거주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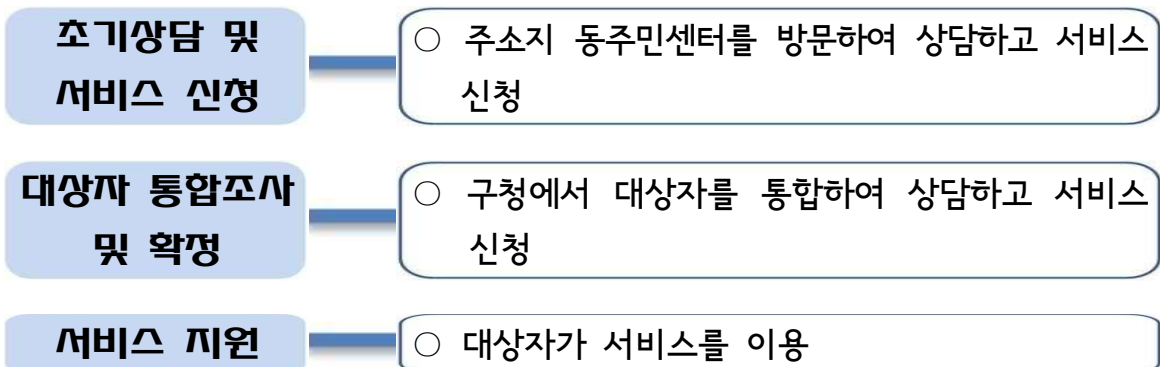
2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2014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을 선정합니다.(1인당 월평균 소득액 1,471,000원)

3 지원내용

-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 중 매달 278,000원을 지원합니다.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장애인팀 (☎ 450-7532),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1 지원대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18세 이상인 등록된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20세이하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이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입니다.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외에 장애가 하나 이상 추가되면 3급 중복장애(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 의 부장애가 추가 등록되면 해당)입니다. 그러나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직역연금 등의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구비서류

- 필 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3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로 2016년의 기준은 단독가구 1,000,000원, 부부가구 1,600,000원입니다.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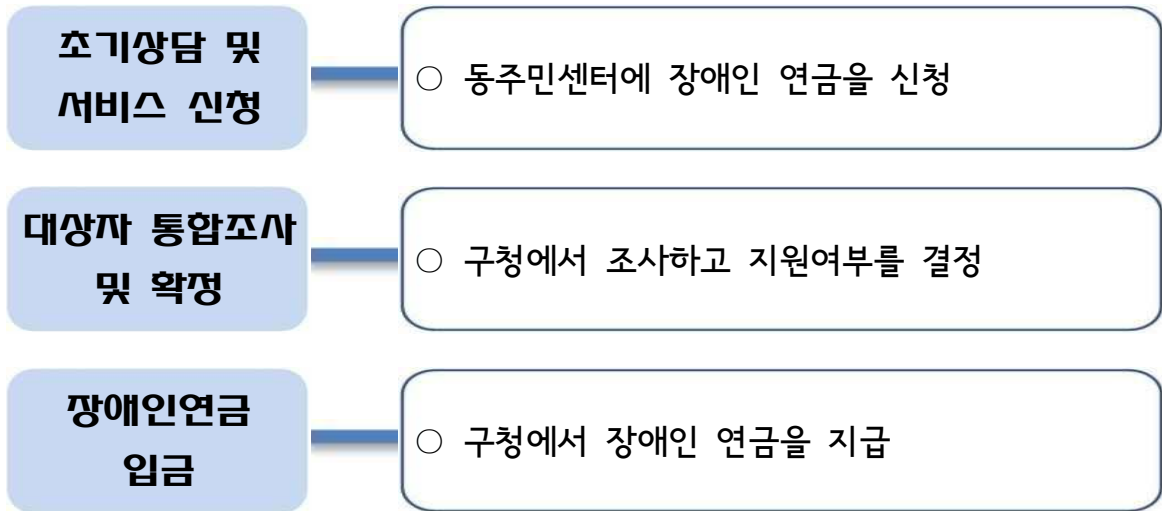
- 기초급여

구 분	지원내용
18~64세까지 기초급여액(단독)	● 20,000원~202,600원
18~64세까지 기초급여액(부부)	● 40,000~324,160원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됨.

• 부가급여

구 분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미만 : 80,000원 ● 65세 이상 : 282,600원 ● 65세 이상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70,000원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반 : 70,000원 ● 급여특례 : 140,000원
차상위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미만 : 20,000원 ● 65세 이상 : 40,000원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450-7534)

1 지원대상

- 성년 등록장애인 중 최저생계비 300% 이내의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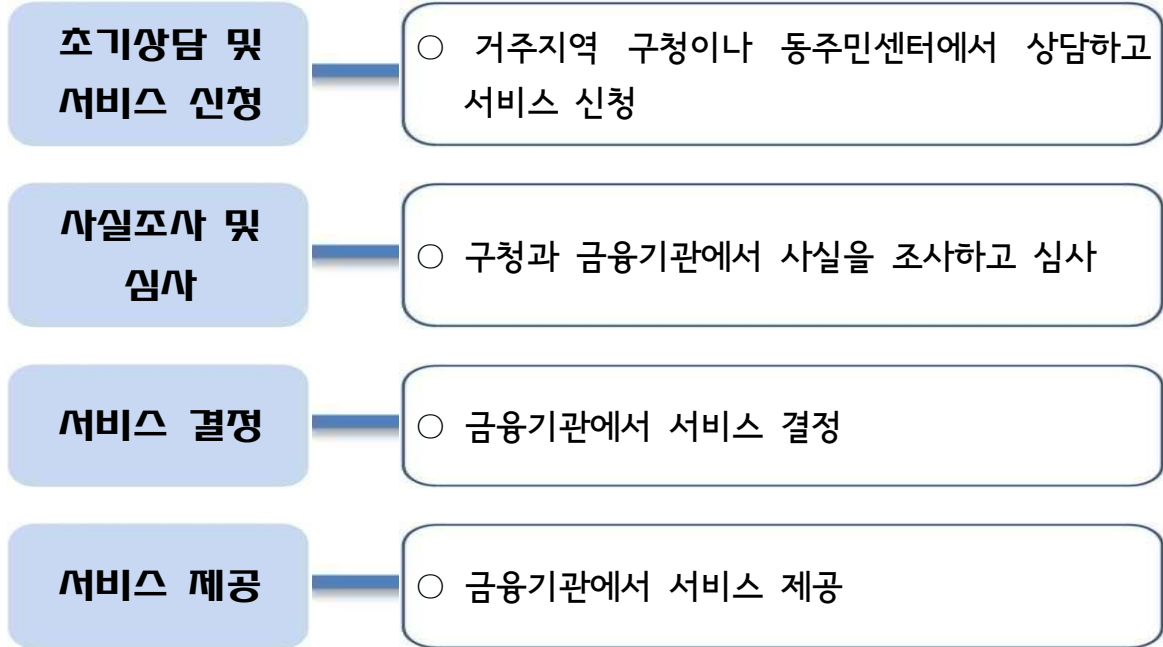
2 선정기준

- 자립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300% 이내인 성년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은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포함)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구입자금을 빌릴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에 따라 빌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지원내용

- 금융기관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추천합니다.
 - 최저생계비 300%이하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대출 추천, 고정금리 3%,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자동차 구입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추천합니다.
 - 10,0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지원, 고정금리 3%, 5년 균등상환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450-7531)

1 지원대상

- 만6세 이상~만65세미만의 1급,2급,3급의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이하65세 도래자라 칭함)을 지원합니다.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2 구비서류

- 필 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해당자 : 장애등급 심사서류(장애등급 심사대상의 경우),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3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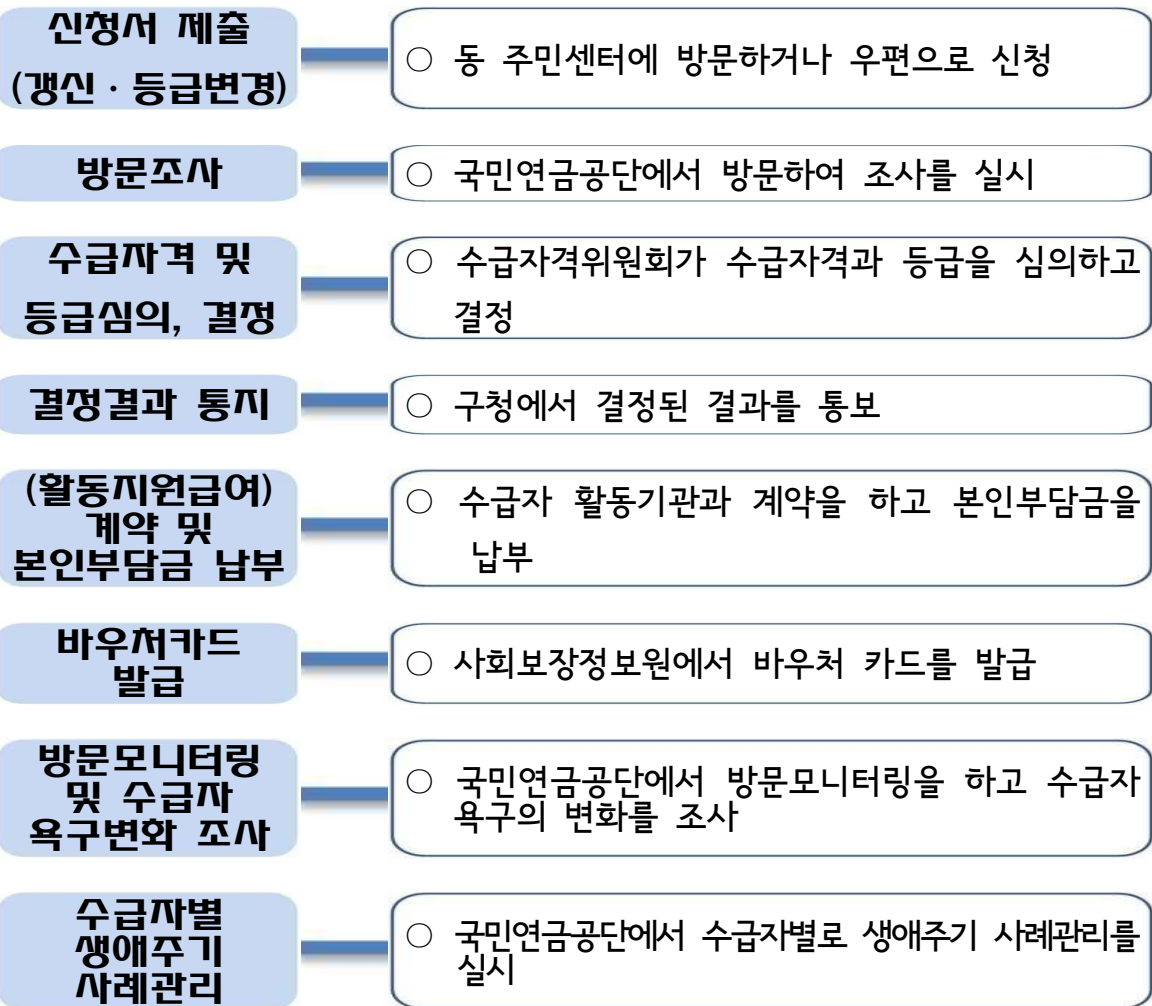
- 만6세이상~만64세이하는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22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인정점수가 220점 미만이라도 추가급여 사유가 있고,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선정합니다.
- 만65세 도래자는 방문조사 및 장애등급심사를 하지 않고 기존의 활동지원 등급 및 월 한도액을 인정합니다.
- 소득에 관계없이 선정합니다.

4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급여
1	1,063,000원(약118시간)
2	852,000원(약95시간)
3	642,000원(약71시간)
4	430,000원(약48시간)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450-7531)

1 지원대상

- 미취업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취업여부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여부와 사업자등록 여부 등으로 확인합니다.

3 지원내용

-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4 문의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450-1313)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6)

1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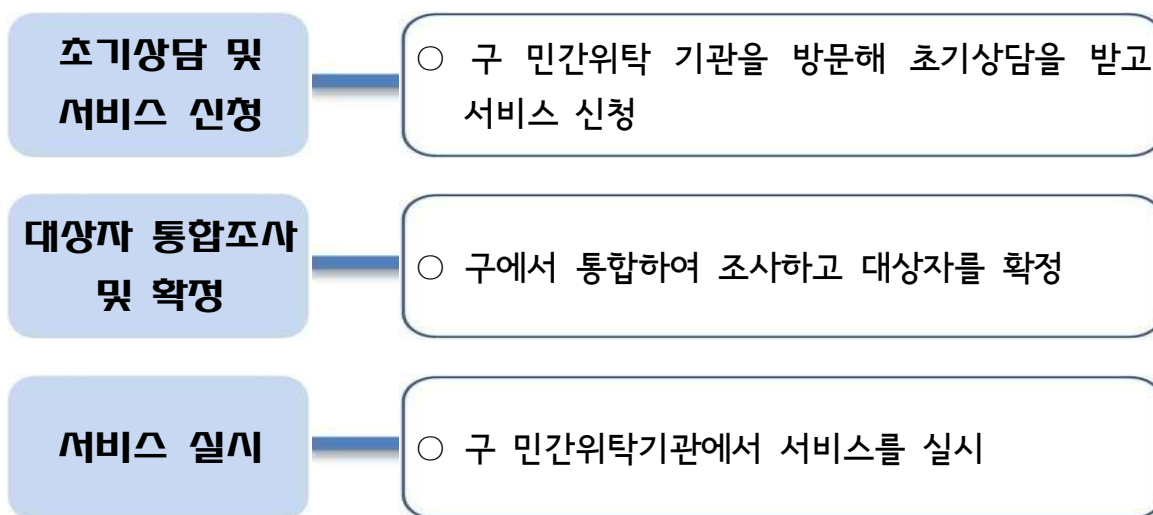
2 선정기준

-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1순위 : 신규 중증(1~3급) 장애인
 - 2순위 : 중증(1~3급)장애인, 여성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장애인
 - 3순위 :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우선 선발 순위를 고려해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선발, 신규 참여자를 선발하여 취업의 기회를 골고루 배분함.)
- 장애인복지 일자리에 참여하여 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장애유형이나 등급, 재산세액, 가족구성원, 사회활동능력 등에 따라서 배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장애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최근 1년 안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지원내용

- 주 14시간/월56시간으로 급여는 313,000원입니다.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450-7097)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1 지원대상

- 훈련생은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한 중증장애인)
- 사업체는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자
 -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장애인
 -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 포기한 후에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장애인

2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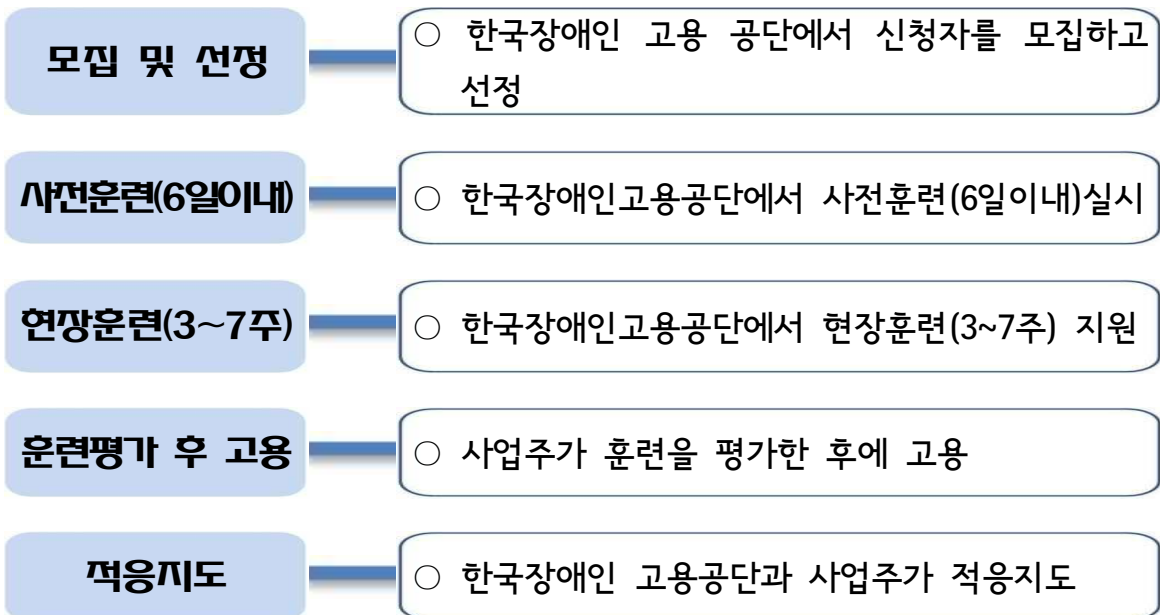
- 훈련생에게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 환경에 대하여 심리적, 기능적으로 향상시키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에 지원합니다.

3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2015년)
훈련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준비금 : 40,000(6일이상 출석시 1회 지급) ● 훈련 일비 : 1일 17,000원 ● 숙 박 비 : 1박 10,000원 (현장훈련(출석)일수+사전훈련(출석)일수)×17,000원 ● 훈련 기간 : 3주~7주 ● 훈련 시간 : 1일 4시간 ~ 8시간 ● 훈련 장소 : 구인사업체 현장 ● 주요훈련내용 :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직무지도원을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구분	지원내용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훈련보조금(1인, 1일) : 19,340원 ● 직무지도원 수당(1일) : 외부50,000원, 사업체근로자 2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당지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함 - 결석할 때는 당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함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1 지원대상

- 만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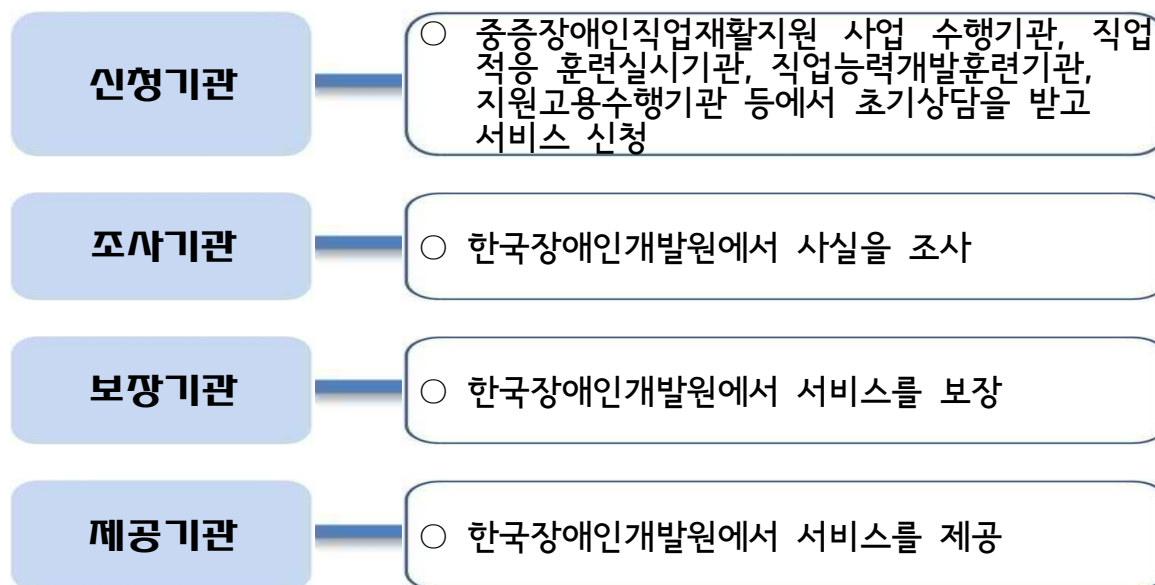
구 분	기 준
직업적응훈련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경우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옮기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과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한 경우 • 중증 및 여성, 고령장애인을 우선 선발
훈련수당 지급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기관에 재학중인 훈련생으로 등록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 출석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함(훈련준비금, 자격취득수당 예외)

3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직업적응훈련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70,000원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준비금 : 1회 40,000원 • 가계보조수당 : 월70,000원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30,000원 • 교통비 : 월50,000원 • 식비 : 월50,000원 • 자격취득수당 : 1회 50,000원

구 분	지원내용
지원고용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준비금 : 40,000원(사전훈련 포함 6일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 1회) ● 훈련알비 : 1일 12,000원 ● 사업주 보조금 : 훈련생 1인당 1일 17,650원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가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2 구비서류

- 필 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 해당자 : 검사결과지, 증빙사진(등록하고자 하는 장애 유형에 따라 다름)

3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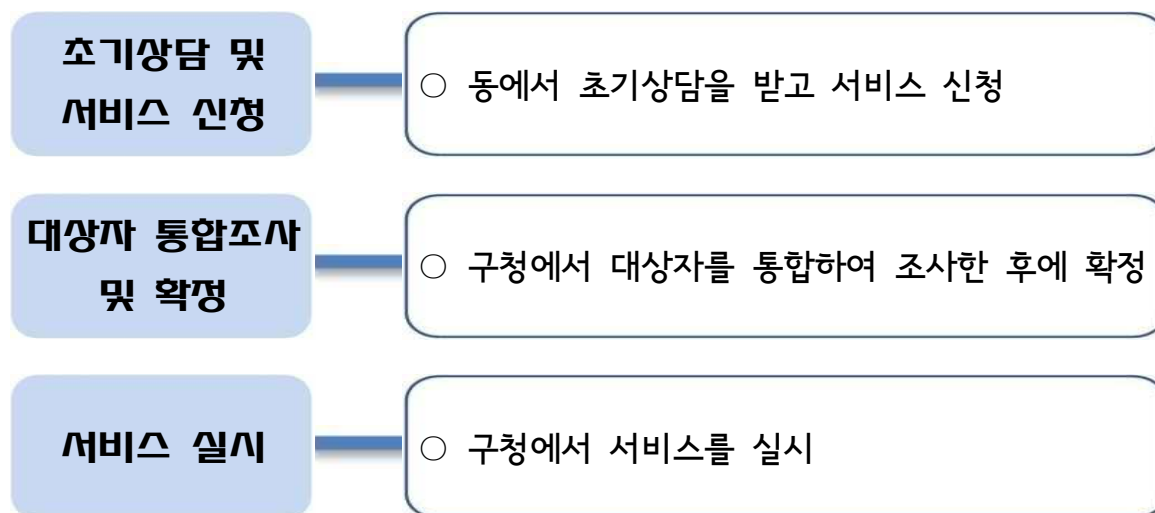
구 분	지원내용
진단비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가 신규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장애인이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가 등록장애인이어서 의무적 재판정 기간이 도래했거나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 조정신청은 지원 제외
검사비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등록장애인인 경우 • 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 심사결과 장애등급외 결정으로 확인되어도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에는 진단비와 검사비를 환수하지 않습니다.(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만 지원)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진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경우 40,000원 기타장애는 15,000원
검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50,000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원 차상위계층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100,000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원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450-7534)

1 지원대상

- 장애발생 후 사회복귀 지원등 재활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권역재활병원에서 내원하는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3 지원내용

- 조기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4 업무 흐름도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권역재활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사실조사 및
심사

- 권역재활병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후 서비스 결정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1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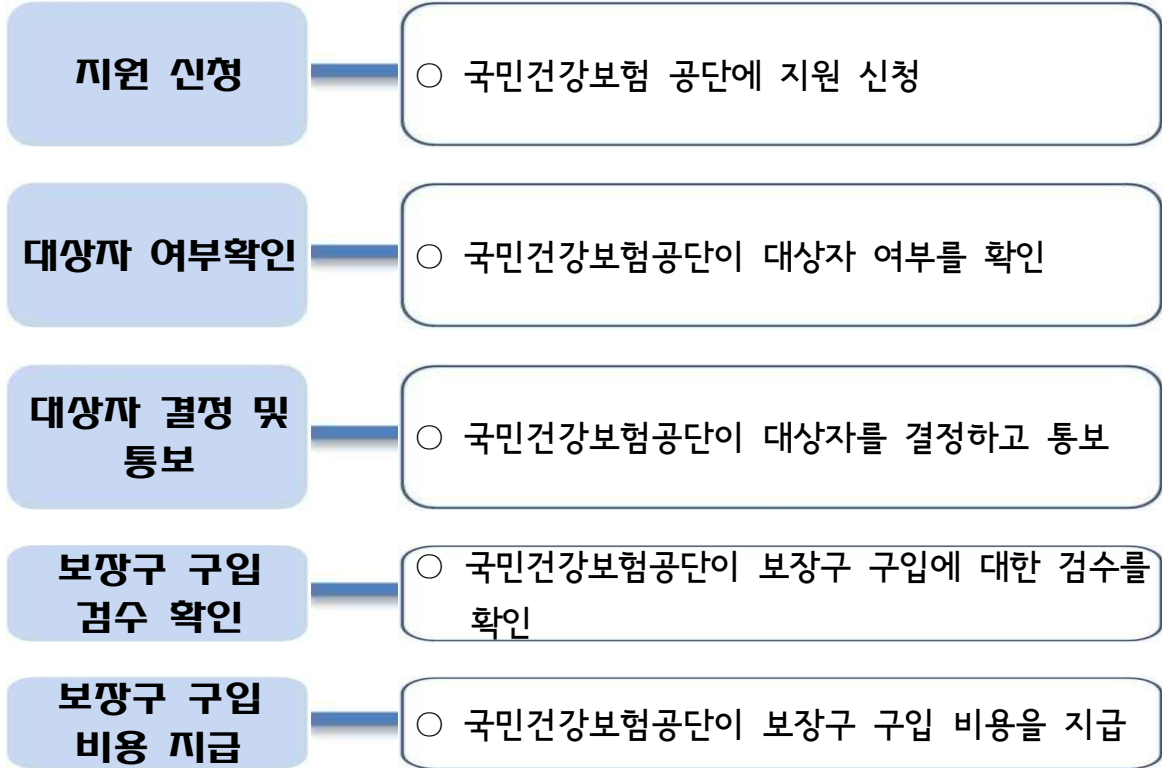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을 선정합니다.

구 분	지원내용
보장구 구입전 공단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보장구 제조사와 판매자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을 지원합니다.

4 업무 흐름도



5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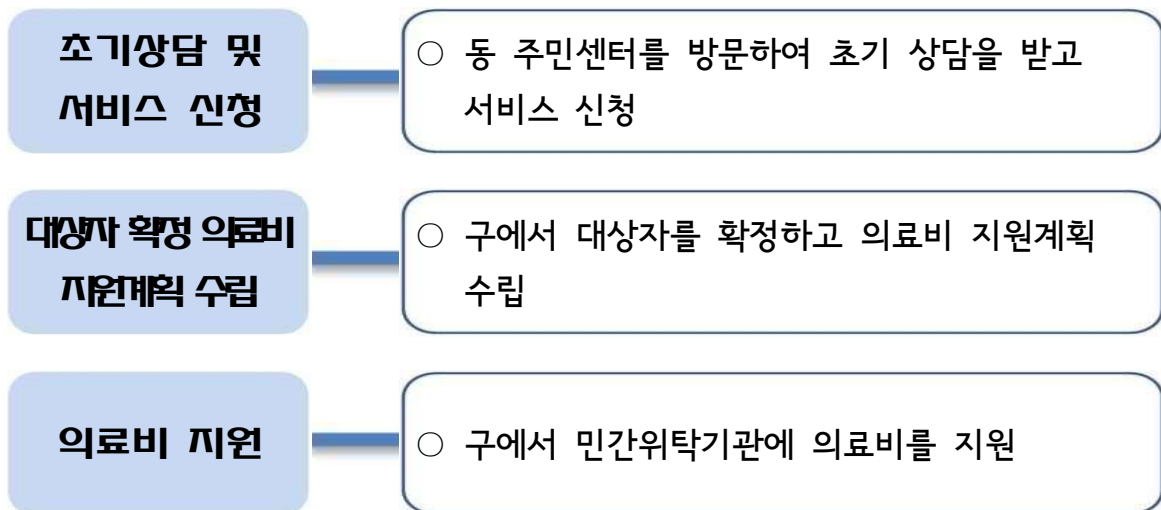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에서 등록장애인(만성질환과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3 업무 흐름도



4 문의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450-7531),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1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구비서류

- 필 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해당자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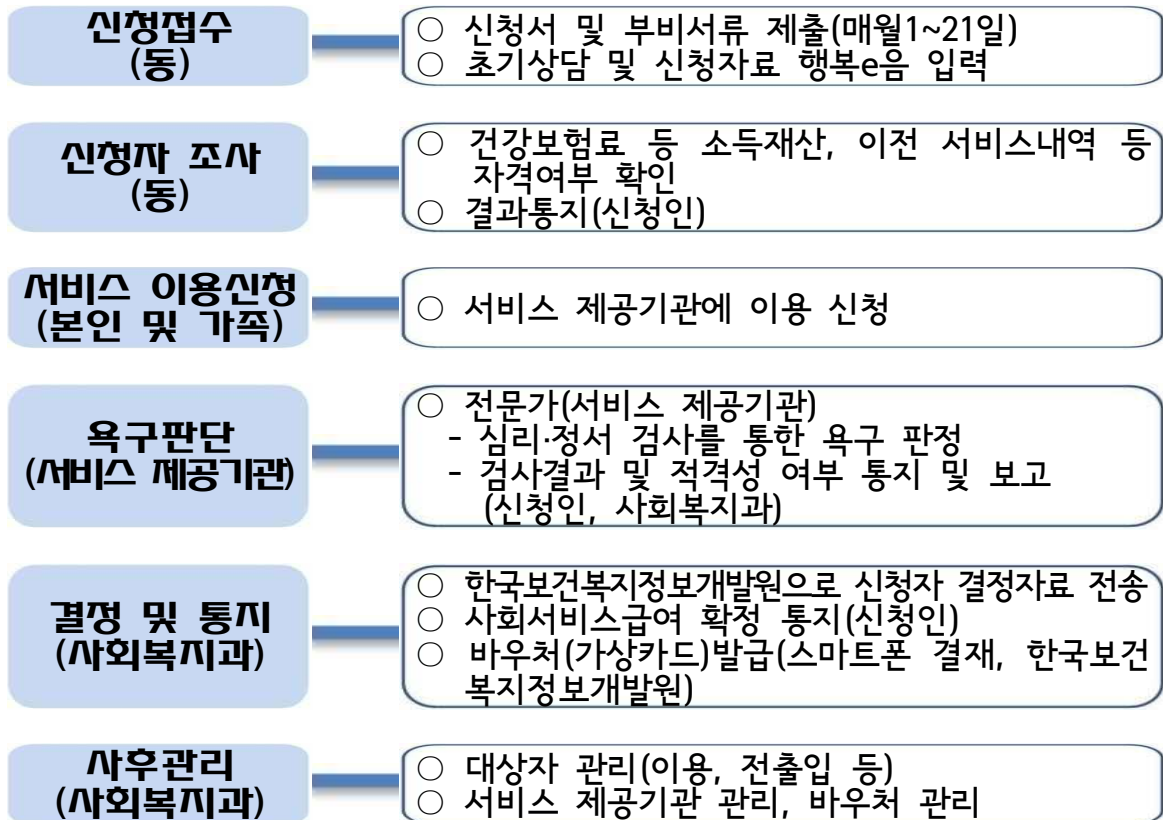
가구원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70	76,004	71,845	76,500
		80,982	76,551	81,511
2인	4,746	145,527	162,602	147,696
		155,059	173,252	157,370
3인	6,763	208,766	230,162	213,802
		222,440	245,238	227,806
4인	7,741	242,453	262,525	251,447
		258,334	279,720	267,917
5인	8,168	251,447	271,204	261,486
		267,917	288,968	278,613

※ 음영부분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 합산한 금액임

4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이용금액은 월200천원 이내 정부지원(바우처지원액)은 월160천원이며 이용금액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은 이용자 본인부담 							
	<table border="1"> <tr> <td>소득기준</td> <td>총 구매력</td> <td>바우처지원액</td> <td>본인부담금</td> </tr> <tr> <td>전국각구 월평균소득150%이하</td> <td>월최대 20만원</td> <td>= 월16만원</td> <td>+ 4천원~ 4만원</td> </tr> </table>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전국각구 월평균소득150%이하	월최대 20만원	= 월16만원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전국각구 월평균소득150%이하	월최대 20만원	= 월16만원	+ 4천원~ 4만원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별 서비스계획을 세우고 집중적 심리상담서비스를 개별 상담의 형태로 제공 ※ 심리정서검사 등을 통해 위험군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병원이나 관할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관련 치료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연계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화당 50분, 월4회 이상, 개별상담 지원 (6개월 이내 기간에서 지원 가능하나 특별한 경우 1회(6개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450-1313)

1 지원대상

- 만19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

2 구비서류

- 필 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 카드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신분증
- 해당자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확인용)

3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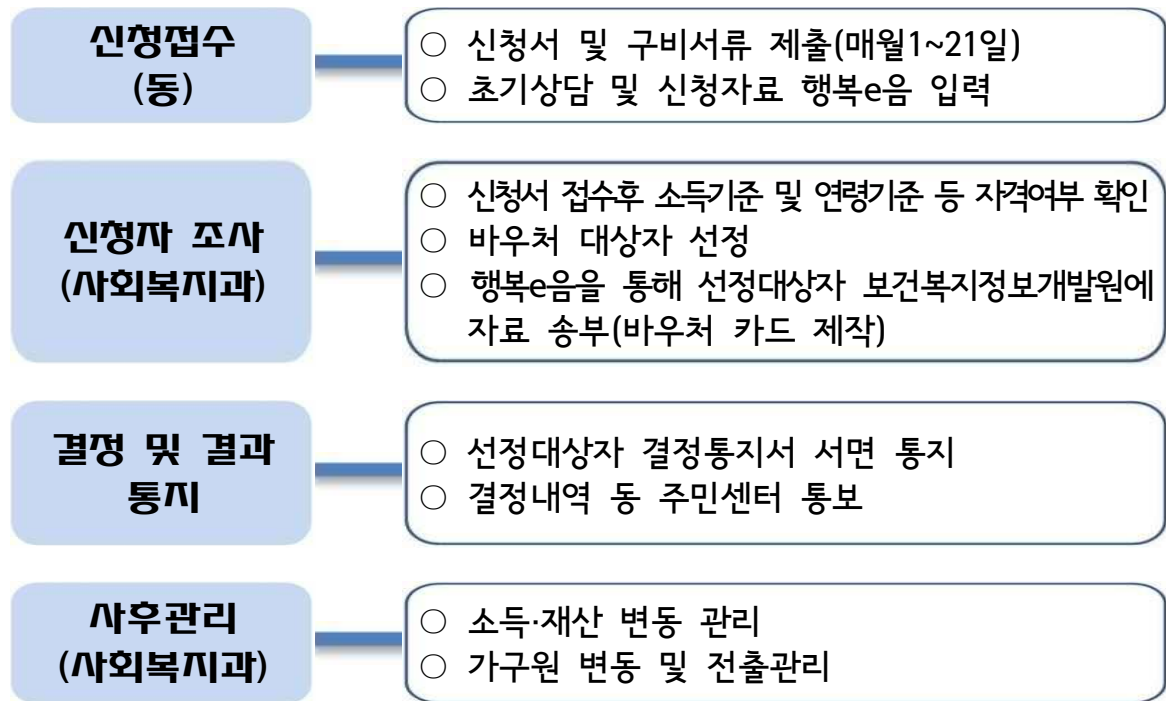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산정부과액 기준)(원)					
	50%	12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50%	120%	50%	120%	50%	120%
1인	769	1,846	24,280	56,665	3,571	39,191	24,944	57,423
2인	1,549	3,719	47,165	113,621	26,513	124,575	47,729	115,136
3인	2,212	5,308	67,466	161,683	57,497	177,862	68,276	164,396
4인	2,487	5,969	75,867	182,127	71,317	199,987	75,980	185,538
5인	2,633	6,318	80,471	193,298	79,397	211,949	81,424	197,614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등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과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 서비스 제공 - 서비스 횟수 : 렌탈12개월, 리폼 연2회 - 서비스 기간 : 재판정 4회, 최대 5년간 지원

구분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별 차등지원				
	등급	소득구간	서비스 가 격	정부지원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1등급	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월12 만원	월108,000원	12,000원
	2등급	전국가구 평균소득50~120%이하		월96,000원	24,000원
	3등급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초과		월84,000원	36,000원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사회복지과 장애인팀 (☎450-7533)

1 지원대상

-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여성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이거나 저학력 장애인 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각 시,도별 사업 수행기관의 프로그램 구성시에 총4개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 장애 특성상 이동이 힘든 점을 고려하여, 방문형(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려합니다.
- 동일한 시,도 내에서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의 세부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3 업무 흐름도

지원신청

- 사업수행기관에 지원신청

자격요건 확인

- 사업수행기관에서 자격요건 확인

서비스 제공

-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4 문의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450-7531),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연금, 우선돌봄차상위, 한부모가족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2 구비서류

-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주소지 상관없음)
 - 본인신청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신청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서, 위임장
- 홈페이지 신청

3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차상위 중 6세 이상 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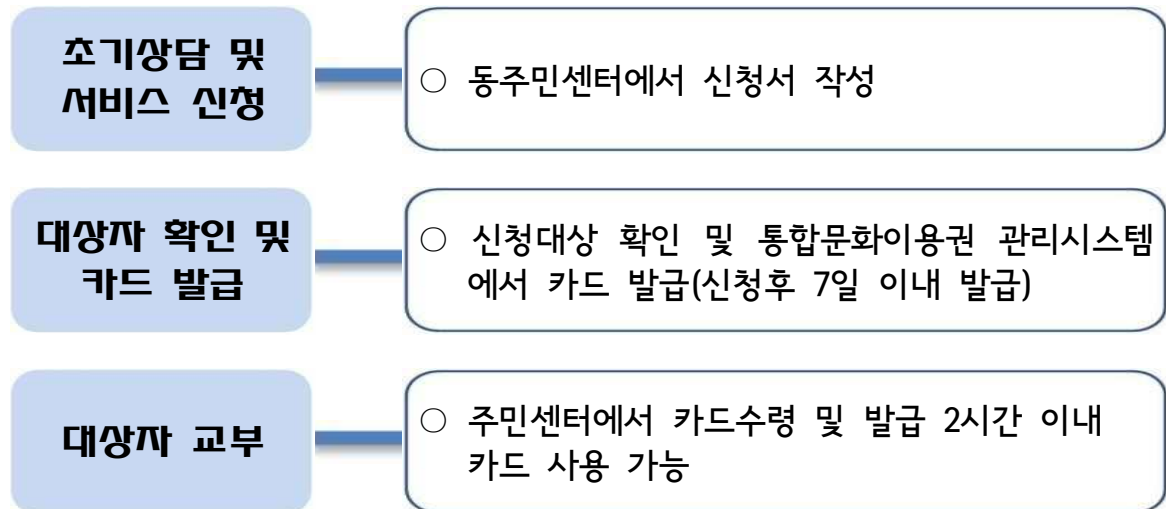
4 지원내용

구분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사용범위	구분	카드사 가맹업종
	문화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서점, 화방, 음반판매점
	여행	- 숙박 : 호텔, 펜션, 민박, 기타 숙박업 - 운송수단 : 항공사, 고속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 - 놀이공원(주요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 지역축제 및 관광명소(휴양림) - 스키장
	스포츠 관람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농구,야구,배구)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개최) 및 기타 스포츠 경기관람 입장권

※ 온누리 사용은 문화누리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를 통해서만 가능

구 분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용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 www.문화누리카드.kr/ www.munhwanuricard.kr ● NH농협카드 콜센터(카드관련문의) : 1644-4000 ● 문화누리고객관리센터(일반문의) : 1544-3412 ●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신고센터 : 1544-3412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 450-7574)

1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서 재학중인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합니다.
-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입니다.
- 기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은 소득재산을 조회하여 학교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 급식비 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시, 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함으로 시,도교육청 별로 지원대상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1순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2순위), 차상위계층(3순위), 담임선생님 추천자(4순위)순으로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3 업무 흐름도

서비스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원클릭신청 시스템, 복지로)으로 서비스 신청

소득재산 조사

- 동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최종인원 확정

- 초,중,고등학교에서 최종 인원을 확정

대상자에게 통보

- 초,중,고등학교에서 대상자에게 통보

4 문의처

서울시교육청 (☎02-1396)

1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한부모세대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의 세대(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0%이하)

2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청소년 한부모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함께 제출

3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52%)	1,438,634	1,861,090	2,283,546	2,706,001	3,128,458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소득60%)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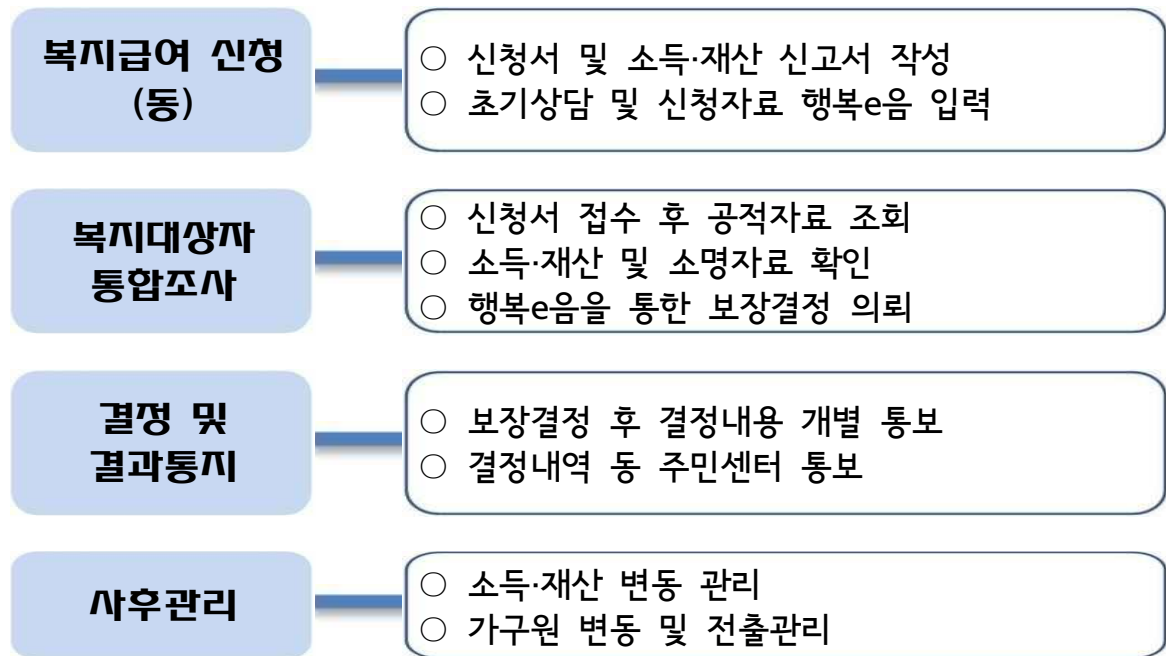
- 부양의무자 :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조손가족 중 부모의 실직 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 상실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4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보호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 부모는 모가 세대원인 자녀를 사실상 부양하는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사망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이하 ※ 한부모 가족 연령 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 보호 가능

구 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업명	자원대상	수행기관
	- 자녀학비(연도별,급지별 고지금액 전액) - 학용품비: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5만원 - 교통비(중학생,고등학생86,400원/분기) - 아동양육비:만12세미만 자녀, 월1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조손 및 만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130%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방 자치단체
	- 아동양육비(월15만원), - 검정고시학습비(연154만원) - 고등학생 교육비 - 자립촉진수당(월10만원)등 지원	만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지방 자치단체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	미혼모· 부자가족	자치단체 17개 지원기관
	- 생활보조금(가구당 월5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한 부모 가족시설

5 업무 흐름도



6 문의처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450-7568)